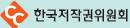
저작권관계자료 2025-01

인공지능과 저작권

제1-2부

미국 저작권청 임원선 옮김





인공지능과 저작권 **제1부 딥페이크**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1 Digital Replicas

2024. 7.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에 대하여

미국 저작권청의 이 보고서는 2023년 8월 조사 통지(Notice of Inquiry)에 명시된 대로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관련된 법률 및 정책 문제를 다룬다. 보고서는 각각 다른 주제를 다루는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발행된다. 첫 번째 부분은 딥페이크-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의 목소리나 초상을 사실적으로 복제하는 것(역주: 원문에서는 "디지털 레플리카(digital replica)"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딥페이크"란 용어로 바꿔 쓴다.)라는 주제를 다룬다. 이후의 부분에서는 조사 통지에서 제기된 다른 문제, 즉 생성 AI를 사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활용한 AI 모델의 학습, 라이선스 고려 사항, 그리고 잠재적 책임의 분담 등을 다룬다. 자세한 내용은 www.copyright.gov/AI 참조.

저작권청에 대하여

미국 저작권청은 법에 따라 미국 저작권법을 관리하는 연방 기관이다. 저작권청 장은 의회에 자문하고, 법원과 행정부에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및 그 밖의 사항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저작권청은 의회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작권청의 사명은 "국가의 저작권법을 관리하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법과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증진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copyright.gov 참조.

저작권청장 서문

최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생성 AI 모델의 등장은 기술에 있어서의 커다란 도약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에 흥미로운 기회와 복잡한 과제를 모두 던져 주었고, 전 세계의 정책 입안자, 언론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는 영역 중의 하나가 지식재산권입니다. 특히, 저작권 문제는 그것의 가시성(visibility), 즉시성(immediacy), 그리고 관련성(relevance) 때문에 일반인에게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2년 가을까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생성 AI 시스템 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각 예술, 텍스트 그리고 음악 등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매주 이 기술의 발전 상황이 발표되었습니다. 아티스트 들은 AI의 힘을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과 청중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 을 찾았습니다. 동시에 제품을 홍보하는 유명인의 이미지에서 유권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인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AI가 생성한 딥페이크가 온라인상에서 급증했습 니다. 이 결과로 지난 1년여 동안, 놀라운 기술적 잠재력에 대한 열광과 개인의 생계와 평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충하면서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AI는 많은 사람이 절박한 문제로 생각하는, 저작권법과 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인간의 저작물을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것인가? 인간의 창의성은 AI 시스템이 현재 또는 장래에 생성할 수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인센티브에 기반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 시스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기술은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을 촉발하고 궁극적으로 과학과 예술을 진작하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방해하 지 않으면서 인간 창작자를 존중하고 그에게 보상할 수 있을까?

저작권의 경우에, 이것은 기술과의 공생 관계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장입니다. 역사 적으로 기술 혁신은 사진,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표현 방법과 복사기

및 비디오카세트 레코더와 같은 새로운 복제 방법,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배포 수단을 통해 저작권법과 정책의 진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변화의 속도는 급격히 빨라졌고. 오늘날의 생성 AI 도구는 이를 더욱 가속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20세기 후반에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역사는 저작권 시스템이 회복력이 있고 필요에 따라 계속 진화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작권청은 이러한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응하여, 2023년 초에 이 보고 서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작업은 보다 광범위한 국가적이거나 국제적인 소통의 일부일 뿐입니다. 『미국에서의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확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2023년 10월 행정 명령』은 사기, 편향 및 투명성 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AI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 감 있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자신의 관할 분야에서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의회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정부도 마찬가지로 모든 형태의 AI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청의 다른 모든 연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분석은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을 진작한다는 헌법상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인간의 창의성이 계속해서 발휘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가 의회, 법원, 그리고 행정부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쉬라 펄머터 저작권청장 미국 저작권청

서문

2023년 초,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광범위한 이니 셔티브를 발표했다.

그해 3월, 저작권청은 AI 생성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등록 지침을 담은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 봄과 여름에 걸쳐 우리는 일련의 온라인 청문 세션을 주최하 고, 교육 웨비나를 개최하였으며, 수많은 이해 관계자와 접촉하여 기술과 그 사용 방법, 저작권에의 함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제기된 모든 범위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구하는, 2023년 8월의 조사 통지로 정점을 이루었다. 그 결과 우리는 작가와 작곡가, 공연자와 아티스트, 출판사와 프로듀서, 변호사와 학자, 기술 회사, 도서관, 스포츠 리그, 무역 회사와 공익 단체, 심지어 중학교 학생 한 학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관점을 대표하는 10,000개 이상의 의견을 받았다. 의견은 50개 주와 67개국에서 나왔다. 이 보고서의 논의와 권고 사항은 귀중하고 광범위한 의견과 추가적인 저작권청의 조사 결과, 그리고 보완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목 차 CONTENTS

제 [장 서론		14
	범페이크 ····································	
제∐장 무단 딥፣	페이크에 대한 보호	23
1. 주의 a) 프 b) I c) E 2. 연방 a) 자 b) E c) 런 d) 통	변해법과 법령 ··································	
B. 연방 C	계약 ····································	39

2	Y. 의회의 노력 ······	42
	a) AI사기방지법(No AI FRAUD Act) ······	44
	b) 페이크방지법(NO FAKES Act) 논의 초안	45
3	3. 새로운 권리의 기본 구조	46
	a) 보호 대상	47
	b) 보호 대상자	47
	c) 보호 기간 ······	48
	d) 침해 행위	51
	(i) 사용의 상업적 성격 ······	52
	(ii) 고의 기준 ······	53
	(iii) 간접 책임 ·····	54
	e) 라이선스와 양도	58
	(i) 존속 기간 ······	60
	(ii)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	61
	(iii) 미성년자와의 계약 ·····	62
	f) 수정 헌법 제1조 우려 ······	62
	g) 구제책 ·····	67
	h) 우선 적용 ·····	68
4	. 저작권법 제114조(b)와의 관계 ······	····· 71
제 ∭ 장 창 직	나 스타일의 보호	74
제 IV 장 결 론		79

요약문

저작권청의 〈인공지능과 저작권!〉〉 보고서의 제1부에서는 딥페이크라는 주제를 다룬 다. AI가 생성한 음악 공연부터 정치 후보자의 자동녹음 전화(robocall) 사칭, 포르노 영상 속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딥페이크의 시대가 도래했다. 가짜 이미지나 녹음 물을 제작하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생성 AI2) 기술이 쉽고 빠르게,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창작자. 입법자. 그리고 일반 대중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광범위한 AI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저작권청은 이러한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우리는 기존 법률이 무단 딥페이크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는지 또는 연방 차원에 서 새로운 보호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수많은 논평자들이 페르소나의 도용으 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법을 요구했다. 그들은 그러한 법률의 필요성 과 적절한 파라미터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제공했다.

저작권청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몇 달 동안 무단 딥페이크는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의회 활동을 촉발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접수된 의견을 분석하고, 추가 조사를 수행했으며, 다른 기관과 그들의 관련 전문 분야에 대해 협의했다. 이 모든 사항 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I가 만드는 딥페이크의 속도, 정밀성, 그리고 규모를 고려할 때 즉각적인 연방 조치가 필요하다. 강력한 국가적

¹⁾ 저작권청의 〈인공지능과 저작권〉 보고서의 목적상. "AI" 또는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 또는 인지 기능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자동화 시스템의 일반적인 분류를 말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Study: Notice of Inquiry, 88 Fed. Reg. 59942, 59948(2023년 8월 30일)(이제부터 "NOI"라 한다.). 또한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Pub. L. 115-232, \$ 238(g)(2), 132 Stat. 1636, 1697-98(2018)("인공지능"을 "인간과 유사 한 지각, 인지, 계획, 학습, 의사소통 또는 물리적 행동이 필요한 작업을 해결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물리적 하드웨어 또는 그 밖의 맥락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참조.

^{2) &}quot;생성 AI"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와 같은 표현적 자료의 형태로 출력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AI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NOI at 59948-49.

구제책이 없다면, 이들의 무단 발행과 배포는 엔터테인먼트와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

제I장에서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저작권청 연구의 맥락과 경과를 요약한다. 제II장 A에서는 주요한 기존 법률 체계를 설명한다. 특히, 딥페이크를 대상으로 하는 최근의 법률을 포함하여 주의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는 저작권법, 연방거래위원회법, 통신법, 그리고 랜햄법이 그것이다.

제II장 B에서는 기존 법률이 무단 딥페이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법적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연방법의 채택을 제안한다. 우리는 그 기본 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보호 대상**. 이 법은 AI에 의해 생성되었든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생성되었든, 진짜 묘사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인 딥페이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보호는 많은 주에서 제공하는 "이름, 이미지 그리고 초상"에 대한 더 넓은 보호보 다는 좁아야 하고 그와 구별되어야 한다.
- **보호 대상자**. 이 법은 유명인, 공인 또는 그의 정체성이 상업적 가치가 있는 사람뿐 만 아니라 모든 개인을 포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지명도나 이전의 상업적 노출에 관계없이 무단 딥페이크가 야기하는 피해에 취약할 수 있다.
- 보호 기간. 보호는 최소한 개인의 생존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사후 보호는 제한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페르소나가 계속 악용될 수 있는 경우에 기간을 연장하 는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
- 침해 행위. 무단 딥페이크의 배포나 전송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를 제작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아니어야 한다. 피해가 종종 개인적인 성격을 띠므 로 상업적 사용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책임은 표현이 특정 개인의 딥페이크인 것과 그것이 허락받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 모두를 실제로 알았을 것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

- **간접 책임**. 간접 책임의 전통적인 불법 행위의 워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법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효과적인 통지를 받거나 허락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무단 딥페이크를 제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피난항(safe harbor) 메커 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 라이선스 및 양도. 안전 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개인은 그들의 딥페이크 권리를 라이선스하고 수익화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전면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에는 추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 **수정 헌법 제1조 관련 우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는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범주적으로 예외를 두기보다 균형의 원칙을 이용하면 과도해지지 않으면서도 더 큰 유연성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구제책. 금지명령과 금전적 손해배상 모두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법정 손해배상 및/또는 승소자 변호사 비용 조항을 포함하면 개인들에게 재정적 자원에 관계없이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적절할 수 있다.
- **주법과의 관계**. 잘 확립된 주의 퍼블리시티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감안할 때, 저작권 청은 연방법 우선적용의 전면 적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연방법은 전국적으로 일관 된 보호의 기반을 제공해야 하며, 주는 계속해서 추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14조(b)가 무단 음성 딥페이크를 제한하는 법률들에 우선 적용하거나 이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III장에서는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고의로 모방하는 AI 출력물에 대한 보호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는 창작자가 우려하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새로운 입법의 범위에 스타일을 포함시키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저작권청은 이 중요한 주제와 관련해 받은 광범위하고 사려 깊은 의견에 감사하며 그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우리는 입법적 해결책을 계속 검토하는 의회를 계속해서 지원 할 것이다.

제 I 장 서론

2023년 4월, 드레이크와 더위켄드(Drake and The Weeknd)의 목소리가 담긴 신곡 이 소셜 미디어에서 1,500만 뷰를 기록했고 스포티파이(Spotify)에서 60만 회 청취를 올렸다.3) 하지만 두 아티스트 모두 이 노래가 발매되기 전에는 이 노래에 대해 알지 못했다. 보컬이 허락받지 않은 AI 생성 딥페이크였기 때문이다.4)

바이럴 히트곡 "하트 온마이 슬리브(Heart on My Sleeve)"는 일반적으로 "가짜 드레 이크(Fake Drake)" 노래로 불리는데, 이는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보컬로 통할 수 있는 보컬을 생성 AI 시스템5)을 사용해 만드는, 녹음물의 급성장하는 한 하위 장르의 대표적 인 사례이다.6) 보컬 트랙은 어떤 개인의 목소리, 이미지, 창작 스타일을 점점 더 사실적 으로 복제하는 한 형태일 뿐이다.7) 생성 AI 기술은 짧은 시간 안에 매우 정교해지고

³⁾ Bill Donahue, Fake Drake & The Weeknd Song — Made With AI — Pulled From Streaming After Going Viral, BILLBOARD (Apr. 17, 2023), https://www.billboard.com/pro/fake-aidrake-the-weeknd-song-pulled-streaming/.

⁴⁾ Colin Stutz, The Fake Drake AI Song Earned Millions of Streams — But Will Anyone Get Paid?, BILLBOARD (Apr. 19, 2023), https://www.billboard.com/pro/fake-drake-aisong-earned-millions-streams-get-paid/.

^{5) &}quot;AI 시스템"이란 하나 이상의 AI 모델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NOI 59948; 또한 James M. Inhof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3, Pub. L. 117-263, § 7223(4)(A), 136 Stat. 2395, 3669(2022)("인공지능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적 또는 정적 기계 학습 알고리즘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작동하는 모든 데이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도구 또는 유틸리티"로 정의)도 참조.

⁶⁾ Joe Coscarelli, An A.I. Hit of Fake 'Drake' and 'The Weeknd' Rattles the Music World, N.Y. TIMES (Apr. 19, 2023), https://www.nytimes.com/2023/04/19/arts/music/ai-drakethe-weeknd-fake.html.

⁷⁾ 예를 들어, Melissa Heikkilä, This Artist Is Dominating AI-Generated Art. And He's Not Happy About It, MIT TECH. REV. (Sept. 16, 2022), https://www.technologyreview.com/ 2022/09/16/1059598/this-artist-is-dominating-ai-generated-artand-hes-not-happy-ab out-it/; Jane Friedman, I Would Rather See My Books Get Pirated Than This (Or: Why Goodreads and Amazon Are Becoming Dumpster Fires), JANEFRIEDMAN BLOG (Aug. 20, 2023), https://janefriedman.com/i-would-rathersee-my-books-pirated/. 참조.

접근성이 높아져서 최소한의 전문 지식만으로도 이러한 딥페이크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8) 소셜 미디어와 그 밖의 인터넷 플랫폼에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9)

A. AI와 딥페이크

이 보고서는 "디지털 레플리카(digital replica)"라는 용어를, 개인을 사실적으로 그 러나 거짓으로 묘사하기 위해 디지털로 제작되거나 조작된 비디오. 이미지 또는 오디오 녹음물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디지털 레플리카"는 허락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을 수 있으며, AI뿐만 아니라 어떠한 유형의 디지털 기술로도 제작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서 "디지털 레플리카"와 "딥페이크"라는 용어는 대체가능한 의미로 사용된다.10)

딥페이크는 유익한 용도와 해로운 용도를 모두 가질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도구로 유용할 수 있고,11) 사망했거나 순회공연을 하지 않는

⁸⁾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 (Oct. 30, 2023)("FTC Initial Comments") ("정책 입안자들은 수십 년 동안 AI의 파괴적 잠재력에 대해 논쟁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기술의 개발 및 출시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Fast, Relax, & Turbo Modes, MIDIOURNEY, https://docs.midjourney.com/docs/fast-relax ("릴랙스(Relax)의 대기 시간은 동적이지만 일반 적으로 작업당 0~10분 사이이다... 터보 모드는 매우 빠른 이미지 생성을 원하는 구독자에게 제공된 다... 터보 모드에서 실행되는 작업은 최대 4배 더 빨리 생성된다...") (2024년 7월 21일 최종 방문); Karen X. Cheng (@karenxcheng), INSTAGRAM (Apr. 11, 2022), https://www.instagram. com/p/CcN5nBSpO9W/ (달리(DALL·E)를 사용하여 몇 초 안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시연) 참조.

⁹⁾ Don Philmlee, Practice Innovations: Seeing is no longer believing — the rise of deepfakes, THOMSON REUTERS (July 18, 2023), https://www.thomsonreuters.com/en-us/posts/te chnology/practice-innovations-deepfakes/.

^{10) &}quot;딥페이크"라는 용어는 종종 허락받지 않은 또는 사기적인 사용, 특히 노골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있지만, 아래 각주 22-23 참조, 일부 사전적 정의는 좀 더 광범위하다. deepfake, M ERRIAM -W EBSTER DICTIONARY,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deepfake ("누군 가가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않은 것을 했거나 말한 것처럼 오도하기 위해 설득력 있게 변경되 고 조작된 이미지 또는 녹음물")(2024년 7월 20일 최종 업데이트); deepfake, C AMBRIDGE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us/dictionary/english/deepfake ("누군 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로 바꿔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비디오 또는 녹음물"). 대중 매체에서도 이 용어는 악의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허가된 용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Nilesh Christopher & Varsha Bansal, Indian Voters Are Being Bombarded With Millions of Deepfakes. Political Candidates Approve, W IRED (2024년 5월 20일) 참조 https:// www.wired.com/story/indian-elections-ai-deepfakes/("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신들의 오디오와 비디오 딥페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자신이 복제 인간과 대화한 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

¹¹⁾ 예를 들어, Press Relase, Office of Congresswoman Jennifer Wexton, Wexton Shares Video

아티스트의 "공연"을 가능하게 하고.12) 창작 활동을 지원하거나.13) 개인이 자신의 음성. 이미지. 초상을 사용하도록 라이선스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14)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예로, 뇌졸중을 앓은 후로 말하기 기능이 제한되었던 음악가 랜디 트래비스(Randy Travis)는 생성 AI를 사용하여 10여년 만에 그의 첫 노래를 발표할 수 있었다.15)

동시에, 무단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창작 분야 전반에 걸쳐 음성 모방과 이미지 생성기가 급증하면서 공연자와 그 밖의 아티스트가 일자리나 수입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16) 배경

Debuting New AI Voice Model (July 10, 2024), https://wexton.house.gov/news/docu mentsingle.aspx?DocumentID=952("오늘, 제니퍼 웩스턴(Jennifer Wexton, 버지니아주/민주 당) 의원은 진행성 초핵성 마비(PSP)로 인해 영향을 받기 전 자신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새로운 모델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유했다.").

¹²⁾ Universal Music Group ("UMG"),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5-6 (Oct. 30, 2023) ("UMG Initial Comments"); 또한 Elias Leight, Will AI Be Used to Raise Musicians From the Dead?, BILLBOARD (Nov. 29, 2023), https://www.billboard.com/pro/ai-bring-back-dead-artistsmusicians-estate -managers/. 참조.

¹³⁾ 예를 들어, Letter from Motion Picture Association ("MPA"), Summary of Ex Parte Meeting on May 13, 2024 Regarding the Office's AI Study, to U.S. Copyright Office 2 (May 20, 2024)("MPA는 다큐멘터리, 전기(傳記) 영화 및 이와 유사한 저작물에서 개인 묘사가 널리 퍼져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문제가 회원들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는 딥페이크 기술의 사용이 단순히 메이크업이나 보철물을 포함하여, 배우가 묘사하는 사람과 더 닮아 보이기 위해 회원 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기술 유형의 진화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참조.

¹⁴⁾ 예를 들어, American Association of Independent Music ("A2IM") et al., Repl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2 (Dec. 6, 2023)("A2IM-Recording Academy-RIAA Joint Reply Comments"); William Morris Endeavor Entertainment, LLC ("WME"),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 (Oct. 30, 2023)("WME Initial Comments") 참조.

¹⁵⁾ Dylan Smith, Randy Travis Harnesses AI to Release His 'First New Music in More Than a Decade' - Another Song Is Already Being Created, DIGIT. MUSIC NEWS (May 6, 2024), https://www.digitalmusicnews.com/2024/05/06/randy-travisnew-song.

¹⁶⁾ 예를 들어, Screen Actors Guild-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rtists ("SAG-AFTR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4 (Oct. 30, 2023) ("SAG-AFTRA Initial Comments"); Writers Guild of America ("WG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3 (Oct. 30, 2023) ("WGA Initial Comments"); Christi Carras, Which Entertainment Jobs Are Most Likely to Be Disrupted by AI? New Study Has Answers, L.A. TIMES (Jan. 30, 2024), https://www.latimes.com/entertainment-arts/business/story /2024-01-30/ai-artificial-intelligence-impact-reportentertainment-industry; Sam O'brien, AiArt: Why Some Artists Are Furious About AI-Produced Art, IEEE COMPUT. SOC'Y (Nov. 29, 2023), https://www.computer.org/publications/tech-news/trends/artists-mad-at-ai;

배우(background actor) 대신 딥페이크 엑스트라를 사용하는 영화 프로젝트가 이미 있었고.17) 성우가 AI 복제물로 대체된 상황도 있었다.18) 음악 산업에서는 녹음물에 AI를 사용하면 "진본성과 창의성(authenticity and creativity)의 상실"과 인간 노동의 대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9) 수많은 논평자들은 공연자들이 그러 한 대체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과 그들의 경력과 생계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을 강조했는데,²⁰⁾ 논평자들 중 많은 사람은 영화배우조합-미국 텔레비전·라디오방 송인 조합(SAG-AFTRA) 회원들이다.

유명 인사를 묘사하는 딥페이크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기는 하지만, 누구나 취약할 수 있다.21) 창작 분야를 넘어서는 무단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Ari's Take, Is AI Music Taking Royalties From Musicians and Composers? — The New Music Business Podcast, YOUTUBE, at 20:57 (Jan. 17, 2024), https://www.youtube.com /watch?v=3I9dnxzjEzg 참조.

¹⁷⁾ Jeremy Dick, Disney Gets Roasted for 'Creepy' AI Extras in Disney+ Movie Prom Pact, CBR (Oct. 12, 2023), https://www.cbr.com/disney-prom-pact-ai-actors/; 또한 Bobby Allyn, Movie Extras Worry They'll be Replaced by AI. Hollywood Is Already Doing Body Scans, NPR (Aug. 2, 2023), https://www.npr.org/2023/08/02/1190605685/ 참조. 뒤에 논 의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개별적이거나 단체협상을 통해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 보고서 제II장 A.3. 참조.

¹⁸⁾ 예를 들어, FTC Initial Comments, Attach. at 37 (statement of Tim Friedlander, Nat'l Ass'n of Voice Actors); Cade Metz, What Do You Do When A.I. Takes Your Voice?, N.Y. TIMES (May 16, 2024), https://www.nytimes.com/2024/05/16/technology/ai-voice-clone-law suit.html; Ed Nightingale, Baldur's Gate 3 Actors Reveal the Darker Side of Success Fuelled by AI Voice Cloning, EUROGAMER (Apr. 12, 2024), https://www.eurogamer. net/baldurs-gate-3-actors-reveal-the-darker-side-of-success-fuelled-by-ai-voice-clo ning (비디오 게임 성우들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한 답변) 참조.

¹⁹⁾ 예를 들어, CVL ECONOMICS, FUTURE UNSCRIPTED: THE IMPACT OF GENERATIVE AI ON ENTERTAINMENT INDUSTRY JOBS 3940 (Jan. 2024), https://animationguild.org/wpcontent/uploads/2024/01/Future-Unscripted-The-Impact-of-Generative Artificial-Intel ligence-on-Entertainment-Industry-Jobs-pages-1.pdf ("멜로디를 재생성하고 뮤지션의 목소 리를 확실하고 빠르게 복제하는 기능을 통해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음악 트랙을 생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지고 있다."); Jem Aswad, Billie Eilish, Nicki Minai, Stevie Wonder, Dozens More Call on AI Developers to Respect Artists' Rights, VARIETY (Apr. 2, 2024), https://variety.com/2024/music/news/billie-eilish-nickiminaj-ai-respect-artists-rights -1235957451/ 참조.

²⁰⁾ 예를 들어, Morgan Keaton,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Oct. 30, 2023); Allie Radice,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Oct. 29, 2023); Gregory Schott,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Oct. 23, 2023) 참조.

²¹⁾ 예를 들어, Arian Garshi, Deepfakes in 2022: How individual non-celebrities are targeted,

나뉜다. 첫째, 생성 AI 시스템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다는 보고가 많았다. 22) 연구자들은 2023년에 노골적인 이미지가 모든 온라인 딥페이크 비디오의 98%를 차지하며, 표현된 개인의 99%가 여성이라고 결론지었다.23) 학생들이 급우의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 로 보인다.24)

두 번째로, 딥페이크 제작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쉽고 정교하게 사기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25) 언론은 사기꾼이 다국적 금융 회사의 CEO와 직원

MEDIUM (Oct. 17, 2022), https://ariangarshi.medium.com/deepfakes-in-2022-how-in dividual-non-celebrities-are-targeted-a7dab59cac3a.

²²⁾ 예를 들어, Caroline Haskins, A Deepfake Nude Generator Reveals a Chilling Look at Its Victims, WIRED (Mar. 25, 2024), https://www.wired.com/story/deepfake-nude-gene rator-chilling-look-at-its-victims/; Katherine Noel, Journalist Emanuel Maiberg Addresses AI and the Rise of Deepfake Pornography, INST. OF GLOBAL POL. (Apr. 22, 2024), https://igp.sipa.columbia.edu/news/rise-deepfake-pornography. "소셜 미디어 플랫폼X 하나에서만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 한 장이 [이미지 가 게시된 계정이] 정지되기 전에 4,700만 번 조회되었다." Kate Conger & John Yoon, Explicit Deepfake Images of Taylor Swift Elude Safeguards and Swamp Social Media, N.Y. TIMES (Jan. 26, 2024), https://www.nytimes.com/2024/01/26/arts/music/taylor-swift-ai-fake images.html; Ashley King, Megan Thee Stallion the Latest Victim of Deepfake Porn — X/Twitter 'Proactively Removing' Clips, DIGI. MUSIC NEWS (June 14, 2024), https:// www.digitalmusicnews.com/2024/06/14/megan-thee-stalliondeepfake-porn-x-twitter -removing 참조.

²³⁾ HOME SECURITY HEROES, 2023 STATE OF DEEPFAKES at Key Findings 2-3 (2023), https://www.homesecurityheroes.com/state-of-deepfakes/#key-findings. 또한 Katherine Noel, Journalist Emanuel Maiberg Addresses AI and the Rise of Deepfake Pornography, INST. OF GLOBAL POL. (Apr. 22, 2024), https://igp.sipa.columbia.edu/news/rise-deep fake-pornography ("합의 없이 옷을 벗고 AI가 생성한 포르노에 등장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젊은 여성이다.) (내부 인용 생략).

²⁴⁾ 예를 들어, Natasha Singer, Teen Girls Confront an Epidemic of Deepfake Nudes in Schools, N.Y. TIMES (Apr. 8, 2024), https://www.nytimes.com/2024/04/08/technology/deepfake -ai-nudes-westfield-high-school.html; Caroline Haskins, Florida Middle Schoolers Arrested for Allegedly Creating Deepfake Nudes of Classmates, WIRED (Mar. 8, 2024), https:// www.wired.com/story/florida-teens-arrested-deepfake-nudes-classmates/; Cameron Sires, Schools Navigate The New World of Explicit Al-Generated Images, ISSAQUAH REPORTER (Apr. 16, 2024), https://www.issaquahreporter.com/news/schools-navigate-the-newworld-of-explicit-ai-generated-images/; Miranda Ceja, AI-Generated Nude Photos Of High Schoolers Investigated In South OC, MSN NEWS (Apr. 2, 2024), https://www.msn. com/en-us/news/us/ai-generated-nude-photos-of-high-schoolers-investigated-in-so uth-oc/arBB1kXrkt.

²⁵⁾ Giuseppe Ciccomascolo, Deepfakes Make Up 66% of AI Fraud While Crypto Scams Halved, CCN (Apr. 25, 2024), https://www.ccn.com/news/technology/deepfakes-ai-fraud-crypto -scams/.

의 이미지와 목소리를 복제하여 2.560만 달러를 훔친 사기.26)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를 복제하여 몸값을 요구한 사기,27) 그리고 변호사의 아들의 목소리를 복제하여 보석금 을 내도록 9,000달러를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사기에 대해 보도했다. 28) 유명인의 딥페 이크를 사용하여 그들이 상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묘사하기도 했다.29)

마지막으로, 딥페이크가 잘못된 정보를 가려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정치 시스 템과 뉴스 보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정치인과 관련된 최근 사례로는 시카고 시장 후보의 음성 딥페이크가 경찰의 잔혹 행위를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30)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 복제물이 유권자들에게 예비 선거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자동녹음 전화.31)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국립 알러지·감염병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전직 소장인 앤서 니 파우치(Anthony Fauci)와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묘사한 캠페인 광고32)가 있다.

²⁶⁾ Heather Chen & Kathleen Magramo, Finance worker pays out \$25 million after video call with deepfake 'chief financial officer', CNN (Feb. 4, 2024), https://www.cnn.com /2024/02/04/asia/deepfake-cfo-scam-hong-kong-intl-hnk/index.html ("이 정교한 사기 에 연루된 [재무담당] 직원은 그가 생각한 다른 여러 직원과 함께 화상 통화에 참석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는 딥페이크 재현이었다... 그 직원은 화상 통화 후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동료들과 생김새와 목소리가 똑같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의심을 거두게 되었다...").

²⁷⁾ Charles Bethea, The Terrifying A.I. Scam That Uses Your Loved One's Voice, NEW YORKER (Mar. 7, 2024), https://www.newyorker.com/science/annals-of-artificial-intel ligence/the-terrifying-ai-scam-that-uses-your-lovedones-voice.

²⁸⁾ Samantha Manning, Father Warns Congress About AI scammer Who Sounded Just Like His Son, KIRO7 (Nov. 16, 2023), https://www.kiro7.com/news/local/father-warns-con gress-about-ai-scammer-who-sounded-just-like-hisson/KA7BXJJ2OJB3NHDDM4EGB5 L24M/.

²⁹⁾ Megan Cerullo, AI-generated Ads Using Taylor Swift's Likeness Dupe Fans With Fake Le Creuset Giveaway, CBS NEWS (Jan. 16, 2024), https://www.cbsnews.com/news/tay lor-swift-le-creuset-ai-generated-ads/; Tom Hanks Says AI Version of Him Used In Dental Plan Ad Without His Consent, THE GUARDIAN (Oct. 1, 2023), https://www. theguardian.com/film/2023/oct/02/tom-hanks-dental-ad-ai-version-fake; Jamey Tucker, Fake Ads Mad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Exploit Celebrities on Social Media, WPSD LOCAL 6 (Mar. 11, 2024), https://www.wpsdlocal6.com/news/fake-ads-made-with-ar tificial-intelligence-exploit-celebrities-on-socialmedia/article_7a94d8a6-dfba-11ee-b b47-7f2861477d8e.html.

³⁰⁾ Tiffany Hsu & Steven Lee Myers, A.I.'s Use in Elections Sets Off a Scramble for Guardrails, N.Y. TIMES (June 25, 2023), https://www.nytimes.com/2023/06/25/technology/ai-elec tions-disinformation-guardrails.html.

³¹⁾ Shannon Bond, AI Fakes Raise Election Risks As Lawmakers and Tech Companies Scramble to Catch Up, NPR (Feb. 8, 2024), https://www.npr.org/2024/02/08/1229641751.

³²⁾ Nicholas Nehamas, DeSantis Campaign Uses Apparently Fake Images to Attack Trump

딥페이크 영상은 심지어 노조 지도자가 자신이 "협상하고... 강력히 지지한" 계약에 반대 하도록 조합워들에게 촉구하는 모습을 거짓으로 보여줌으로써 잘 알려진 노조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33)

한 디지털 포렌식 학자는 정보 생태계에 대한 도전을 요약하면서, "만일 우리가 모든 스토리, 오디오 녹음, 이미지, 비디오가 가짜일 수 있는 세상에 진입한다면... 그렇다면 어느 것도 진짜일 필요가 없다."34)고 경고했다. AI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연구자들 은 딥페이크와 진짜 콘텐츠를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한다.35)

B. 연구의 배경

2023년 초. 저작권청은 AI가 제기하는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 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생성 AI가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능력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하여 이런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공개 청취 세션을 주최하고 광범위한 외부 활동을 진행하였다.36)

딥페이크라는 주제는 기존 법률의 어떤 한 영역에 깔끔하게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는 이를 지식재산의 한 형태로 규정하지만, 무단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보호는 프라이버시, 부정경쟁, 소비자 보호, 사기 등 겹쳐지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다음의 여러 면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 아티스트와 공연자같은 창작자는 특히 영향을 받는다. 저작권으 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종종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다. 딥페이크 결과물은 종종

on Twitter, N.Y. TIMES (June 8, 2023), https://www.nytimes.com/2023/06/08/us/poli tics/desantis-deepfakes-trump-fauci.html.

³³⁾ The NO FAKES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ntell. Prop.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Duncan Crabtree-Ireland, National Executive Director, SAG-AFTRA).

³⁴⁾ Weekend Edition Sunday, As Tech Evolves, Deepfakes Will Become Even Harder to Spot, NPR (July 3, 2022), https://www.npr.org/2022/07/03/1109607618 (Interview with Professor Hany Farid of U.C. Berkeley).

³⁵⁾ 예를 들어, 위의 각주.

³⁶⁾ 예를 들어, Music and Sound Recordings Listening Session Tr. at 11:11–12; 16:19–17:4; 73:11-77:20 (May 31, 2023) (statements by Nathaniel Bach, Music Artists Coalition ("MAC"); Kenneth Doroshow,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 Rohan Paul, Controlla; Garrett Levin, Digital Media Association ("DiMA")) 참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더 큰 저작물의 일부로서 전파된다. 게다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업적 피해는 저작권 시스템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되는 인격적 권리의 침해와 유사하다.37)

2023년 8월. 저작권청은 "인간 예술가의 정체성이나 스타일을 모방하는 생성 AI 출력물의 취급"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조사 통지를 발표했 다.38) 조사 통지는 특정 개인의 음성이나 초상이 등장하는 AI 생성 자료에 적용되는 기존 법률이 무엇인지, 의회가 무단 딥페이크를 보호하는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기본 구조는 어때야 하는지를 물었다. 또한 창작 스타일을 모방하 는 출력물을 생성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보호가 있는지 또는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39) 마지막으로, 녹음물의 경우에 저작권법 제114조(b)가 개인 음성의 모방을 보호하는 주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40

저작권청은 이 질문들에 대해 약 1,000개의 의견을 받았는데, 그 중 90% 이상이 개인들로부터 왔다. 대부분 새로운 연방 법률의 제정을 지지했다. 부여될 권리의 범위, 기간 및 양도 가능성과 기존 주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

개인의 정체성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청에 전혀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 우리는 2019년 에 미국에서의 성명표시와 동일성유지에 관한 인격권에 대한 보고서41)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의회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방 입법의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42) 이번 연구는 특별히 무단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연방 보호의 필요성을 평가 하는, 좀 더 좁은 초점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청은 연방 차원에서 그러한 법률을 채택할 때가 왔다고 결론지었다. 접수된

³⁷⁾ 각주 41 참조.

³⁸⁾ NOI at 59945.

³⁹⁾ Id. at 59945, 59948.

⁴⁰⁾ Id. at 59948.

⁴¹⁾ 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비경제적 권리 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두 가지는 성명표시권(저작자로 표시)과 동일성유지권(저작물의 왜곡을 방지)이다. U.S. COPYRIGHT OFFICE, AUTHORS, ATTRIBUTION, AND INTEGRITY: EXAMINING MORAL RIGHTS IN THE UNITED STATES 6 (2019)("MORAL RIGHTS REPORT"), https://copyright.gov/policy/moralrights/fullreport.pdf.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을 결합하여 이러한 인격권을 보호하는데, 대체로 랜햄법, 저작권법 일부 조항, 그리고 프라이버시 및 퍼블리시티, 계약, 사기 및 허위 표시, 부정경쟁 및 명예 훼손과 관련된 주법이 그것이다. Id. at 7 참조.

⁴²⁾ Id. at 110-19.

의견, 독립적인 연구, 다른 기관에서 수행 중인 노력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기존의 것 이상의 강력한 국가적인 구제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장에서 는 기존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보호와 그것이 오늘날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검토하고, 연방 차원의 새로운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그 기본 구조에 대하여 권고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차용하는 AI 출력물에 대한 보호 요구를 다룬다. 저작권청은 이 우려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기존법이 현재로서는 충분한 보호 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제Ⅱ장 무단 딥페이크에 대한 보호

A. 기존 법체계

다양한 법체계가 개인 페르소나의 무단 사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는 주 수준에서 존재하며, 여기에는 프라이버시 및 퍼블리시티에 대한 법령 및 파례법적 권리가 포함되다. 다른 것들은 저작권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래햄법, 통신법 등의 연방법 에 근거하고 있다.

1. 주의 판례법과 법령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법은 퍼블리시티 및 프라이버시에 관해 오랜 동안 유지되어 온 권리이다. 생성 AI 시스템에서 제작되는 딥페이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많은 주에서 는, 특히 무단 딥페이크를 겨냥한 새로운 법령을 고려하거나 제정하고 있다.

a) 프라이버시권

판례법상 프라이버시권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했으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호와, 자율성, 존엄성 및 개인의 고결성(integrity)의 보호로 설명된 다.43)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에게 전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 게만 적용된다.44)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령 또는 판례법을 통해 일정한 형태의 프라이버 시권을 인정하고 있다.45)

⁴³⁾ 새뮤얼 워런(Samuel Warren)과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가 그들의 1890년 논문 "The Right to Privacy"에서 처음으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법을 "개인의 보호와 개인에게... 홀로 있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다음 조치"로 언급하며 주장하였다. Samuel D. Warren &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 ARV. 엘. R EV .193, 195(1890).

⁴⁴⁾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652I (AM. L. INST. 1977).

^{45) 1} J. THOMAS MCCARTHY & ROGER E. SCHECHTER, THE RIGHTS OF PUBLICITY AND

판례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은 불법행위의 복합체로 묘사되어 왔으며,46) 여기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오해를 낳는 공표(false light)와 이름과 초상 도용 불법행위이다.47) 오해를 낳는 공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명예 훼손에서와 같은 정신적 의미를 가지는"48) 개인의 평판을 보호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 관련된 사안을 [그들을] 대중 앞에 오해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개한 경우에, 그러한 공개가 "합리적인 사람에게 매우 불쾌감을 주고", "행위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된다.49) 예를 들어, 법원은 피고가 어느 여성이 "음란한 환상을 품게 한다"는 허위 진술을 퍼뜨리고 그녀가 어느 성인 잡지에 나체로 출연하는 데 동의했 다고 주장한 경우.50) 뿐만 아니라 피고가 스트립 클럽 홍보에 개인의 이름과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51) 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 이 불법 행위를 인정했고,52) 일부에서는 법령에 포함하고 있다.53)

PRIVACY §§ 6:1. 6:7 (2d ed. 2024).

⁴⁶⁾ William L. Prosser, Privacy, 48 CALIF. L. REV. 383, 389 (1960) ("이것은 하나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네 가지의 복합물이다."). 네 가지 불법행위 복합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은둔 또는 고독에 대한 침입, (2) 수치스런 사생활의 공개, (3) 오해를 낳는 공표, (4) 피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도용하는 것. DAN B. DOBBS, PAUL T. HAYDEN & ELLEN M. BUBLICK, THE LAW OF TORTS § 578 (2d ed. 2024).

⁴⁷⁾ Nicholas Schmidt, Privacy Law and Resolving 'Deepfakes' Online, IAPP (Jan. 30, 2019), https://iapp.org/news/a/privacy-law-and-resolving-deepfakes-online/; see also Bobby Chesney & Danielle Citron, Deep Fakes: A Looming Challenge for Privacy, Democracy, and National Security, 107 CALIF. L. REV. 1753, 1794-95 (2019).

⁴⁸⁾ William L. Prosser, Privacy, 48 CALIF. L. REV. 383, 400 (1960). See also 1 J. THOMAS MCCARTHY & ROGER E. SCHECHTER,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5:112 (2d ed. 2024) ("오해를 낳는 공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 훼손의 차이는 아직 불분명하다. 오해를 낳은 공표에 의한 불법행위는 주로 모욕에 초점을 맞추고 명예 훼손은 평판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구분은 미묘한 것이다."). 일부 법원은 명예 훼손을 오해를 낳는 공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지만, 예를 들어 Denver Pub. Co. v. Bueno, 54 P.3d 893, 894 (Colo. 2002) 참조, 명예 훼손적 발언은 어느 개인이 오해를 낳는 공표의 대상이 되게 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652E (AM. L. INST. 1977) 참조.

⁴⁹⁾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652E (AM. L. INST. 1977). "법원들은 일관되게 Restatement of Torts의 요건을 채택하고 있다." 1 J. THOMAS MCCARTHY & ROGER E. SCHECHTER,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5:114 n.1 (2d ed. 2024).

⁵⁰⁾ Wood v. Hustler Mag., Inc., 736 F.2d 1084, 1089, 1093 (5th Cir. 1984).

⁵¹⁾ Longoria v. Kodiak Concepts LLC, 527 F. Supp. 3d 1085, 1102 (D. Ariz. 2021); Johnson v. J.P. Parking, Inc., No. 4:22-cv00146, 2024 WL 676770, at *18 (S.D. Iowa Feb. 20, 2024).

⁵²⁾ Welling v. Weinfeld. 866 N.E.2d 1051, 1055 (Ohio 2007) ("미국의 대부분의 사법관합권에서는 오해를 낳은 공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별되는 별개의 소송 가능한 불법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오해를 낳는 공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딥페이크가 불쾌한 행위에 관여하는 개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54) 페이크 포르노에 대처하는 데에 특히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매우 공격적"이란 기준은 단순히 사실이 아닌 묘사의 경우처럼 무단 딥페이크의 다른 용도에 대한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55)

도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불법행위에는 "원고의 정체성이나 평판 또는 그의 상당한 부분을 피고의 사적인 용도나 이익을 위해 도용하는 것"이 포함된다.5% 비록 모든 주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57) 표면적으로 이 불법행위는 무단 딥페이 크로부터의 보호에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58) 그러나 법원은 불법행위를 일관되게 해석 하지 않았다. 여러 주에서는 도용 행위가 상업적 목적이나 거래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59) 비상업적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구인은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그러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미네소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오해를 낳는 공표에 의한 불법행위를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1 J. THOMAS MCCARTHY & ROGER E. SCHECHTER,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5:115 (2d ed. 2024).

^{53) 9} R.I. GEN. LAWS § 9-1-28.1(a)(4) (2024)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오해를 낳는 공표로 보이게 하는 공표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제공하고, "허위 또는 허구의 사실이 공개되어 존재하지 않는 연관 성을 암시하는 경우" 그리고 "공개되거나 암시된 연관성이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 구제를 허용); NEB. REV. STAT. § 20-204 (2024) (Restatement (Second) of Torts'의 논리에 따름).

⁵⁴⁾ Douglas Harris, Deepfakes: False Pornography Is Here and the Law Cannot Protect You, 17 DUKE L. & TECH. REV. 99, 115-16 (2019) 참조.

⁵⁵⁾ 예를 들어, De Havilland v. FX Networks, LLC, 230 Cal.Rptr.3d 625, 630, 644(Cal. Ct. App. 2018) (그것이 "사람을 증오, 경멸, 조롱 또는 비방"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큐 드라마의 허구화된 인터뷰에 대한 오해를 낳는 공표 주장을 기각) 참조.

⁵⁶⁾ DAN B. DOBBS, PAUL T. HAYDEN & ELLEN M. BUBLICK, THE LAW OF TORTS § 579 (2d ed. 2024). 프라이버시 침해의 판례법 요건에는 (1) "원고의 정체성 또는 페르소나의 일부를 원고가 피고의 사용으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과 (2) 그 사용이 "원고의 마음의 평화와 존엄성에 어느 정도 손상을 입히고 그 결과 원고의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고통 및 관련된 손상으로 측정되는 상해의 유발"이 포함된다. 1 J. THOMAS MCCARTHY & ROGER E. SCHECHTER,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5:62 (2d ed. 2024) (각주 생략).

⁵⁷⁾ Hougum v. Valley Mem'l Homes, 1998 ND 24, ¶ 12, 574 N.W.2d 812, 816 ("본 법원은 노스다코타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법 행위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 Nelson v. J.C. Penney Co., 75 F.3d 343, 347 (8th Cir. 1996).

⁵⁸⁾ Shannon Reid, The Deepfake Dilemma: Reconciling Privacy and First Amendment Protections, 23 U. PA. J. CONST. L. 209, 215 (2021).

⁵⁹⁾ 예를 들어, Barbieri v. News-J. Co., 56 Del. 67, 70, 189 A.2d 773, 774 (1963); Fergerstrom v. Hawaiian Ocean View Ests., 441 P.2d 141, 144 (1968) 참조.

사법관할권에서 이 불법행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사법관할권에서는 이름이 나 초상에 "본질적 가치"가 있음을 보여야 하므로, 잘 알려진 개인으로 보호가 제한되게 된다.60)

b)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맥락에서 개인의 페르소나61)를 사용하는 것을 다루며, 다른 사람이 무단 이용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권리는 유명인 과 잘 알려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불법 행위에서 발전되었다.⁶²⁾ 1953년 제2순회법원은 *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Inc.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에서 법원은 "프 라이버시권에 더하여 그리고 이와 독립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사진의 홍보 가치에 대한 권리. 즉 자신의 사진을 배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63) 고 파시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령이나 파례법으로 또는 둘 모두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64)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불법행위가 다루는 피해가 유사하기

^{60) 1} J. THOMAS MCCARTHY & ROGER E. SCHECHTER,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5:62 (2d ed. 2024) 참조. 프라이버시권법은 일반적으로 간접 책임이나 수정 헌법 제1조 예외와 같은 다른 문제를,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퍼블리시티권법이 다루는 만큼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는 프라이버시권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 의견도 많이 받지 않았다.

⁶¹⁾ 퍼블리시티귄법에서 "페르소나"라는 용어는 "개인의 정체성에 구현된 상업적 가치의 집합을 나타내기 위한 라벨로서, 그리고 피고의 사용으로부터 '식별 가능한'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페르소나'는 이름, 별명 그리고 목소리 또는 화풍이나 공연 스타일,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사람의 '페르소나'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다. Id. § 4:46.

⁶²⁾ Id. § 1:25; Melville B. Nimmer, The Right of Publicity, 19 L. & CONTEMP. PROBS. 203, 203-04 (1954) ("[프라이버시] 원칙은 19세기 보스턴 상류층(Brahmin Boston)의 감성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지만, 20세기 후반의 요구, 특히 광고, 영화, 텔레비전 및 라디오 산업과 관련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산업과 관련된 유명 인사들은 브랜다이스와 워런이 보호하려고 했던 '고독과 프라이버시'를 추구하지 않는다.").

^{63) 202} F.2d 866, 868 (2d Cir. 1953).

^{64) 1} J. THOMAS MCCARTHY & ROGER E. SCHECHTER,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6:2 (2d ed. 2024). 알래스카, 캔자스, 메릴랜드,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은 일부 주에는 법령상 또는 판례법상의 퍼블리시티권이 없다. Jennifer Rothman, Rothman's Roadman to the Right of Publicity. https://rightofpublicityroadmap.com/law/ (last visited July 21,

때문에 일부 사법관할권에서는 이 용어를 같이 사용하지만,65) 다른 사법관할권에서는 이 용어를 별개로 취급한다.66

개인의 정체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퍼블리시티권은 무단 딥페이크에 대한 가장 적절한 주법의 구제책일 수 있다.67) 그러나 많은 논평자들은 이 권리의 기본 구조가 주마다 상당히 다른 점을 지적했다.68) 보호대상과 관련해서 일부 주에서는 딥페이크보 다 더 광범위해서 보호받는 개인을 단지 떠올리게 하거나(evoke) 연상시키는(call to mind) 정체성에까지 적용된다. 잘 알려진 사례에서, 제9순회법원은 게임 쇼 세트에서 긴 가운을 입은 금발 여성이 큰 블록 글자를 돌리는 로봇을 묘사한 것이 캘리포니아의 판례법상 퍼블리시티권에 따른 청구를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그녀의 이름이나 이미지

^{2024).} 콜로라도, 델라웨어, 그리고 오리건과 같이 퍼블리시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지만 판례법상 의 권리의 존재가 불분명한 몇몇 주도 있다. Id. 일반적으로 1 J. THOMAS MCCARTHY & ROGER E. SCHECHTER,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1:2 (2d ed. 2024) 참조.

⁶⁵⁾ 예를 들어, Rosa & Raymond Parks Inst. for Self Dev. v. Target Corp., 812 F.3d 824, 830 (11th Cir. 2016) (프라이버시 침해의 마지막 범주-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의 도용-는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불린다.) *In re Jackson*, 972 F.3d 25, 34 (2d Cir. 2020) (퍼블리시티권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 Restatement (Second) of Torts의 도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책임을 사용).

⁶⁶⁾ Minnifield v. Ashcraft, 903 So. 2d 818, 826 (Ala. Civ. App. 2004) ("우리는 알라바마의 상업적 도용 프라이버시 침해 불법행위가 심리적 이익이 아닌 상업적 이익에만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상업적 도용 프라이버시 침해 불법행위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불법행위로 대체될 것이다.") 참조.

⁶⁷⁾ 다수의 논평자들은 기존의 퍼블리시티권이 일정한 딥페이크 사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예를 들어, Jennifer Rothman,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3 (Oct. 25, 2023) ("Jennifer Rothman Initial Comments") (광고에 등장하는 AI가 생성한 톰 행크스와 노래에 등장하는 AI가 생성한 드레이크와 더위켄드의 목소리라는 맥락에서, "사법관할권의 장벽이 없다면... 각각은 설명된 용도에 대해 주의 퍼블리시티권법에 따라 간단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언급); SAG-AFTRA Initial Comments at 6-7; 또한 Russell Spivak, "Deepfakes": The Newest Way to Commit One of the Oldest Crimes, 3 GEO. L. TECH. REV. 339, 383-85 (2019); Alexandra Curren, Digital Replicas: Harm Caused by Actors' Digital Twins and Hope Provided by the Right of Publicity, 102 TEX. L. REV. 155, 164, 166-67 (2023). 실제로 법원은 디지털 초상의 다른 형태에 대해 표준적인 퍼블리시티권법을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Hart v. Elec. Arts, Inc., 717 F.3d 141 (3d Cir. 2013) (축구 선수의 디지털 아바타); No Doubt v. Activision Publ'g, Inc., 122 Cal. Rptr. 3d 397 (Cal. Ct. App. 2011) (뮤지컬 그룹 노다웃(No Doubt)의 디지털 아바타) 참조.

⁶⁸⁾ 예를 들어, The Honorable Marsha Blackburn, U.S. Senator,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3 (Oct. 30, 2023) ("Senator Marsha Blackburn Initial Comments");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4 (Oct. 30, 2023); Daniel Gervais,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9 (Oct. 30, 2023) 참조.

를 사용하지 않고도 바나 화이트(Vanna White)를 "떠올리게" 했다고 판시했다.69) 또한 일부 주에서는 인디애나주의 제스처나 매너리즘(mannerisms)70) 또는 일리노이주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시청자 또는 청취자에게 해당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 의 모든 속성"71)처럼 정체성의 추가적 측면을 보호한다.

다른 경우에 법률이 너무 좁게 규정해서 모든 유형의 딥페이크 사용을 포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일부 주에서는 직업 공연자72)부터 군인73)이나 고인74)에 이르기까지 일부 개인들로 권리를 제한한다.

사후 권리의 보호, 사후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는 가장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이다.75) 현재 27개 주가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중 19개 주는 법령에 의해, 8개 주는 판례법에 의해 부여한다.76) 기간은 버지니아의 20년에서 인디애 나의 100년, 테네시에서는 권리가 계속해서 이용되는 한 무기한까지 다양하다.77) 사후 보호 기간은 개인의 정체성을 이용하는 상황, 사망 당시의 상업적 가치 그리고 유산이 법정 등록 요구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78)

⁶⁹⁾ White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971 F.2d 1395, 1399 (9th Cir. 1992), as amended (Aug. 19, 1992) ("대중에게 가장 인기 있는 유명인의 정체성은 광고주에게 가장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이름, 초상 또는 목소리와 같은 명확한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장 쉽게 연상시킬 수 있다."). 또한 Stacy L. Dogan, An Exclusive Right to Evoke, 44 B.C. L. REV. 291, 292 (2003) ("재산권이 없는 상징"이 다양한 유명인을 생각나게 하고,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사례 인용) 참조.

⁷⁰⁾ IND. CODE § 32-36-1-6 (2024).

^{71) 765} ILL. COMP. STAT. 1075/5 (West 2024).

⁷²⁾ 이 보고서 제II장 A.1.c. 참조.

⁷³⁾ ARIZ. REV. STAT. ANN. § 12-761 (2024).

⁷⁴⁾ TEX. PROP. CODE ANN. § 26.002 (West 2023). 위에 언급하였듯이 뉴욕의 딥페이크 부분 개정안(digital-replicas-specific amendment)은 사망한 공연자에게만 적용된다. N.Y. CIV. RIGHTS LAW § 50-f(1)(a)-(b), (2)(b) (McKinney 2024).

⁷⁵⁾ CAL. CIV. CODE <table-of-contents> 3344, 3344.1 (West 2024) (개인의 이름, 음성, 서명, 사진 또는 초상의 상업적인 무단 이용으로부터 보호, 사후 70년의 기간 부여, 이해관계 승계자에 의한 등록 요구); KY. REV. STAT. ANN. § 391.170 (West 2024) (이름 및 초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사후 50년간 "공적 인물"의 이름 또는 초상의 상업적 사용을 보호); 또한 Mary LaFrance, Choice of Law and the Right of Publicity: Rethinking the Domicile Rule, 37 CARDOZO ARTS & ENT. L.J. 1, 2 (2019) 참조.

^{76) 2} J. THOMAS MCCARTHY AND ROGER E. SCHECHTER,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9:17 (2d ed.).

⁷⁷⁾ VA. CODE ANN. \$ 8.01-40 (2024); IND. CODE \$ 32-36-1-8(a) (2024); TENN. CODE ANN. § 47-25-1104 (2024) 참조.

상업적 이용 요건. 많은 퍼블리시티권법은 상업적인 무단 이용에 대해서만 보호한다. 이러한 이용에는 광고 캠페인, 상품 추천, 판촉 그리고 스폰서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으 며,79) 인플루언서 마케팅 및 소셜 미디어의 브랜드 파트너십과 같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가능해진 새로운 형태의 상업적 이용으로 확장될 수 있다.80)

간접 및 중개자 책임. 주 법령의 대부분은 잠재적인 간접 책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81)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법률을 교사 및 방조 책임의 일반 불법 행위법 원칙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여, 당사자가 불법 행위를 알고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권리 침해에 대해 간접 책임을 질 수 있다.82)

몇몇 주에서는 무단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특정 유형의 중개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 으로 제한한다.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뉴욕은 이름, 이미지 또는 초상의 사용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광고 매체의 책임을 면제한다.83) 아칸소는 연방 저작권법의 개념을 빌려84)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⁷⁸⁾ 예를 들어, CAL. CIV. CODE **§** 3344.1(h) (West 2024) (사망 당시 또는 사망으로 인해 "이름, 음성, 서명, 사진 또는 초상이 상업적 가치가 있는" 사망한 인물에게 적용)

⁷⁹⁾ Onassis v. Christian Dior-New York, Inc., 472 N.Y.S.2d 254 (1984), judgment aff'd, 488 N.Y.S.2d 943 (1985) (광고에서 닮은꼴을 사용한 것은 재클린 오나시스(Jacqueline Onassis)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판시); Beverley v. Choices Women's Med. Ctr., Inc., 532 N.Y.S.2d 400 (1991) (여의사의 사진을 배포된 달력에 사용하고 피고의 사업을 광고한 것은 의사의 퍼블리시 티권 침해라고 판시)

⁸⁰⁾ Grace Greene, Instagram Lookalikes and Celebrity Influencers: Rethinking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Social Media Age, 168 U. PA. L. REV. ONLINE 153, 189-92 (2020)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정확한 이미지와 인플루언서 페르소나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합 의된) 퍼블리시티권 소송 여러 건을 인용).

⁸¹⁾ Alexandra Curren, Digital Replicas: Harm Caused by Actors' Digital Twins and Hope Provided by the Right of Publicity, 102 TEX. L. REV. 155, 164, 166-67 (2023) 참조.

⁸²⁾ 예를 들어, Perfect 10, Inc. v. Cybernet Ventures, Inc., 213 F. Supp. 2d 1146, 1183-84 (C.D. Cal. 2002); Keller v. Elecs. Arts, Inc., No. 09-cv-1967, 2010 WL 530108, at *3 (N.D. Cal. Feb. 8, 2010)(피고가 사용자들을 침해 웹사이트로 유도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캘리포니 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 공모 소송 진행을 허용) 참조.

⁸³⁾ CAL. CIV. CODE §§ 3344(f). 3344.1(a)(l) (West 2024); 42 PA. STAT. AND CONS. STAT. § 8316(d) (2024) ("어떤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든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으로 자료를 제작, 제조, 발행 또는 배포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설명); OHIO REV. CODE ANN. § 2741. 02(E) (West 2024); N.Y. CIV. RIGHTS LAW § 50-f(9) (McKinney 2024) (고의에 "사전 통지" 요건 추가).

⁸⁴⁾ 이 보고서 제II장 B.3.d 참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서비스 제공자"를 면책한다.85) 여러 법원은 중개자가 불법 활동의 "단순한 통로" 역할을 했을 경우에 주의 퍼블리시티권 위반에 대해 중개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86)

수정 헌법 제1조 보호. 주들은 법령 또는 사법적 해석을 통해 수정 헌법 제1조상의 우려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을 채택했다.87) 많은 법령은 뉴스 보도, 스포츠 방송, 정치 캠페인, 논평 및 풍자와 같이 보호되는 표현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범주의 행위에 대한 예외 조항을 규정한다.88)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법령은 "모든 뉴스. 공공 문제 또는 스포츠 방송이나 해명 또는 모든 정치 캠페인과 관련하여" 개인의 목소리나 초상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89) 일부 별도 조항은 오하이오와 같이. "문학 저작물, 희곡, 허구 저작물, 역사 저작물, 시청각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을 저작물이 등장하거나 전송되는 매체와 관계없이" 면제하는 것과 같이 더 광범위한 표현적 저작물 범주도 포함한다.90)

그러나 다른 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91) 판례법이나 명시적 면제가 없는 법령을 해석할 때, 법원은 해당 청구가 수정 헌법 제1조의 권리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다.92)

⁸⁵⁾ ARK. CODE ANN. § 4-75-1110(a)(1)(F) (2024).

⁸⁶⁾ Jane Doe No. 1 v. Backpage.com, LLC, 817 F.3d 12, 27-28 (1st Cir. 2016) (광고에 게재된 이미지를 위한 광고 웹사이트에 대한 도용 청구 기각 판결을 해당 웹사이트는 "단순 도관"이고 그 도용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용); Almeida v. Amazon.com. Inc., 456 F.3d 1316, 1326 (11th Cir. 2006) (아마존(Amazon)이 책의 판매 페이지에 허락받지 않은 이미지가 포함된 책 표지를 표시할 때 "편집상의 선택"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표시가 인터넷 서점이라는 아마존의 역할에 부수적인 것이라고 강조)

⁸⁷⁾ JENNIFER E. ROTHMAN, THE RIGHT OF PUBLICITY 145, 147 (2018) ("퍼블리시티권 사건에 서 수정 헌법 제1조 항변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5가지 균형 요소가 적용되었다... 수정 헌법 제1조가 개인의 정체성 사용을 허용하고 보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이러한 요소 모음은 유사한 사실 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이상하고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⁸⁸⁾ 예를 들어 CAL. CIV. CODE § 3344 (West 2024); ARK. CODE ANN. § 4-75-1110 (2024); N.Y. CIV. RIGHTS LAW § 50-f(2)(d) (McKinney 2024); LA. STAT. ANN. § 51:470.5 (2024); NEV. REV. STAT. § 597.790 (2023) 참조.

⁸⁹⁾ CAL. CIV. CODE § 3344(d) (West 2024).

⁹⁰⁾ OHIO REV. CODE ANN. § 2741.09(A)(1)(a) (West 2024).

⁹¹⁾ 예를 들어, KY. REV. STAT. ANN. § 391.170 (West 2024); UTAH CODE ANN. § 45-3-3 (West 2024); VA. CODE ANN. § 8.01-40 (2024) 참조.

⁹²⁾ 예를 들어, Daly v. Viacom, 238 F. Supp. 2d 1118, 1123(ND Cal. 2002) (수정 헌법 제1조는 원고가 나오는 텔레비전 쇼 광고에서 원고의 초상 사용을 보호함. 광고는 표현적 저작물로 판시됨)

사법관합권과 구제책, 주 퍼블리시티권 법령은 다양한 사법관합권 요건을 적용한다. 일부는 그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법령의 보호를 제공하고 다른 일부는 더 관대하 다.93) 승소한 원고에게 이용 가능한 구제책은 주마다 다르지만 모두 금지명령과 금전적 구제책의 형태를 규정한다.94)

c) 딥페이크에 대한 주의 새 규정

AI 생성 딥페이크의 등장에 대응하여 여러 주에서 기존의 퍼블리시티권 법령을 개정 하거나 새로운 법을 채택하는 조치를 취했다.95) 예를 들어, 테네시는 최근 퍼블리시티권 법을 확대하여 음성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법의 범위를 오로지 상업적 행위(즉, "광고 목적")에서 허락 없이 발행, 공연, 배포, 전송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 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97)

루이지애나와 뉴욕의 다른 두 주는 최근 딥페이크 사용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통과시 켰다.98) 루이지애나법은 생존 중인 직업 공연자(professional performers)에게만 적

참조. Hoffman v. Capital Cities/ABC, Inc. 255 F.3d 1180, 1186-87(9th Cir. 2001)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의 비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퍼블리시티권에 근거한 소송은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더욱 엄격한 검토를 받을 수 있음).

⁹³⁾ WASH. REV. CODE \$ 63.60.010 (2024) ("거주지 또는 사망 당시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생존 및 사망한 모든 개인 및 인물"에 적용됨)를 OHIO REV. CODE ANN. § 2741.03 (West 2024) (해당 주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개인으로 제한)와 비교

⁹⁴⁾ ARK. CODE ANN. **§** 4-75-1109 (2024) (금지명령 구제와 금전적 손해배상 및 이익의 회복을 규정); OHIO REV. CODE ANN. § 2741.07 (West 2024) (금지명령 구제 및 이익을 포함한 실제 손해의 회복, 법정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그리고 3배 손해배상을 규정).

^{95) 2023}년에 주 의원들은 191개의 AI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그 중 37개가 딥페이크를 다루고 있다. 2023 State AI Legislation Summary, BSA|THE SOFTWARE ALLIANCE (2023). https:// www.bsa.org/files/policy-filings/09222023statelegai.pdf. 무단 딥페이크 포르노와 정치에서 의 딥 페이크 사용을 대상으로 한 6개의 딥페이크 법안이 통과되었다. Id. 예를 들어, S.D. CODIFIED LAWS § 22-24A-2 (2024); 2024 Utah Laws Chs. 127 (H.B. 148), 146 (S.B. 66), 142 (H.B. 238); UTAH CODE ANN. § 20A-11-1104 (West 2024) 참조. 뉴멕시코는 2024년에 선거법을 업데이트하여 특정 캠페인 광고의 맥락에서 AI가 생성한 "실질적으로 기만적인 미디어"에 대한 책임 부인(disclaimer) 조항을 의무화했으며, 법무장관, 지방 검사, 거짓으로 표현된 개인, 후보자 또는 잠재적으로 속은 유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4 N.M. Laws Ch. 57 (H.B. 182).

⁹⁶⁾ Ensuring Likeness, Voice, and Image Security Act of 2024, Tenn. Pub. Acts ch. 588. 97) Id.

⁹⁸⁾ 다른 주들도 이에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후 퍼블리시티궈법을 개정하여 사망자의 딥페이크를 제작. 배포 또는 제공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도입하는 법안이 계류

용되며, "대본이 있는 시청각 저작물의 공연 또는 연극저작물의 라이브 공연에서 그 직업 공연자가 실제로 허구의 캐릭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인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또 만드는 경우에" 그들의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99) 뉴욕은 기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개정을 통해 사망한 직업 공연자의 무단 딥페이크를 그 사용 이 대중을 속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본이 있는 시청각 저작물에서 가상의 캐릭터로 또는 음악저작물의 라이브 공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100)

두 법 모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수용하기 위해 범주적인 면책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은 다음과 같이 보호에서 제외되는 사용의 목록을 규정하였다.

1) 저작물이 패러디, 풍자, 논평 또는 비판인 경우; 2) 정치적 또는 보도 가치가 있는 저작물, 또는 허구화 정도와 관계없이, 다큐멘터리, 다큐드라마 또는 역사 적 또는 전기적 저작물 등 이와 유사한 저작물; 3) 허구화 정도에 관계없이, 음악저작물의 라이브 공연을 제외하고, 사망한 공연자 본인인 것처럼 표현한 경우; 4) 사소한 또는 부수적인 경우; 또는 5) 앞서 언급한 저작물에 대한 광고 또는 상업적 발표.101)

루이지애나법도 마찬가지로 다음 여러 범주의 사용을 면책한다. "정치적, 공익적, 교육적 또는 보도 가치가 있는" 저작물에서 그리고 "연극, 책, 잡지, 신문, 문학 저작물, 음악 작곡, 단일의 원본 예술품이나 사진, 또는 시각저작물"에서 "뉴스, 공공 문제, 스포 츠 중계 또는 해명, 또는 정치 캠페인"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102) 이 법은 또한 "녹음 물, 시청각 저작물, 영화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면제하지만, 실제로는 그 저작물에 등장하지 않은 직업 공연자를 대체하는 무단 딥페이크가 포함된 경우는 면책하지 않는다.103)

중이다. Assemb. B. 1836, Reg. Sess. (Cal. 2024).

⁹⁹⁾ LA. STAT. ANN. § 51:470.4(C) (2024).

¹⁰⁰⁾ N.Y. CIV. RIGHTS LAW § 50-f(1)(a)-(b), (2)(b) (McKinney 2024).

¹⁰¹⁾ N.Y. CIV. RIGHTS LAW § 50-f(2)(d)(ii) (McKinney 2024).

¹⁰²⁾ LA. STAT. ANN. § 51:470.5(B) (2024).

¹⁰³⁾ Id.; id. § 51:470.2(11) ("공연"은 "직업 공연자가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은 저작물에서 직업 공연자 의 공연을 대체하기 위해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 이 법률은 또한 "1976년 미국 저작권 법의 '공정 사용' 요소에 따라 부여된 특권을 포함하여 다른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와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Id. § 51:470.5(A).

2. 연방법

개인의 이미지, 초상 또는 음성의 사용에만 초점을 맞춘 연방 법령은 없지만, 몇몇 법령은 특정 상황에서 딥페이크의 제작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에서 가장 관련이 있는 저작권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랜햄법(Lanham Act), 통신법 등 법률과 규제 체계를 간략히 설명한다. 저작권청이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에서 는 그 법과 딥페이크에 대한 법의 적용에 관한 전문 담당기관이나 논평자의 설명을 요약하다.104)

a) 저작권법

저작권은 그로부터 딥페이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독창적 저작물, 즉 사진이나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과 같은 자료를 보호한다. 105)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을 복제 하고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배타적 권리의 다발을 제공한 다 106)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기존 저작물의 복제물을 가져다가, 또는 누군가의 얼굴을 어느 시청각 저작물에 겹치게 하거나 음악 저작물의 가사를 부르는 목소리를 흉내 내는 것처 럼 저작물을 변경하여 제작된 딥페이크는 이들 배타적 권리에 저촉될 수 있다.107) 묘사 된 개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경우, 그/그녀는 저작물 전체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물에 수록된 경우에

¹⁰⁴⁾ 다른 기관들도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deral Elections Commission("FEC"))는 캠페인 광고에 후보자와 그들의 에이전트가 의도적으로 기만 적인 AI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11 C.F.R. section 110.16)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Comments sought on amending regulation to include deliberately decep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campaign ads, FEC (Aug. 16, 2023), https://www.fec.gov/updates/comments-sought-on-amending-regulation-to-include -deliberately-deceptive-artificial-intelligence-in-campaign-ads/.

^{105) 17} U.S.C. § 102 참조.

¹⁰⁶⁾ Id. § 106. 저작권법상, "이차적 저작물"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존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원본을 "재구성, 변형 또는 각색한" 저작물을 말한다. Id § 101. 이 법의 정의에 따른 이차적 저작물의 예로는 "번역, 음악 편곡, 극화, 허구화, 영화화, 녹음물, 미술 복제, 발췌, 요약 등이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Id.

¹⁰⁷⁾ 저작권청은 이 보고서의 후속 부분에서 AI 시스템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룰 것이다.

도 개인의 정체성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108) 그들의 이미지나 음성의 딥페이크만으로 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b) 연방거래위원회법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상거래에서 또는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방법과, 상 거래에서 또는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 한다.109) 기만적인 광고 및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FTC 규칙에는 개인의 정체성을 오인하게 하는 사용도 포함된다.

FTC는 저작권청의 조사 통지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했다. FTC는 경쟁을 해치는 AI 기술의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사용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권한이 있으며 "법률상 AI 면제는 없다."고 설명했다.110) FTC에 따르면 개인의 목소리와 초상을 모방하는 딥페이 크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그것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창작자의 평판을 이용하거나. 기존 또는 장래 저작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밖에 소비자 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다"면, 불공정한 경쟁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 이 될 수 있다.111)

¹⁰⁸⁾ Downing v. Abercrombie & Fitch, 265 F.3d 994, 1004(9th Cir. 2001)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은 저작권법 제102조 정의상 저작물이 아니다."); Midler v. Ford Motor Co., 849 F.2d 460. 462(9th Cir. 1988) ("목소리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소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제시된 것은 어느 저작물보다도 개인적인 것이다.") 참조; 또한 1 [. THOMAS MCCARTHY & ROGER E. SCHECHTER,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5:41 (2d ed. 2024) ("얼굴 사진이나 비디오와 같이 이러한 특징의 기록물은 연방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이를 통해 식별되는 인간의 정체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다.") 참조.

^{109) 15} USC § 45(a)(1). 많은 주에는 유사한 사업 관행을 대상으로, 상업 활동에서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정경쟁법이 있다. 예를 들어 CAL. BUS. & PROF. CODE § 17200 (West 2024) ("부정 경쟁은 불법, 불공정 또는 기만적 사업 행위 또는 관행과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며,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등을 말한다."고 규정) 참조; MASS. GEN. LAWS ch. 93A, § 11 (2024) (불공정한 경쟁 방법이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거래 또는 상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고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거래 또는 상업에 종사하 는 사람들에게 소송 권한을 부여). 이들 법들은 대체로 FTC법과 랜햄법이 제공하는 보호와 유사하 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¹¹⁰⁾ FTC Initial Comments at 3-4, 6, 8 ("FTC는 FTC법 제5조에 따라 유력 기업이 경쟁 조건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AI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불공정한 경쟁 방식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권한이 있다.").

¹¹¹⁾ Id. at 4-6.

FTC는 또한 『정부와 기업 사칭에 관한 규칙(Rule on Impersonation of Government and Businesses)』을 개정하기 위해 진행 중인 규칙 제정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112) 이 사칭 규칙113)의 공포와 동시에, 개인의 사칭을 금지하고, 사칭 규칙에 따라 불법적인 사칭에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확대하는 규칙의 확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보충 통지를 발행했다.114) 제안된 금지는 "식별 정보, 또는 개인의 휘장 또는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이 사칭된 개인 본인이거나 사칭된 개인과 제휴 관계에 있다는 허위의 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115) 음성 복제물을 포함한 딥페이크가 포함될 수 있다.116)

정부 및 기업의 사칭에 대한 최종 규칙에 수반하고 보충 통지에 대해 설명하는 성명에 서 FTC 의장 리나 칸(Lina Khan)은 레베카 슬로터(Rebecca Kelly Slaughter)와 알바 로 베도야(Alvaro Bedoya) 위원과 함께 유명인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을 사칭하는 데 사용되는 음성 복제물과 같은 AI 기반 사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117) 이 성명은 "수단 및 도구" 책임을 확장하는 것이 국세청 공무원의 딥페이크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AI 소프트웨어 도구가 사기꾼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금을 냈는지에 대해 속이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AI 개발자를 포함한 개인 또는 단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118)

¹¹²⁾ Trade Regulation Rule on Impersonation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89 Fed. Reg. 15072 (Mar. 1, 2024) ("Impersonation Rule"), https://www.govinfo.gov/content/pkg/ FR-2024-03-01/pdf/2024-03793.pdf.

¹¹³⁾ Trade Regulation Rule on Impersonation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89 Fed. Reg. 15017 (Mar. 1, 2024) (16 C.F.R. pt. 461로 편제 예정), https://www.govinfo.gov/content /pkg/FR-2024-03-01/pdf/2024-04335.pdf.

¹¹⁴⁾ Impersonation Rule at 15072. 보충 통지에서는 16 C.F.R. section 461.4의 "개인"을 "이 부분에 따라 기업이나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을 제외한, 실제 또는 허구의 사람, 단체 또는 당사자"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정의에는 사망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

¹¹⁵⁾ *Id*, at 15077.

¹¹⁶⁾ Id. at 15082 n.98("사칭을 목적으로 음성 복제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 규칙의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사용이 된다. 음성 복제물을 포함한 오디오 딥페이크는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오디오를 만들기 위해 인공 지능에 의해 생성, 편집 또는 합성된다.").

^{117) 89} Fed. Reg. 15017, 15030-31 (16 C.F.R. pt. 461로 편제 예정) (statement of Chair Lina M. Khan joined by Comm'r Rebecca Kelly Slaughter and Comm'r Alvaro M. Bedoya).

¹¹⁸⁾ Id. at 15031 (16 C.F.R. pt. 461로 편제 예정) (statement of Chair Lina M. Khan joined by Comm'r Rebecca Kelly Slaughter and Comm'r Alvaro M. Bedoya).

c) 랜햄법

랜햄법은 연방 상표법이며 일정한 불공정 경쟁 행위를 다룬다. 이 법은 상표의 기만적 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용과 불공정 경쟁, 상거래에서의 사기 및 기만 등을 금지한 다.119) 몇몇 논평자는 딥페이크를 허락 없이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은 랜햄법에 따라 허위의 후원(false endorsement)을 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0) 그들은 광고에서 유사한 소리와 초상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정체성을 허락 없이 사용한 데 대해 랜햄법에 따른 주장이 승소한 사건을 인용했다.121) 일정한 경우에는 유명인이나 공연자 가 그들의 목소리나 특정 포즈가 승소한 청구권의 기초로서 상표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122)

허위의 후원과 상표권 침해 청구권은 모두 상업적 사용과 소비자의 혼동, 실수 또는

^{119) 15} U.S.C. § 1127. 2024년 3월, 미국 특허상표청은 지식재산권과 AI에 대한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여기에는 "AI, NIL 그리고 Lanham Act"라는 제목의 패널 토론이 포함되어 이름, 이미지 그리고 초상과 생성 AI와의 교차점과 관련된 법적·정책적 고려 사항을 다루었다. Public Symposium on AI and IP, U.S. PAT. AND TRADEMARK OFF. https://www.uspto.gov /about-us/events/public-symposiumai-and-ip (2024년 7월 21일 최종 방문).

¹²⁰⁾ 랜햄법 제43조(a)항은 상거래에서 "혼란을 유발하거나 실수를 유발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제휴, 연결 또는 연관성이나 다른 사람의 상품, 서비스 또는 상업 활동의 출처, 후원 또는 승인에 대해 기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단어, 용어, 이름, 기호 또는 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 또는 허위 출처 표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실 설명 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실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5 U.S.C. \$ 1125(a)(1). 랜햄법에 관련한 의견에 대해서 는 다음 등을 참조.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6 (Oct. 30, 2023)("INTA Initial Comments"); Jennifer Rothman Initial Comments at 3;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5 (Oct. 30, 2023); SAG-AFTRA Initial Comments at 5; Kernochan Center for Law, Media and the Arts,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6 (Oct. 30, 2023).

¹²¹⁾ 예를 들어, UMG Initial Comments at 93 (Waits v. Frito-Lay, Inc., 978 F.2d 1093 (9th Cir. 1992) 판례 인용).

¹²²⁾ 예를 들어, INTA Initial Comments at 7 ("특정 사진이 특정 상품에 일관되게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이미지나 초상은 상표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일반 규칙"에 대해, ETW Corp. v. Jireh Publ'g, Inc., 332 F.3d 915, 922 (6th Cir. 2003) 인용); Law Office of Seth Polansky LL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7 (Oct. 12, 2023) ("Seth Polansky Initial Comments"); Presley's Est. v. Russen, 513 F. Supp. 1339, 1364-65 (D.N.J. 1981) (엘비스(Elvis)의 초상과 이미지가 서비스 상표로 사용된다는 주장은 너무 광범위하지만, "엘비스가 그의 특징적인 점프 수트를 입고 노래하는 포즈로 마이크를 든 사진이나 삽화는 서비스 상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해당 상표와 관련해 침해 청구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참조.

기망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랜햄법은 피고인의 사용이 "혼동을 유발하거나, 실수를 유발하거나,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제휴, 연결 또는 연관성에 대해 기만하거나, 그 사람의 상품, 서비스 또는 상업 활동에 대한 출처, 후원 또는 승인에 대해 다른 사람을 기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123) 아티스트와 공연자를 포함한 많은 개인은 문제가 된 행위가 원고와 피고의 상업 활동의 연관성 또는 승인에 대해 소비자를 혼동케 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INTA가 지적했듯이 AI가 생성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는 아마도 그 범위를 벗어날 것이다. 124)

d) 통신법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딥페이크를 규제하고 주 법무장관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하 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다. 2023년에 위원회는 소비자를 표적으로 삼는 자동 녹음 전화 사기에 AI가 생성한 음성 복제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 통지를 발표했 다.125) 이 조사에 이어, 위원회는 『전화 소비자 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에 따라 만장일치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자동녹음 전화 사기에 사용되는 음성 복제 기술을 불법화 하는"126) 선언적 규정을 채택하고 주 법무장 관에게 규칙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했다. FCC 의원장인 제시카 로젠워슬(Jessica Rosenworcel)은 "나쁜 사람들이, 요청하지 않은 자동녹음 전화에서 AI가 생성한 목소 리를 사용하여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갈취하고, 유명인을 모방하고, 유권자들에게 잘못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자동녹음 전화의 배후에 있는 사기꾼들에게 경고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127)

^{123) 15} U.S.C. § 1125(a).

¹²⁴⁾ INTA Initial Comments at 8.

¹²⁵⁾ F FCC, Notice of Inquiry on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on Protecting Consumers from Unwanted Robocalls and Robotexts, CG Docket No. 23-362 (Nov. 16, 2023), https://docs.fcc.gov/public/attachments/FCC-23-101A1.pdf.

¹²⁶⁾ FCC Makes AI-Generated Voices in Robocalls Illegal, FCC (Feb. 8, 2024), https://docs. fcc.gov/public/attachments/DOC400393A1.pdf; FCC, Declaratory Ruling on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on Protecting Consumers from Unwanted Robocalls and Robotexts, CG Docket No. 23-362 (Feb. 2, 2024), https://docs.fcc.gov/public/ attachments/FCC-24-17A1.pdf 참조.

¹²⁷⁾ FCC Makes AI-Generated Voices in Robocalls Illegal, FCC (Feb. 8, 2024), https://docs. fcc.gov/public/attachments/DOC400393A1.pdf.

3. 사적 계약

이러한 법령과 판례법에 의한 보호 외에도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사적 계약이 협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연자 서비스 계약에는 종종 다른 계약 당사자가 공연자의 정체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제한하는 조건이 포함 되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연자가 등장하는 저작물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공연자의 이름, 이미지, 음성 또는 초상을 사용하는 것을 다룬다.128) 이는 예를 들어 기간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공연이나 상황으로 제한하는 등 제한된 사용만 허용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배타적으로 영구 양도하는 것과 같이 광범위한 통제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129) AI의 출현으로 일부 계약에는 이제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특정 조건이 포함되다. 예를 들어. 탤런트 에이전시 WME는 AI 경험 및 제품과 관련하여 고객들의 초상과 개성(personalities) 의 사용을 위한 거래에 대해 설명했다.130)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기준이 되는 고용 조건을 정하는 단체 교섭 협약에 AI가 생성한 딥페이크의 처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2023년 12월, SAG-AFTRA 는 영화협회(Alliance of Motion Picture)와 AI가 생성하는 딥페이크의 작성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다년 협약을 체결했다.131) 이 협약 체결은 몇 달간의 파업의

^{128) 2} J. THOMAS MCCARTHY & ROGER E. SCHECHTER,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10:48 (2d ed. 2024) (배우나 공연자가 영화에서 연기하거나 음반을 녹음하기 위해 제작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 배우나 공연자는 일반적으로 '권리 부여' 조항이 포함된 계약에 서명한 다. '권리 부여' 조항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양도하고, 제작자가 저작물의 광고나 홍보에서 배우나 공연자의 정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¹²⁹⁾ JENNIFER E. ROTHMAN, THE RIGHT OF PUBLICITY 120 (2018); 또한 id. at 122("이러한 자발적인 양도의 대부분은 특정 기간이나 텔레비전 방송의 맥락 또는 특정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되지만, 종종 더 광범위해서 영구적으로 어떤 경우에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참조. 소송을 통해 공개된 계약 조건은 이러한 계약의 범위와 폭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In re Jackson, 972 F.3d 31 (음반사에 녹음물과 비디오에 대한 광고와 마케팅에 아티스트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하는 일정 기간의 배타적 권리와 그 이후의 비배타 적 권리를 부여하는 녹음 계약); Lugosi v. Universal Pictures, 25 Cal. 3d 813, 816 n.2(Cal. 1979) (영화에 대한 권리 부여 조항에는 부분적으로 "아티스트 이름과 초상 또는 그 밖의 모습, 그리고 아티스트 음성의 녹음물과 복제물과 아티스트가 제작한 모든 악기, 음악 그리고 그 밖의 음향 효과를 해당 사진의 광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홍보할 권리가 포함된다(강조 생략)).

¹³⁰⁾ WME Initial Comments at 2 ("WME는 이미 고객과 협력하여 AI 관련 거래를 협상했다... [예를 들어] 〈스눕 독(Snoop Dogg)〉의 목소리를 AI 앱 〈아티팩트(Artifact)〉에 제공하는 거래, 그리고 고객의 초상과 개성을 일련의 AI 기반 챗봇에 제공하는, 〈메타(Meta)〉와 〈WME〉 고객 사이의 거래").

¹³¹⁾ 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 the SAG-AFTRA and the AMPTP 60-76 (2023) ("SAG-AFTRA 2023 Agreement"), https://www.sagaftra.org/files/2023 Theatrical Tele vision MOA.pdf.

결과였는데, 이 문제는 "최전선에" 있던 이슈의 하나였다.132) 협약의 최종 조건은 의도 된 사용이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에 고용의 범위 밖에서 작성된 딥페이크 에 대한 동의, 보상 및 예외와 관련된 지침을 설정한다.133)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사용에는 "논평, 비판, 학술, 풍자 또는 패러디의 목적 또는... 다큐멘터리 또는 역사적 또는 전기적 저작물에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134) 음성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성우와 녹음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유사한 보호가 협상되었다.135)

AI 기술이 발전을 계속하면서 맞춤형 사적 계약이 점점 더 일반화될 것이다.136) 그러 나 이러한 계약이 특히 단체 교섭의 맥락 밖에서 다른 많은 산업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 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B. 연방 입법의 필요성

저작권청은 새로운 연방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많은 논평자들이 지적 했듯이, 생성 AI 기술은 국가적 대응을 요구하는 속도와 규모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전파할 수 있게 해준다.137) 그 영향은 일부 개인, 특정 산업 또는 지리적 위치에 국한되지

¹³²⁾ SAG-AFTRA Initial Comments at 1 ("우리 회원 중 다수가 AI를 임금 인상이나 다른 근로 조건의 개선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직접적인 생계에 존재적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¹³³⁾ SAG-AFTRA 2023 Agreement at 60-76.

¹³⁴⁾ Id. at 67.

^{135) 2024}년 1월, SAG-AFTRA는 비디오 게임 스튜디오에서 디지털 음성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레플리카 스튜디오(Replica Studios)와 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 4월, 회원들은 녹음물에 서 음성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여러 주요 음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두 계약 모두 동의 및 보상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SAG-AFTRA and Replica Studios Introduce Groundbreaking AI Voice Agreement at CES, SAG-AFTRA (Jan. 9, 2024), https://www. sagaftra.org/sag-aftra-and-replica-studios-introduce-groundbreaking-ai-voice-agre ement-ces; SAG-AFTRA Members Ratify 2024 Sound Recordings Code Contract, SAG-AFTRA (Apr. 30, 2024), https://www.sagaftra.org/sag-aftra-members-ratify-2024-sound -recordings-code-contract.

¹³⁶⁾ 최근 2024년 6월, 국제극장무대종사자연맹(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IATSE")과 AMPTP는 종사자를 "스캔"하는 것에 대한 요청 및 동의를 포함하는 임시 합의에 도달 했다. Tentative 2024-2027 Basic Agreement Summary at 5, IATSE (2024), https://iatse. net/wp-content/uploads/2024/06/2024-SUMMARY-OF-BASICAGREEMENT-NEGOTIA TIONS 6.28.24-FINAL.pdf.

¹³⁷⁾ 예를 들어,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Comments Submitted

않는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존 법률은 이에 대해 충분히 적절한 보호 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1. 기존법의 한계

주법은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고 불충분하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일부 주는 현재 퍼블리시티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138) 다른 주는 특정 범주의 개인만 보호한다.139) 여러 주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상업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140) 모든 주의 법이 개인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해도 식별가능하 고 잘 알려진 목소리, 상업적 가치가 있는 목소리로141) 또는 (딥페이크가 아니라) 실제 음성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다.142)

주의 퍼블리시티권법은 일반적으로 침해가 광고, 상품 판매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다.143) 이러한 법은 인터넷 환경에서 특히 널리

- 138) 1 J. THOMAS MCCARTHY & ROGER E. SCHECHTER,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6:2 (2d ed. 2024).
- 139) 예를 들어. 위의 각주 72-74와 관련 부분 참조.
- 140) 예를 들어, 42 PA. STAT. AND CONS. STAT. ANN. § 8316 (2024); OHIO REV. CODE ANN. §§ 2741.01, 2741.02 (West 2024) 참조.
- 141) 예를 들어, 42 PA. STAT. AND CONS. STAT. ANN. § 8316 (2024); OHIO REV. CODE ANN. §§ 2741.01(A), 2741.02 (West 2024) 참조.
- 142) 예를 들어, Midler, 849 F.2d at 463 (캘리포니아 퍼블리시티권법률은 음성 모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지만, 캘리포니아 판례법에 따라 "직업 가수의 식별력 있는 음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것을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의로 모방하였다면 판매자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도용한 것이고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 참조.
- 143) 예를 들어, 765 ILL. COMP. STAT. ANN. 1075/30 (2024); VA. CODE ANN. § 8.01-40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3 (Oct. 30. 2023) ("이 새로운 기술의 편재성과 규모는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연방법을 필요로 한다."); Songwriters of North America ("SONA") et al.,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0-11 (Oct. 30, 2023) ("SONA-MAC-BMAC Joint Initial Comments") ("우리는 개인의 식별, 즉 이미지, 음성, 특징 및 그 밖의 초상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연방법이 필요함을 강력히 느낀다.") WME Initial Comments at 5-6;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art II—Identity in the Age of AI: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Cts., Intell. Prop., & the Internet of the H.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Jennifer Rothman,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in response to Questions for the Record ("QFRs") from Rep. Darrell Issa) ("AI의 최근 발전은... 개인의 정체성을 무단으 로 사용하는 문제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기존의 몇 가지 과제를 부각시킨다.") 참조.

퍼져 있는 딥페이크 포르노 등 비상업적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144) 사법관합권 요건이 다르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진다.145) 마지막으로 이들 법률 중 일부는 수정 헌법 제1조 요건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예외를 규정하여 많은 무단 사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46) 많은 논평자가 지적했듯이 결과적으로 누더기 보호가 되어, 영향을 받는 개인이 거주하거나 무단 사용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존의 연방법은 오늘날의 정교한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너무 좁게 정의되어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보호. 하지만 개인의 이미지나 음성만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막지 못하며,147) 표적이 된 개인 은 저작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닐 수도 있다.148)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상거래에서의 또는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 적인 행위나 관행을 금지한다.149) 딥페이크가 상업적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사례에 적용될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랜햄법상 딥페이크와 관련된 허위의 후원과 같은 청구권은 *상업적인* 무단 사용으로 제한되며 대부분의 연방 법원은 혼동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묘사된 개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랜햄법의 보호를 유명인과 상업적 상황으 로 제한하게 된다. 덜 유명한 아티스트와 공연자를 포함한 많은 개인이 문제가 된 행위가 원고와 피고의 상업적 활동과의 연관성이나 후원에 대해 소비자를 혼동케 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AI가 생성한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문제는 아마도 그 범위를 벗어날 것이다.150)

연방 통신법도 무단 딥페이크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FCC에 공중통신서비스, 전송 및 케이블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관련된 집행 권한을

^{(2024);} FLA. STAT. § 540.08 (2024) 참조.

¹⁴⁴⁾ 이 보고서 제2장 A.1.b 참조

¹⁴⁵⁾ *Id* 참조.

¹⁴⁶⁾ 예를 들어, OHIO REV. CODE ANN. § 2741.09(A)(1)(a) (West 2024); 또한 제II장 B.3.f 참조.

^{147) 17} USC § 102 참조; 또한 제II장 A.2.a 참조.

^{148) 17} USC § 102(a) 참조; id. § 201(a).

^{149) 15} USC § 45(a)(1) 참조.

¹⁵⁰⁾ INTA Initial Comments at 8.

제공한다.151) 자동녹음 전화 사기에 맞서기 위한 FCC의 노력은 전화 문제와 관련된 권한에서 비롯되며, 그 특정 맥락에서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딥페이크의 사용과 전파가 일반적일 수 있지만 FCC의 집행 범위에 속하지 않는 상황, 예를 들어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특징으로 하는 웹사이트에까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2. 의회의 노력

이 보고서의 저작권청 권고안은 진행 중인 의회의 노력을 배경으로 제시된 것이다.152) 의회 의원들은 AI가 생성한 딥페이크가 저작권 침해 문제와 노동의 대체 그리고 선거의 역정보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153) 지난해 AI와 저작권에 대한 청문회에서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은 "저작권법을 변경하거나 연방 퍼블 리시티권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보호 조치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와 AI의 혁신 및 창의성 향상 능력 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을지"154)에 대해 질의했다.

¹⁵¹⁾ Comcast Corp. v. FCC, 600 F.3d 642, 645(DC Cir. 2010).

¹⁵²⁾ 이 논의는 2024년 7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관련 의회의 노력을 반영한다.

¹⁵³⁾ 저작권청은 대학 운동선수와 관련된 이름, 이미지 및 초상 문제가 최근 의회의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 문제들과 다르며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문제는 2021년 대법원 판결인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v. Alston, 141 S. Ct. 2141 (2021)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판결은 부분적으로 NCAA의 대학 운동선수 보상 한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알스톤(Alston)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많은 주에서 대학 운동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일반적으로 Maureen A. Weston, Off the Guardrails: Opportunities and Caveats for Name Image Likeness and the [Student] Athlete Influencer, 11 TEXAS A&M L. REV. 911 (2024), https://ssrn.com/abstract=4734794 참조.

¹⁵⁴⁾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Part II: Copyright: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ntell. Prop.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3) (statement of Sen. Chris Coons, Chair, S. Subcomm. on Intell. Prop.). 법원, 지식재산권 및 인터넷에 관한 하원 사법소위원회와 상원 지식재산권 사법소위원회는 모두 개인의 초상, 음성, 그리고 그 밖의 개인을 식별하는 특성과 관련하여 AI 기술의 오용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The* NO FAKES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ntell. Prop.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art II—Identity in the Age of AI: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Cts., Intell. Prop., & the Internet of the H.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Oversight of AI: Election Deepfake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Priv., Tech., & the Law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ee also At Senate Judiciary Subcommittee Hearing, Klobuchar Urges Action

정치 광고 및 소통,155) 그리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156)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맥락에서 무단 딥페이크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법안에는 AI가 생성한 내밀한 디지털 묘사물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내밀한 이미지 딥페이크 방지법(Preventing Deepfakes of Intimate Images Act),,157) 정치 광고에서 AI가 생성한 소리나 이미지 사용을 부인하도록 요구 하는 『REAL 정치 광고법(REAL Political Advertisements Act)』, ¹⁵⁸⁾ 연방 선거와 관련된 기만적인 AI 생성 미디어를 배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AI 선거기만 방지법 (Protect Elections from Deceptive AI Act)』159) 등이 있다.

현재까지 두 개의 법안이 딥페이크의 무단 사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 지능 딥페이크 및 무단 복제 금지법(No Artificial Intelligence Fake Replicas And Unauthorized Duplications ("No AI FRAUD") Act)』160)과 『2023 창작물 육성, 예술 진흥 및 엔터테인먼트 안전법(Nurture Originals, Foster Art, and Keep Entertainment Safe("NO FAKES") Act of 2023)』 논의 초안¹⁶¹⁾이 그것이다. 여러 논평자들이 이 두 가지 제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전반적으로 지지했다.162)

to Address Deepfakes in Elections, AMY KLOBUCHAR, SENATOR (Apr. 16, 2024), https://www.klobuchar.senate.gov/public/index.cfm/2024/4/at-senate-judiciarysubc ommittee-hearing-klobuchar-urges-action-to-address-deepfakes-in-elections.

¹⁵⁵⁾ REAL Political Advertisements Act, H.R. 3044, 118th Cong. (2023); Candidate Voice Fraud Prohibition Act, H.R. 4611, 118th Cong. (2023); REAL Political Advertisements Act, S. 1596, 118th Cong. (2023); Protect Elections from Deceptive AI Act, S. 2770, 118th Cong. (2023).

¹⁵⁶⁾ Preventing Deepfakes of Intimate Images Act, H.R. 3106, 118th Cong. (2023); Protect Victims of Digital Exploitation and Manipulation Act of 2024, H.R. 7567, 118th Cong. (2024); DEFIANCE Act of 2024, S.3696, 118th Cong. (2024); TAKE IT DOWN Act of 2024, S.4569, 118th Cong. (2024).

¹⁵⁷⁾ Preventing Deepfakes of Intimate Images Act, H.R. 3106, 118th Cong. (2023).

¹⁵⁸⁾ REAL Political Advertisements Act, S. 1596, 118th Cong. (2023); REAL Political Advertisements Act, H.R. 3044, 118th Cong. (2023)

¹⁵⁹⁾ Protect Elections from Deceptive AI Act, S. 2770, 118th Cong. (2023).

¹⁶⁰⁾ No AI FRAUD Act, H.R. 6943, 118th Cong. (2024).

¹⁶¹⁾ Sen. Chris Coons et al., NO FAKES Act Discussion Draft (2023), https://www.coons. senate.gov/imo/media/doc/no fakes act draft text.pdf. 2024년 7월에 제출된 COPIED Act는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출처 정보의 부착과 관련된 규칙을 수립하지만 개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The COPIED Act, S. 4674, 118th Cong. (2024) 참조.

¹⁶²⁾ 예를 들어, SAG-AFTRA Initial Comments at 7-8; Sandra Aistars,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0 (Oct. 30,

a) AI사기방지법(No AI FRAUD Act)

2024년 초에 제출된 AI사기방지법은 음성 및 초상163)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립하고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무단 음성 딥페이크 및 디지털 묘사물(digital depictions) 의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164) 이 법안은 이러한 권리를 개인의 생존 중에 양도하거나 상속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165) 권리는 생전에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개인이 사망한 후 최소 10년 동안 보호되며, (a) 유언 집행자, 양수인,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2년 동안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b) 모든 유언 집행 자, 양수인,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호된다. 166)

이 법안은 디지털 묘사물 또는 음성 딥페이크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허락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개인이 변호사에 의해 대리될 때만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개인이 미성년자 인 경우, 계약은 주법에 따라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67) 승인이 단체 교섭 협약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도 유효할 수 있다.168)

이 법안은 허락받지 않았음을 알면서 음성 딥페이크 또는 디지털 묘사물을 전파하는 것과.169) 특정 개인의 음성 딥페이크 또는 디지털 묘사물을 제작하도록 고안된 "개인화 된 복제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에 대해 직접 책임을 규정한다.170) 권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직접 침해하는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시하거나,

^{2023);} Independent Music Publishers International Forum,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3 (Oct. 30, 2023); Dina LaPolt,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910 (Oct. 30, 2023) ("Dina LaPolt Initial Comments") 참조.

¹⁶³⁾ AI 사기 금지법, HR 6943, 제118회 의회 § 3(b)(1)-(2) (2024).

^{164) &}quot;디지털 묘사물"은 개인의 "초상"의 "복제물, 모방물 또는 근사물"이며, "어느 개인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실제 또는 시뮬레이션된 이미지 또는 초상으로 정의된다. Id. § 3(a)(2), (6) (2024). 이 법안은 "음성"을 묘사된 개인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실제 또는 모조된 음성으로 정의하는 반면, "음성 딥페이크"은 개인이 실제로 실연하지 않은 "개인의 [음성]복제물, 모방물 또는 근사물" 을 포함하는 오디오 렌더링을 말한다. Id. § 3(a)(4)-(5).

¹⁶⁵⁾ *Id.* § 3(b)(2)–(3).

¹⁶⁶⁾ Id. § 3(b)(2)-(3).

¹⁶⁷⁾ Id. § 3(b)(4)(A).

¹⁶⁸⁾ *Id.* § 3(b)(4)(B).

¹⁶⁹⁾ 특히, "공개, 공연, 배포, 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 Id. § 3(c)(1)(B).

¹⁷⁰⁾ Id. § 3(a)(3), (c)(1)(A). 이 법안에는 이 위반에 대한 고의 요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이를 조장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간접 책임을 규정한다.171)

수정 헌법 제1조를 수용하기 위해 이 법안은 법원이 공익과 사적인 딥페이크권의 균형을 맞추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의 목록을 규정한다.172) 그러나 디지털 묘사물에 "아동 성학대물이 포함되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내밀한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에 는 이 균형 프레임 워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173)

가능한 구제책에는 법정 손해배상 또는 실제 손해배상이나 둘 중 더 큰 금액. 상실 소득,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174) 이 법안은 『통신품위 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의 목적상 이 법을 지식재산으로 분류한 다.175) 이는 다른 주법이나 연방법에 우선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176)

b) 페이크방지법(NO FAKES Act) 논의 초안

페이크방지법 논의 초안은 "딥페이크에 개인의 이미지. 음성 또는 시각적 초상을 사용 하도록 허락할 권리"를 규정한다.177) 이 권리는 개인이 사망한 후 70년 동안 계속되는, 상속하거나 라이선스 가능한 재산권이며, 살아있는 동안 이용되지 않더라도 그러하 다.178)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는 개인이 변호사를 통해 대리되거나,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라이선스가 단체 교섭 협약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179)

¹⁷¹⁾ Id. § 3(c)(1)(C). 이 법안에는 피난항(비침해간주) 조항이 없으며, 책임제한 조항은 침해 행위에 대한 항변이 아니다. 동 § 3(c)(2)(D).

¹⁷²⁾ Id. § 3(d). 이러한 요소에는 "(1) 사용이 상업적인지 여부, (2) 문제가 되는 목소리 또는 초상의 개인이 그러한 사용이 나타나는 저작물의 주된 표현 목적에 필요하고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그 사용이 문제가 되는 목소리 또는 초상권의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받은 사람의 저작물 가치와 경쟁하거나 그 밖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Id.

¹⁷³⁾ *Id.* § 3(e)(3).

¹⁷⁴⁾ *Id.* § 3(c)(2)(A)–(C).

¹⁷⁵⁾ Id. § 3(j); 제II장 B.3.d.iii 참조.

¹⁷⁶⁾ No AI FRAUD Act, H.R. 6943, 118th Cong. § 3(g) (2024).

¹⁷⁷⁾ Sen. Coons et al., NO FAKES Act Discussion Draft § 2(b)(1) (2023), https://www.coons. senate.gov/imo/media/doc/no fakes act draft text.pdf.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개인의 실제 이미지, 음성 또는 시각적 초상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녹음물이나 시청각 저작물에 고정된 표현물로 정의한다. Id. § 2(a)(1).

¹⁷⁸⁾ *Id.* § 2(b)(2)(A).

¹⁷⁹⁾ Id. § 2(b)(2)(B).

법안 초안은 동의 없이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한 다.180) 이 책임은 "해당 개인이나 권리자가 딥페이크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조건으로 한다.181) 초안은 뉴스, 공공 문제 또는 스포츠 방송에서의 딥페이크 사용; 다큐멘터리, 역사 또는 전기물에서의 사용; 논평, 비판, 학술, 풍자 또는 패러디를 위한 경우; 사용이 사소하거나 우발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범주의 목록 을 담고 있다.¹⁸²⁾

가능한 구제책에는 법정 손해배상 또는 실제 손해배상 중 더 큰 금액, 징벌적 손해배 상,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183) 이 법안은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목적상 이 법을 지식재산으로 분류한다. 184) 이 법안은 다른 주법이나 연방법에 우선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185)

3. 새로운 권리의 기본 구조

조사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저작권청은 새로운 딥페이크 권리의 기본 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받았다. 의견과 기존 법률 및 현재의 입법안을 검토한 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 요소를 확인했다: (1) "딥페이크"의 정의. (2) 보호 대상자. (3) 보호 기간. (4) 금지되는 행위. (5) 간접 책임. (6) 라이선스 및 양도. (7) 수정 헌법 제1조 우려의 수용. (8) 구제책. 그리고 (9) 주법과의 관계. 186)

¹⁸⁰⁾ Id. § 2(c)(2).

¹⁸¹⁾ Id. § 2(c)(2)(B). 초안 법안은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도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면책 조항을 표시하거나 딥페이크의 "제작, 개발, 배포 또는 보급"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방어가 되지 않는다. Id. § 2(d)(3).

¹⁸²⁾ Id. § 2(c)(3).

¹⁸³⁾ Id. § 2(d)(4).

¹⁸⁴⁾ Id. § 2(f); 아래 섹션 II.B.3.d.iii 참조.

¹⁸⁵⁾ Sen. Chris Coons et al., NO FAKES Act Discussion Draft § 2(e) (2023), https://www. coons.senate.gov/imo/media/doc/no_fakes_act_draft_text.pdf.

¹⁸⁶⁾ 조사 통지에서 의견을 구하지 않은, 이 보고서에서 자세히 논의되지 않은 다른 문제들이 있다. 여기에는 시효, 소급보호, 연방 법원이 전속 사법관합권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a) 보호 대상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딥페이크"를 "어느 개인을 사실적으로 그러나 거짓으로 묘사 하기 위해 디지털로 작성되거나 조작된 비디오. 이미지 또는 오디오 녹음물"로 정의했 다.187) 새로운 법안에는 보호하려는 대상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저작권청은 정의를 제안하는 의견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의 견해로는 새로운 권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의 퍼블리시티권은 캐치프레이즈나 캐리커처를 포함한 광범위한 모방이나 연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 었다.188) 하지만 음악에서의 음성 복제와 실제 사람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디오나 이미지의 작성 등 현재 연방의 주의가 필요한 행위에는 단순히 개인을 연상시키는 것뿐 만 아니라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가 관련되다. 우리는 연방법이 복제되는 실제의 개인처럼 설득력 있게 보이는 딥페이크를 대상으로 삼을 것을 궈고한다.

b) 보호 대상자

위에서 논의한 대로, 주정부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 법률은 보호 대상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부 주에서는 자신이 유명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이 상업 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 189)

여러 논평자들은 유명한 정도나 정체성의 상업적 가치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보호를 부여하는 연방 권리를 지지했다.190)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초상 사용을

¹⁸⁷⁾ 이 보고서 제I장 A. 참조.

¹⁸⁸⁾ 이 보고서 제II장 A.1 참조.

¹⁸⁹⁾ IND. CODE ANN. § 32-36-1-6 (2024)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대상을 상업적 가치가 있는 속성(이 름, 음성, 이미지 또는 초상 등)을 소유한 자연인으로 정의); OHIO REV. CODE 8 2741.01(A). 2741.02 (2024) ("개인의 이름, 음성, 서명, 사진, 이미지, 초상 또는 독특한 외모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보호").

¹⁹⁰⁾ David Newhoff,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5 (Oct. 7, 2023) ("David Newhoff Initial Comments") ("퍼블리 시타권법이 확대된다면, 유명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Walker Wambsganss et al.,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5 (Oct. 26, 2023) ("Walker Wambsganss et al. Initial Comments") ("최소한의 기준은...그들의 공적이거나 사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개인 초상에 대한 동의 를 얻는 것 등을 포함하여 다시 설정되어야 한다.../"); Internet Archive,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1-12 (Oct.

통제하는 데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협박, 괴롭힘, 명예 훼손 그리고 포르노에서의 사용과 같은 피해는 유명인만 겪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191) 유명한 공연자는 AI가 생성한 녹음물이 음악 차트 1위에 오르는 데 더 취약할 수 있는 반면에. 대중은 누구나 가까운 가족을 모방하는 자동녹음 전화를 받는 수신자가 되거나 그들을 모욕하는 데 사용되는 노골적인 이미지의 주체가 될 수 있다.192) 모든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 으로 명성이나 상업적 가치를 요구하지 않는 판례법상의 프라이버시권에 부합한다.193)

저작권청은 연방 딥페이크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충분한 보호를 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고. 이 법이 모든 개인을 포괄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c) 보호 기간

적절한 보호 기간은 어느 정도 논란의 대상이다. 상속인이나 양수인이 사망자의 음성 과 이미지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사후에도 보호를 계속해야 하는가? 위에서 논의했 듯이, 여러 주에서 사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그 보호는 기간과 상업적 이용의 지속 등과 같은 조건에서 다양하다.

저작권청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받았다. 탤런트 에이전시 WME는 사후의 보호를 지지하며 "무단 딥페이크는 AI의 *합법적* 사용을 통해 아티스트의 레거시를 보존 하고 강화하려는 재산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빼앗을 위험이 있으며"아티스트의 전체 저작물의 진본성, 신뢰성 및 상업적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194) 일부 법원

^{30, 2023) (&}quot;Internet Archive Initial Comments")("공중은 끊임없이 감시받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 존재할 권리와 우리의 초상이 우리를 모욕하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INTA Initial Comments at 10-11 (연방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기본 적인 기준에는 "개인 청구인은 퍼블리시티권을 갖기 위해 자신의 페르소나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¹⁹¹⁾ 예를 들어, Jennifer Rothman Initial Comments at 5 ("많은 일반인의 이름, 초상, 목소리가 명예 훼손 및 상업적 손해를 포함한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허락 없이 사용된다. 소송을 제기하는 데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어야 한다."); IInternet Archive Initial Comments at 12 ("유명인에게 자신의 이미지가 수집, 처리 및 사용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할 것이 다.") 참조.

¹⁹²⁾ 이 보고서 제I장 A 참조.

¹⁹³⁾ 이 보고서 제II장 A.1.a 참조.

¹⁹⁴⁾ WME Initial Comments at 4. 다른 여러 그룹과 개인도 사후 보호를 지지했다. 예를 들어, INTA

과 논평자들은 사후의 권리가 사망자의 레거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195) 사망 전에 이루어진 양도의 가치를 보호하며,196) 상속인과 양수인이 불쾌하거나 모욕적이라고 생 각하는 이용을 방지하고,197) 그리고 다른 유형의 재산의 취급에 부합한다는 논거를 제시하였다.198)

그러나 사후 권리에 대한 지지는 만장일치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이익이 덜 강력해서 표현적 콘텐츠에 이를 적용하면 수정 헌법 제1조에 근거한 도전에 더 취약하다고 주장했다.199) 사후 권리는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동기 부여 요인으로서 거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200)

또한 자신의 이미지, 음성 및 초상에 대한 권리가 본질적으로 개인에 전속하며, 프라이 버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되는 이익은 사망하면 살아남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Initial Comments at 11; Letter from RIAA, Summary of Ex Parte Meeting on April 23, 2024 Regarding the Office's AI Study, to U.S. Copyright Office (Apr. 29, 2024); The NO FAKES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ntell. Prop.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FKA twigs, Singer, Songwriter, Producer, Dancer, and Actor, in response to OFRs from Sen. Thom Tillis)("〈딥페이크금지법〉은 또한 아티스트의 권리와 이미 지를 그의 사후 영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¹⁹⁵⁾ Martin Luther King Jr., Ctr. for Soc. Change v. Am. Heritage Prods., 694 F.2d 674, 682(11th Cir. 1983) ("유명인과 함께 퍼블리시티권이 종료되면 유명인의 때 이른 죽음이 계속적 인 상업적 이용의 가치를 파괴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기 때문에 생전 퍼블리시티권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 State ex rel. Elvis Presley Int'l Mem'l Found. v. Crowell, 733 SW2d 89, 99 n.11(Tenn. Ct. App. 1987) (유명인이 사후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귀중한 자본을 창출할 것이라는 그의 기대를 법이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 Peter Felcher & Edward Rubin, The Descendibility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There Commercial Life After Death?, 89 Yale L.J. 1125, 1128-29 (1980).

¹⁹⁶⁾ Martin Luther King Jr., Ctr. for Soc. Change, 694 F.2d 705 참조.

¹⁹⁷⁾ Marc A. Lieberstein, Why a Reasonable Right of Publicity Should Survive Death: A Rebuttal at 9, 10, NYSBA BRIGHT IDEAS (2008) ("사후 퍼블리시티권이 없다면 마릴린 먼로 (Marilyn Monroe)의 이름이나 초상이 이동식 화장실에 사용될 수도 있다. 먼로의 페르소나에 대한 이러한 모욕적인 무단 사용은 상속인 그리고/또는 그 밖의 허락받은 기관이 사후 퍼블리시티 권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리적인 법률이 없다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¹⁹⁸⁾ 예를 들어, State ex rel. Elvis Presley Int'l Mem'l Found., 733 SW2d at 97-98("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생전에 무형재산권으로 취급되었다면, 사망해도 역시 재산권이다.") 참조.

¹⁹⁹⁾ 예를 들어, Letter from MPA, Summary of Ex Parte Meeting on May 13, 2024 Regarding the Office's AI Study, to U.S. Copyright Office 5 (May 20, 2024).

²⁰⁰⁾ 제6순회법원이 Memphis Development Foundation v. Factors Etc., Inc.에서 언급했듯이, "상속인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명성을 이용하려는 욕망은... 약한 동기 요인이다." 616. F.2d 956, 959 (6th Cir. 1980).

상속자에게 승계될 수 없다.201) 한 논평자는 사후 권리로 인해 디지털로 부활한 유명인 에게 투자가 옮겨가서 살아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

이러한 정책적 주장 외에도 사후 권리는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권리를 통제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확인하는 것이 권리가 어떻게 유증되었는지에 따라 어려울 수 있다. INTA는 사후 권리 소유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권리가 주장되고 있다는 공고를 하고 그 권리의 사용을 위한 연락 정보를 제공하 는" 비강제적 등록 시스템을 제안했다.203)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저작권청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연방 딥페이크권은 직업 아티스트(working artist)의 생계 보호, 살아있는 사람의 존엄성, 그리고 시사 사건에 대한 사기 및 허위 정보로부터 대중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후 보호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동시에 우리는 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업적 가치가 있었던 사망한 개인의 페르소나를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이

²⁰¹⁾ 이 점은 저작자의 생애 동안만 저작권법을 통해 그의 저작물과 평판을 통제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시각예술가 권리법(Visual Artists Rights Act)에서 취한 접근 방식과 부합한다. 17 USC §106A(d)(1). Lugosi v. Universal Pictures, 603 P.2d 425, 431(Cal. 1979) ("우리는 이름과 초상을 이용할 권리가 아티스트에게 개인적이며, 그가 생전에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조; 또한 The NO FAKES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ntell. Prop.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Benjamin Sheffner, Senior Vice President & Associate General Counsel, MPA) ("공연자의 평판이나 존엄성에 대한 모든 이익은 해당 개인에게 전속하는 것으로서 명예 훼손 및 프라이버시법에 의해 정해진다. 하지만 사망한 개인의 고귀한 이익을 인정하고 상속인이나 기업 승계자에게 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망자에 대한 명예 훼손이 있을 수 없다'는 수세기 동안의 미국 법률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560 (AM. L. INST. 1977) 인용).

²⁰²⁾ Jennifer Rothman Initial Comments at 6 ("연방 사후 권리는 이제 떠오르는 연예인을 오래 전에 사망한 유명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강화할 수 있다.") 참조. Mark Bartholomew, A Right to Be Left Dead, 112 CALIF. L. REV. 1591 (2024), https://papers.ssrn.com/sol3/papers. cfm?abstract id=4610679 ("죽은 유명인은 개인적인 삶에서 더 이상 기업 스폰서와 대중의 관계 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선택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명인보다 더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다.... 죽은 유명인은 살아있는 유명인보다 회사 대변자로서 비용이 적게 든다.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마케팅 캠페인을 구성할 때 유리한 점이다.").

²⁰³⁾ INTA Initial Comments at 10-11("가능한 경우에, 비강제적 사후 등록 시스템은... 이러한 권리 가 주장되고 있다는 공적 통지와 이 권리를 사용하기 위한 연락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단 사용이 시작되기 전에 권리를 등록한 유효한 권리자에게만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등 권리 주장 등록에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후 권리가 새로운 연방법에 규정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페르소 나가 계속해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 20년보다 짧은 초기 기간을 권고하고자 한다. 204) 이러한 접근 방식은 표현의 자유에 장기적 또는 영구적 권리만큼 부담을 주지 않으며 많은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205) 아래에 서 논의하는 것처럼 연방법이 완전히 우선 적용하지 않는 한, 주에서는 여전히 더 장기적 인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d) 침해 행위

저작권청은 금지해야 할 행위의 범위와 책임의 분담에 관해서는 비교적 많지 않은 의견을 접수했다.

법률이 포괄해야 할 기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중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권고한다. 저작권 용어로는, 배포, 발행, 공연, 전시 또는 이용제공 행위이 다. 우리의 견해로는 이러한 유형의 행위는 이미지나 음성이 복제되는 개인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것 자체는 아티스트의 실험 과정의 일부이거나 소비자의 개인적 오락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순전히 개인적인 사용은 일반적으로 무해하며 창의성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206) 의회가 단순한 제작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적 사용에 대한 항변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204) 15} U.S.C. S\$ 1058-59 (상업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한 상표 등록의 연속적인 갱신을 제공). 이와 대조적으로 저작권의 장기적 보호 기간은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독창적인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하 기 위한 것이다.

²⁰⁵⁾ 짧은 사후 권리 기간이라도 사후 권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허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INTA가 제안한 자발적 등록부와 같은 것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법이 있는 주 중에서 캘리포 니아, 오클라호마, 텍사스는 모두 권리자의 후손이 정부에 자신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 제도를 가지고 있다. CAL. CIV. CODE § 3344.1 (West 2024)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등록 필요); OKLA. STAT. ANN. tit. 12, § 1448(F)(2) (2024) (같음); TEX. PROP. CODE ANN. § 26.006 (West 2023) (등록은 재산권에 대한 유효한 주장의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됨).

²⁰⁶⁾ 저작권의 맥락에서, 예를 들어 Chapman v. Maraj, No. 2:18-cv-9088, 2020 WL 6260021, at *10 (CD Cal. Sep. 16, 2020) 참조. (니키 미나즈(Nicki Minaj)가 실험을 위해 트레이시 채프먼(Tracy Chapman)의 노래를 기반으로 무단으로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것은 공정 사용이 라고 판단).

다. 그러나 이는 그 제작 행위가 더 광범위한 배포 계획의 일부이거나207)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208)

(i) 사용의 상업적 성격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의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용도에만 적용된 다.209) 일부 논평자는 모든 연방 권리가 유사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210) 다른 사람들은 상업적 및 비상업적 용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단 딥페 이크로 이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범위를 지적했다.211) 브루클린 법 인큐베이터 및 정책 클리닉(Brooklyn Law Incubator & Policy Clinic("BLIP"))과 퍼블릭 라디오 (National Public Radio("NPR"))가 지적했듯이, 딥페이크 제작자는 항상 재정적 이 득212)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아니며,213) 상업화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는 해로울 수

²⁰⁷⁾ 이러한 상황에서는 간접 책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보고서 제I장 B.3.d.iii 참조.

²⁰⁸⁾ 예를 들어. 아동 성학대물("CSAM") 또는 합의하지 않은 포르노를 만드는 데 사용된 딥페이크는 여전히 형법상 처벌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18 USC \$ 2251(a) (무엇보다 컴퓨터 등 주 사이에 운송되는 것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CSAM을 제작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 United States v. Tatum, No. 3:22cr-157, 2023 WL 3185795, at *2 (WDNC May 1, 2023) (부분적으로 딥페이 크 누드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이용한 것에 대해 18 USC **§** 2251(a)에 따라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 TEX. PENAL CODE ANN. § 21.165(b) (West 2023) ("누군가 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유효한 동의 없이 그 사람의 내밀한 부위가 노출되거나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비디오를 전자적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제작하거나 배포하 는 경우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²⁰⁹⁾ 이 보고서 제II장 A.1 참조.

²¹⁰⁾ 예를 들어, INTA Initial Comments at 10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문제의 사용이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과 상업적 목적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Law Office of Seth Polansky Initial Comment at 37.

²¹¹⁾ 예를 들어, BLIP,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2 (Oct. 30, 2023) ("BLIP Initial Comments") ("그를 활용하여 AI 시스템을 훈련할 수 있는 콘텐츠의 폭을 고려할 때, AI 시스템을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업적 사용이 필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David Newhoff Initial Comments at 5.

²¹²⁾ 예를 들어, Artist Rights Alliance & Future of Music Coalition Repl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 (Dec. 6, 2023) 2023년 12월 6일) ("해악은 훨씬 더 심해진다. 바로 지난주에, '몇몇 멀티플래티넘 그래미 상 수상 싱어송라이터와 아카데미상 수상 여배우' 등을 포함한 동의 받지 않은 포르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 생성 AI 엔진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사이버 괴롭힘, 사칭 사기,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다른 형태의 딥페이크 해악에 대한 보도도 잘 알려져 있다.").

²¹³⁾ 예를 들어. BLIP Initial Comments at 32("때로 일반 사용자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창의성이나 악의를 위해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있다.214) 게다가 상업적 맥락과 비상업적 맥락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오늘날의 온라인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개인의 개인적 표현으로 보이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상업적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받고 하는 인플루언서 캠페인 의 일부일 수 있다.215)

저작권청은 딥페이크의 유해한 사용이 상업적 성격의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사실, 많은 주법의 상업적 사용 요건은 이러한 법률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주요 이유로 자주 인용된다.216) 우리는 연방 딥페이크법이 비상업적 및 상업적 용도 둘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 점에서, 이 법이 일반적으로 비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프라이버시권의 측면을 통합하게 될 것이다.217)

(ii) 고의 기준

비록 저작권청이 이 문제에 관해 많은 의견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직접 책임에 대해 실제 지식(actual knowledge) 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실제 지식 기준에 따르면, 배포자, 발행자 또는 전시자가 문제의 표현이 실제 사람의 딥페이크이고 허락받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행동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 객관적이거나 "알았어야 할(should have known)" 기준은 의심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피고를 덫에 걸리게 할 수 있다. 현재 기술로 생산되는 잠재적 출력물의 양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수를 감안할 때. 사용자가 그것이 누군가의 음성이나 초상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이미지나 오디오 녹음물을 전달하 게 될 가능성이 있다.218) 사용자가 딥페이크의 대상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그 딥페이크가

²¹⁴⁾ 예를 들어, NPR,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9 (Oct. 30, 2023) ("NPR Initial Comments").

²¹⁵⁾ Stacey M. Lantagne, Famous on the Internet: The Spectrum of Internet Memes and the Legal Challenge of Evolving Methods of Communication, 52 U. RICH. L. REV. 387, 416-17 (2018)("[인터넷,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의 상업적 사용은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소셜 미디어에 있는 모든 것은 어느 정도 광고이고, 이 수준은 점점 더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각주 생략)) 참조.

²¹⁶⁾ 예를 들어, WME Initial Comments at 5 ("여기에서도 종종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다. 퍼블리시티 권법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사용에 한해 적용되므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상업적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팬이 생성한 딥페이크에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

²¹⁷⁾ 이 보고서 제II장 A.1.a 참조.

²¹⁸⁾ 예를 들어, Public Knowledge,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진짜가 아니거나 허락받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일부 논평자들은 기만 의도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NPR은 "의회는 누군가의 이름, 이미지, 초상 또는 음성이 청중을 기만하여 거짓, 위조 또는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사실이라고 믿게 하거나 실제 사실 또는 사건을 나타낸다고 믿게 하는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책임을 지는 좁은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책임은 의도적 인 기만, 즉 무언가가 가짜이지만 다른 사람을 그와 다르게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219)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작권청은 개인을 괴롭히거나 조롱하거나 인기 있는 공연자의 목소리나 이미지의 딥페이크에서 이익을 얻으려 무단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는 일부 상황에서는 기만 의도가 전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220) 무단 딥페이크의 유해한 배포를 방지하고자 할 때 주관적인 의도의 입증은 역시 높은 장벽이 된다.221)

(iii) 가접 책임

딥페이크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중개자의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배포되고 전시되 므로, 간접 책임에 대한 처리가 새 연방법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0 (Oct. 30, 2023) ("모든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권리는 '디지털 도플갱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 즉, AI 생성 저작물이 순수하게 수학적 우연에 의해 그렇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았을 개인처럼 보이거나 들리는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에 책임을 지우거나, 우연하게 닮은 저작물을 생성하는 일반 인공지능 시스템의 학습데이 터 출처 문제에 대한 토끼 굴(rabbit hole of provenance questions)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²¹⁹⁾ NPR 초기 의견 9-10쪽.

²²⁰⁾ 최근 인기 아티스트(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관계없이)의 목소리가 무단 복제된 사례들에서 권리자의 반대는 무단 사용이 속이려는 의도에서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Vicky Wong & Bonnie McLaren, Drake: AI Tupac track gone from rapper's Instagram after legal row, BBC News (Apr. 26, 2024), https://www.bbc.com/news/ newsbeat-68904385 참조.

²²¹⁾ David Crump, What Does Intent Mean?, 38 HOFSTRA L. REV. 1059, 1071-72 (2010) ("의도는 물론 증인이 직접 볼 수 없다. 그것은 오감을 모두 피한다. 그것은 행위자에게만 알려지고, 그조차도 때때로만 알려진다. 의도에 대한 일부 정의는 행위자가 심지어 의도가 있는 경우에도. 의도가 없다고 쉽게 믿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법은 행위자가 하는 일로 의도를 평가한다. 즉, 법은 상황 증거로 의도를 평가한다. 동시에 의도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도 쉽게 부인되거나 반박되며, 때때로 이 부인은 행위자의 설득력 있는 믿음이 수반된다."); 참조. Thomas O. Depperschmidt, Bankruptcy for Gamblers: The Questions of Fraudulent Intent, Dischargeability, and Remedial Policy in Credit Card Cash Advance Cases. 13 BANKR. DEV. J. 389, 403-04 (1997)(사기 사건에서 의도를 입증하는 어려움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전통적인 간접 책임 원칙이 여기에 원용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고는 "침해 행위를 알면서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를 유인하거나, 유발하거나, 실질적으 로 기여하는 경우" 기여 책임을 질 수 있다.222) 피고가 "침해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고 직접 침해자를 감독하고 지시할 권리와 능력을 가진 경우"에 대위 책임을 질 수 있다.223) 그리고 피고는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기 위해 취한 명시적인 의사표현이나 그 밖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위해 이의 사용을 조장하는 목적으로 장치를 배포 하는 경우"에 침해 유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224)

이러한 원칙은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지만, 225) 이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은 사용자 콘텐츠를 전송. 캐싱. 호스팅 또는 링크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와 관련이 있다. 여러 분야에서 의회는 OSP에 가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특별한 세이프 하버(비침해 간주)를 제공했다. 가장 광범위한 예는 『1996년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제230조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많은 유형 의 제3자 불법 콘텐츠에 대해 민사 책임으로부터 면제하였다.226) OSP는 다른 사람이 제공한 콘텐츠의 "발행자 또는 발표자"로 취급되지 않으며, OSP나 이의 사용자 모두는 "그러한 자료가 헌법상 보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자 또는 사용자가 음란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음탕하거나, 불결하거나,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괴롭히거나, 그 밖에 모욕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선의로 자발적으로 취한 모든 조치"227)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0조에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어떠한 법률도 제한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예외 조항(carve-out)이 포함되어 있다.228) 논평자들은 연방 딥페이크법이 제 230조의 예외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이 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

²²²⁾ Co-Star Grp. Inc. v. LoopNet, Inc., 373 F.3d 544, 550(4th Cir. 2004).

²²³⁾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913, 930 n.9(2005).

²²⁴⁾ Id. at 919, 936-37.

²²⁵⁾ 예를 들어, 딥페이크를 작성하기 위해 맞춤 제작된 장치의 불법 거래는 간접 책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No AI FRAUD Act, H.R. 6943, 118th Cong. § 3(c)(1)(A), (C) (2024) (딥페이크를 작성하는 서비스의 배포 및 배포 방조에 대한 책임 규정) 참조.

^{226) 47} U.S.C. § 230; Hepp v. Facebook, 14 F.4th 204, 209 (3d Cir. 2021) (제230조는 "[인터넷] 기업들을 특정 관리 결정에서 면제하여 제3자의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관리하도록 장려한다.") 참조.

^{227) 47} U.S.C. § 230.

^{228) 47} U.S.C. § 230(e)(2).

다.229) 일부는 온라인 플랫폼이 관리 결정(moderation decisions)을 내리고 보호되는 언론의 위축을 피하는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면책 범위 내에 이 법을 포함하는 것을 선호했다.230) 예를 들어.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재단(EFF)〉은 "의회는 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으며, 제230조의 목적상 '지적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사용자의 발언을 보호하기 위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송을 피해야 할 때 비판적인 요구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31)

다른 사람들은 지식재산권 예외에 딥페이크 보호를 포함하는 것이 플랫폼이 침해하는 자료를 제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32) 몇몇은 현행법 하에서 OSP가 제230조를 언급하며 주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AI 생성 콘텐츠를 제거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경험을 지적했다.233)

저작권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승인되지 않은 딥페이크를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장려 하기 위해 제230조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에 OSP는 이러한 딥페이크의 사용가능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234) 예를 들어, 배포자가 익명이거나 연락이 불가능하여235) 비공식적으로나 법원

²²⁹⁾ 예를 들어, DiM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6 (Oct. 30, 2023) ("DiMA Initial Comments"); A2IM-Recording Academy-RIAA Joint Reply Comments at 18; Jennifer Rothman Initial Comments at 4-5.

²³⁰⁾ 예를 들어, EFF,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7 (Oct. 30, 2023) ("EFF Initial Comments") 참조; 또한 DiMA Initial Comments at 6 참조.

²³¹⁾ 예를 들어, EFF Initial Comments at 7; 또한 DiMA Initial Comments at 6 (DiMA는 "그러한 권리가 '지적 재산'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믿는다.").

²³²⁾ 예를 들어. UMG Initial Comments at 94; SAG-AFTRA Initial Comments at 7; A2IM-Recording Academy-RIAA Joint Reply Comments at 18.

²³³⁾ 예를 들어, UMG Initial Comments at 94; see also SAG-AFTRA Initial Comments at 7; The NO FAKES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ntell. Prop.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Robert Kyncl, Chief Executive Officer, Warner Music Group, in response to QFRs from Sen. Thom Tillis) ("일부 플랫폼은 삭제 요청에 응했고 일부는 저항했 다.... 일부는 제230조에 따라...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²³⁴⁾ 최근 유튜브는 개인이 이미지와 음성 딥페이크의 삭제나 차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Dylan Smith, YouTube Unveils New AI Likeness Protections—Covering Soundalike Audio and More—for 'Uniquely Identifiable' First Parties, DIGI. MUSIC NEWS (July 2, 2024), https://www.digitalmusicnews.com/2024/07/02/youtube-ai-protections/.

²³⁵⁾ 권리자가 침해자를 식별하는 데에 직면한 장애는 저작권청의 제512조 연구에서 많은 의견을 받은 주제였다. U.S. COPYRIGHT OFFICE, SECTION 512 OF TITLE 17 164 (2020) ("SECTION 512

에의 소송을 통해 그들에게 직접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OSP는 딥페이크 가 허락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딥페이크를 삭제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인센티 브를 받아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Open AI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딥페이크를 제작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유해한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완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기술 제공자를 위한 일종의 피난항"을 지지했다.236) 일부 논평자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512조와 개념이 유사한 통지-삭제(notice-and-takedown)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237) 이 조항은 자 격을 갖춘 OSP에게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 책임으로부터 면책을 제공함으 로써 저작권자와 OSP가 "저작권 침해를 발견하고 처리"²³⁸⁾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장려 한다.239) 침해 콘텐츠를 호스팅하거나 링크하는 데 대한 피난항은 (다른 것들 중에서) OSP가 유효한 통지를 받거나 그 밖에 침해 활동을 알고 침해로 주장되는 콘텐츠를 지체없이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40)

여러 논평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512조와는 다른 피난항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DiMA는 딥페이크 법이 간접 책임을 허용한다면, 피난항은 "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아 구체적으로 식별된 콘텐츠를 삭제한 경우에 완전한 면책"241)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워너 뮤직 그룹은 플랫폼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삭제된 상태의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피난항의 조건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를 요구했다.242)

REPORT"), https://www.copyright.gov/policy/section512/section-512-full-report.pdf 참조.

²³⁶⁾ Letter from OpenAI, Summary of Ex Parte Meeting on May 28, 2024 Regarding the Office's AI Study, to U.S. Copyright Office 4 (June 4, 2024) 참조.

²³⁷⁾ 예를 들어, The NO FAKES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ntell. Prop.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Lisa P. Ramsey,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in response to QFRs from Sen. Tillis).

²³⁸⁾ H.R. REP. NO. 105-551, pt. 2, at 49 (1998).

²³⁹⁾ U.S. COPYRIGHT OFFICE, SECTION 512 OF TITLE 17 13-21 (2020) ("SECTION 512 REPORT"), https://www.copyright.gov/policy/section512/section-512-full-report.pdf.

^{240) 17} U.S.C. § 512(c)-(d) 참조.

²⁴¹⁾ The NO FAKES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ntell. Prop.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Graham Davies, President & Chief Executive Officer, DiMA, in response to QFRs from Sen. Thom Tillis).

²⁴²⁾ The NO FAKES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Hearing

저작권청은 적절한 피난항을 결합한 통지-삭제 시스템이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제512조의 모든 요소를 복제할 필요는 없다. 제512조에 대한 2020년 보고서에서, 우리는 일부 규정이 의회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243) 그 맥락에서 얻은 경험은 여기에서 피난항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작권청은 OSP가 딥페이크가 침해하고 있다는 실제 지식이 있거나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통지를 받았을 때 딥페이크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을 피난항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저작권 맥락에서 해석의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DMCA의 "부정적 신호(red flag)" 지식 기준을 도입하지 않고자 하다.244)

e) 라이선스와 양도

딥페이크법에서는 권리가 양도나 라이선스를 통해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어야 한다.245) 저작권청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받지 못했지만 의회 청문회에서 논의 되었으며 우리는 그 증언을 분석의 일부로 고려했다.246)

Before the Subcomm. on Intell. Prop.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Robert Kyncl, Chief Executive Officer, Warner Music Group, in response to QFRs from Sen. Thom Tillis); 또한 id. (statement of Duncan Crabtree-Ireland, National Executive Director, SAG-AFTRA, in response to QFRs from Sen. Thom Tillis) 참조.

²⁴³⁾ SECTION 512 REPORT at 2-6 참조.

²⁴⁴⁾ Id. at 113-20.

²⁴⁵⁾ 저작권청은 여기에서 양도와 라이선스라는 용어를 저작권 맥락에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양도 는 모든 권리를 다른 당사자에게 완전히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이며, 이후에는 그 당사자가 그 권리의 사용과 배포를 통제한다. 라이선스는 배타적이거나 비배타적으로 딥페이크를 사용하기 위 한 계약상의 허락이며, 라이선스의 기간과 용도 등의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

²⁴⁶⁾ The NO FAKES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ntell. Prop.,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Robert Kyncl, Chief Executive Officer, Warner Music Group); id. (statement of Lisa P. Ramsey,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art II—Identity in the Age of AI: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Cts., Intell. Prop., & the Internet of the H.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Dana Rao, Executive Vice President, General Counsel, & Chief Trust Officer, Adobe, Inc.);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art II— Identity in the Age of AI: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Cts., Intell. Prop., & the Internet of the H.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Jeff Harleston, General Counsel & Executive Vice President, UMG).

양도 가능성을 지지하는 논평자들은 딥페이크권이 저작권, 상표, 특허와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UMG는 "모든 형태 의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딥페이크] 권리는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라이선스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집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 다.²⁴⁷⁾ INTA도 마찬가지로 딥페이크 "권리는 자유롭게 양도 가능하고 라이선스할 수 있으며, 상속 가능한 재산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⁴⁸⁾

다른 논평자들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그로써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통제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남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제니퍼 로스맨(Jennifer Rothman) 교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살아있는 인간의 이름, 초상, 목소리 또는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다른 표지를 영구적으로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249)

대부분의 논평자는 딥페이크권에 대한 라이선스 가능성을 선호했지만, 제한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제한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MPA는 라이선 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계약의 자유를 지지했다.250) 그러나 리사 램지(Lisa Ramsey) 교수는 "딥페이크권 라이선스가 중대하게 제한되지 않으면 [딥페이크법]의 목적이 훼손 될 것이다. 여기에는 대중의 사기 방지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 사용을 통제할 수

²⁴⁷⁾ UMG Initial Comments at 95.

²⁴⁸⁾ INTA Initial Comments at 11.

²⁴⁹⁾ Jennifer Rothman Initial Comments at 5; see also The NO FAKES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ntell. Prop.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Lisa P. Ramsey,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The NO FAKES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ntell. Prop.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FKA twigs, Singer, Songwriter, Producer, Dancer, and Actor, in response to OFRs from Sen. Thom Tillis) ("합리적인 갱신 가능한 계약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시간적으로 제한하 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규정해야 한다. 권리의 라이선스를 영구적으로 부여할 것을 제안하거 나 그럴 기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

²⁵⁰⁾ The NO FAKES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ntell. Prop.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Benjamin Sheffner, Senior Vice President & Associate General Counsel, MPA, in response to QFRs from Sen. Thom Tillis).

있는 능력의 보호가 포함된다."251)고 경고했다. SAG-AFTRA의 사무국장인 던컨 크랩 트리-아일앤드(Duncan Crabtree-Ireland)는 라이선스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고, 2023년에 길드가 협상한 것을 "남용 방지를 위한 모델 조항"이라고 설명했다.252)

이러한 견해를 고려한 후. 저작권청은 개인이 딥페이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미지와 음성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지만 모든 권리를 완전히 양도할 수는 없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라이선스는 창작물, 제품 및 서비스의 작성, 배포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페르소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저작권청은 남용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특히 고용 또는 용역 계약(talent contract)의 맥락에서 불평등한 협상력이나 정보를 고려하면, 개인은 경력의 초기에 내린 결정에 따라 장기간 또는 광범위한 조건 하에서 자신의 페르소나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양도는 지식재산권의 다른 영역에서는 일반적이지만 딥페이크권은 프라이 버시 이익과 일종의 재산권의 혼합체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퍼블리시티권과 달리 프라이버시권은 거의 예외 없이 포기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지만 완전히 양도할 수는 없다.253)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양도를 금지하고, 기간 제한 및 미성년자 보호와 같은 적절한 안전 조치를 라이선스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i) 존속 기간

사실상 완전한 양도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저작권청은 라이선스(단체 교섭된 라이선스 제외)를 5년 또는 10년과 같이 비교적 다기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254) 라이 선스 계약을 계속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후에 재협상할 수 있는데, 이는 협상력을 포함

²⁵¹⁾ Id. (statement of Lisa P. Ramsey,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in response to QFRs from Sen. Thom Tillis); id. (statement of FKA twigs, Singer, Songwriter, Producer, Dancer, and Actor, in response to QFRs from Sen. Thom Tillis).

²⁵²⁾ Id. (statement of Duncan Crabtree-Ireland, National Executive Director, SAG-AFTRA, in response to QFRs from Sen. Thom Tillis) 참조.

^{253) 2} J. THOMAS MCCARTHY & ROGER E. SCHECHTER,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10:1, 10:2 (2d ed. 2024) 참조.

²⁵⁴⁾ Jennifer Rothman Initial Comments at 6; 예를 들어, CAL. LAB. CODE § 2855(a) (West 2024) ("견습 계약 이외의 개인 용역 제공 계약은...해당 계약에 따른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직원에게 강제할 수 없다.") 참조.

한 상황 변화를 고려할 수 있게 한다.

기간 제한을 채택할 때, 라이선스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지속적인 사용을 차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다. 창의 산업에서 딥페이크궈자는 종종 그 딥페이 크물을 수록하고 있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라이 선스가 부여된 딥페이크는 라이선시가 지속적인 유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여 투자한 제품, 즉 소비재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수록될 수 있다.255)

따라서 우리는 딥페이크 라이선스의 만료는 라이선스 기간 만료 후의 새로운 사용만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어느 가수가 음반사에 자신의 목소리의 딥페이크 를 몇 년 동안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면 (후속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음반사는 딥페이크를 사용하여 새로운 녹음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계약 기간 동안 제작된 녹음물의 배포는 계속할 수 있다.256)

(ii)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딥페이크권의 개인적 측면과 대중의 혼동 가능성을 반영하여. 저작권청은 연방 법이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라이선스하는 데 있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의도된 용도에 대한 완전한 공개하에 그렇게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SAG-AFTRA의 단체 교섭 협약은 한 가지 예를 제공한다. 딥페이크권에 대한 계약 조건이 "명확하고 눈에 띄어야" 하며 별도의 계약 또는 특약으로 또는 눈에 띄게 드러나는 다른 형태로 합의되어야 한다.257) 우리는 또한 다른 연방법과 주법이 개인적 권리가 문제가 되는 계약에서 유사

²⁵⁵⁾ 예를 들어, 거버(Gerber)가 유아용 식품 포장에 어느 아기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제너럴 밀스 (General Mills)가 위티스(Wheaties) 시리얼 상자에 운동선수들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처럼, 회사 의 상표나 제품 포장에 개인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다.

²⁵⁶⁾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미 작성된 저작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이 허락의 종료 후 이차적 저작물을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17 USC 8 203, 304(c), 304(d) (2022) 참조. 저작권청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허락된 권한에 따라 종료 전에 작성된 이차적 저작물은 허락이 종료된 후에도 허락의 조건에 따라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이익은 종료된 허락이 적용된 그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다른 이차적 저작물의 종료 후 작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d. § 203; Notices of Termination, U.S. COPYRIGHT OFFICE, https://www.copyright.gov/recor dation/termination.html (2024년 7월 21일 최종 방문) 참조.

²⁵⁷⁾ SAG-AFTRA는 딥페이크권에 대한 FAO에서 "이것은 [딥페이크 조항]이 별도의 추가 사항에 포함 되거나 더 큰 글자체, 모두 대문자 또는 굵은 글씨로...명확하게 눈에 띄는 한 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굵은 글씨로 동의를 부여하는 단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 설명한다.

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음에 유의하고 있다.258)

(iii) 미성년자와의 계약

여러 논평자는 미성년자의 불평등한 협상력을 강조했다.259) 그들은 미성년자와 관련 된 라이선스가 그들이 18세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만료되고 법원의 검토와 수입을 신탁 하는 것과 같은 절차적 안전 조치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계약에 대한 제한을 제안했다. 260) 저작권청은 그러한 안전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다.

f) 수정 헌법 제1조 우려

딥페이크는 뉴스 보도, 예술 저작물, 패러디, 그리고 정치적 의견을 포함한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맥락에서 무단으로 그리고 불쾌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분야의 연방법은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261) 그러나 수정 헌법 제1조는 모든 표현을 동등하게 보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수정

FAQs on AI, SAG-AFTRA, https://www.sagaftra.org/files/sa_documents/AIFAQs.pdf (2024년 7월 21일 최종 방문).

²⁵⁸⁾ 예를 들어, 『고용연령 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은 특정 해고 및 처분 계약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다양한 계약적 안전 조치를 요구한다.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 Pub. L. No. 101-433, 104 Stat. 978(29 USCA의 분산된 조항으로 입법) 참조. 이 법률에 따라 계약서는 서명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변호사와 상의하도록 명시적으로 조언해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어떠한 혜택도 과장해서는 안 되다.

²⁵⁹⁾ 예를 들어, Jennifer Rothman Initial Comments at 6 ("가장 심각한 라이선스는 협상력이 가장 약한 사람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고, 현재 이러한 권리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특히 취약한 그룹으로 어린이를 강조).

²⁶⁰⁾ 예를 들어, id.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원이 미성년자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또는 스포츠 개인 서비스 계약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CAL. FAM. CODE \$ 6750, 6751 (West 2024) ("제 6750조에 기술된 유형의 유효했을 계약이 미성년자일 때 체결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미성 년자인 동안이나 그 이후에, 그 계약이 미성년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카운티 또는,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사업상 거래를 위해 이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계약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강조 추가)).

²⁶¹⁾ 예를 들어, The NO FAKES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ntell. Prop.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Benjamin Sheffner, Senior Vice President & Associate General Counsel, MPA) ("저작물에 적용될 새로운 권리의 생성은 수정 헌법 제1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핵심적인 창작의 자유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 참조.

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자 하는 표현인 공적이거나 사적인 대화에서 의견을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려면 일부 허위 진술이 불가피"262)함을 인정했지만, 명예 훼손,263) 사기264) 및 상업적으로 혼동의 소지가 있는 표현265)의 경우에 제한을 허용했다. 이러한 각 표현은 무단 딥페이크의 특정 사용에 연루될 수 있다.

법원은 주정부의 퍼블리시티권을 적용하면서 개인의 페르소나를 통제할 권리와 제3자 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 사이의 긴장을 인정했다.266) 그러나 이러한 판결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아서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 학자들은 퍼블리시티권 사건에서 수정 헌법 제1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일관되지 않고 불완전하거나 상호 배타적인 접근 방식, 검사 및 기준들의 혼란스런 늪,"267) 또는 더 간결하게 말하면 "재앙(dumpster fire)"268) 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국의 여러 주에 있는 법원에서 최소 5가지의 서로 다른 균형 검사가 사용되고 있어서,269) "유사한 사실을 가진 사건에서 상충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270)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조사 통지 질문은 논평자들로부터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²⁶²⁾ United States v. Alvarez, 567 U.S. 709, 718 (2012).

²⁶³⁾ United States v. Stevens, 559 U.S. 460, 468 (2010) (인용 생략). 그러나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과 관련된 명예 훼손 소송은 좀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N.Y.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공무원에 관한 명예 훼손 발언은 그것이 실질적 악의에서 행한 것이 아닌 한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 참조.

²⁶⁴⁾ Stevens, 559 U.S. at 468 (인용 생략).

²⁶⁵⁾ Cent. Hudson Gas & Elec. Corp. v. Pub. Serv. Comm'n of NY, 447 US 557, 566(1980) (거짓 또는 혼동의 소지가 있는 상업적 발언은 수정 헌법 제1조에 해당하지 않음).

²⁶⁶⁾ 예를 들어, Zacchini v. Scripps-Howard Broad. Co., 433 US 562, 574-75(1977)(뉴스 방송사 의 수정 헌법 제1조 권리와 공연자의 퍼블리시티권 사이의 갈등을 인정하고, 수정 헌법 제1조와 제14조는 "공연자의 동의 없이 공연자의 전체 행위를 방송할 때 미디어에 면책을 제공하지 않는다" 고 판시) 참조. 또한 Comedy II Productions, Inc. v. Gary Saderup, 25 Cal.4th 387, 397(Cal. 2001) ("대중의 눈에 띄는 것에서 발생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캐리커처, 패러디 및 풍자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창의적인 논평을 초대한다.") (Guglielmi v. Spelling-Goldberg Prods., 603 P.2d 454, 460(Cal. 1979)(Bird, CJ, 동의 의견) 인용) 참조.

²⁶⁷⁾ Gloria Franke, The Right of Publicity vs. the First Amendment: Will One Test Ever Capture the Starring Role?, 79 S. CAL. L. REV. 945, 946 (2006).

²⁶⁸⁾ William McGeveran, Selfmarks, 56 HOUS. L. REV. 333, 362 (2018).

²⁶⁹⁾ Roberta Rosenthal Kwall, A Perspective on Human Dignity, the First Amendment, and the Right of Publicity, 50 B.C. L. REV. 1345, 1346 (2009); 또한 Robert C. Post & Jennifer E. Rothman, The First Amendment and the Right(s) of Publicity, 130 YALE L. J. 86, 127 n.167 (2020) 참조.

²⁷⁰⁾ JENNIFER E. ROTHMAN, THE RIGHT OF PUBLICITY 145, 147 (2018).

많은 사람들이 무단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연방법은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를 위한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271) 그러나 논평자들은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일부는 주로 뉴스 보도, 다양한 유형의 표현적 저작물, 스포츠 방송, 패러디, 논평 및 비판에 대한 일부 주의 퍼블리시티권 법률과 유사한 구체적인 예외들을 지지했다.272)

표현적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주로 관심을 받은 분야였다.273) MPA는 딥페이크를

²⁷¹⁾ 예를 들어, Senator Marsha Blackburn Initial Comments at 3 ("이 책임은 물론 적용 가능한 수정 헌법 제1조 권리에 대한 상당한 보호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International Center for Law & Economics,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6 (Oct. 30, 2023) ("의회가 연방 '프라이버시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면 수정 헌법 제1조 제한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Digital Media Licensing Association,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0-21 (Oct. 30, 2023)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보장되는 보도 가치 있고 표현적인 목적을 위한 콘텐츠를 생성할 권리는 배우 및 기타 공인을 포함한 대중의 우려를 고려하고 그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Internet Archive Initial Comments at 11-12 ("기존 주 법률에 맞추어 새로운 퍼블리시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심각한 수정 헌법 제1조 우려가 따른다."); Pamela Samuelson et al.,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7 (Oct. 30, 2023) ("Pamela Samuelson Initial Comments")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려 깊은 자기 규제를 옹호하지만," 수정 헌법 제1조와의 잠재적 갈등으로 인해 규칙을 부과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

²⁷²⁾ 예를 들어, Getty Images,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8 (Oct. 30, 2023) ("Getty Images Initial Comments") ("새로운 연방 퍼블리시티권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는 수정 헌법 제1조로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명시적 면제가 포함되어 야 한다."); MPA, Reply Comments Submitted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3 (Dec. 6, 2023) ("MPA Reply Comments") ("최소한 연방 딥페이크권을 도입하는 법안에는 논평, 비판 또는 패러디 또는 다큐멘터리, 다큐드라마 또는 역사적 또는 전기적 저작물, 또는 개인을 본인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저작물 등 정치적, 공익적, 교육적 또는 보도 가치가 있는 저작물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허구화의 정도에 관계없이, 그리고 미미하거나 부수적인 사용에 대한 예외가 포함되어야 한다."); INTA Initial Comments at 11 ("a. 뉴스, 공공 문제 및 스포츠 보도 또는 해설, b. 극적, 문학적, 예술적 또는 음악적 저작물(단, 해당 저작물과 예술적 관련성이 있고 개인의 지지 또는 승인에 대해 명확하게 오도하지 않는 경우), c. 개인을 패러디, 비판, 풍자 또는 논평하는 저작물, d. (a)-(c)에 대한 광고 및 홍보, e. 교육 및 연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비상업적 사용"에 대한 예외를 제안) 참조.

²⁷³⁾ MP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71 (Oct. 30, 2023) ("MPA Initial Comments") ("퍼블리시티권은 책, 연극, 뉴스 기사 및 방송, 노래,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같은 '표현적 저작물'에서 개인의 [이름, 이미지 및 초생)을 사용하거나 언급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으며,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르기 위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 이러한 표현적 저작물은 수익을 위해 판매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는 비상업적 표현이다."); David Newhoff Initial Comments at 5 ("ROP법이 확대된다면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에 속하는 목적(예를 들어. 전기 영화)을 위해 AI

사용하여 "실제 영상이 없는 역사의 장면을 재현"하는 다큐멘터리와 "유명인, 정치인, 운동선수를 조소하기 위해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심야 코미디언을 포함하여 몇 가지 보호받을 만한 표현적 사용의 사례를 제시했다.274) MPA는 "영화 제작자가 값비싼 프로 젝트를 수행하기 전에 어떤 사용이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성을 제공하는 데 범주적 예외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사용이 의도되지 않았으며 진본성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는 예외 목록을 제안했다.275) Donaldson Callif Perez LLP는 "표현적 저작물을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는 권리의 도입은 즉각적 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276)

다른 논평자들은 범주적 예외가 불필요하며 효과적인 보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RIAA는 "일정한 표현 중심의 용도에 대한 범주적 배제는 헌법상 요구되지 않으 며, 사실 중요한 퍼블리시티 이익을 희생하여 표현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할 위험이 있다."277)고 주장했다. 대신 "수정 헌법 제1조는 퍼블리시티권을 주어진 사건에서 제시 될 수 있는 수정 헌법 제1조의 이익과 사건 별로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278) 제니퍼

생성 초상의 표현적 사용을...제한해서는 안 된다.").

²⁷⁴⁾ MPA Reply Comments at 32.

²⁷⁵⁾ Letter from MPA, Summary of Ex Parte Meeting on May 13, 2024 Regarding the Office's AI Study, to U.S. Copyright Office 4 (May 20, 2024) ("딥페이크의 사용이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 1. 딥페이크가 허구화의 정도에 관계없이, 다큐멘터리, 다큐드라마 또는 역사적 또는 전기적 저작물, 또는 개인의 그러한 개인으로 표현하는 그 밖의 것에서 개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다만 딥페이크를 사용하여 해당 저작물이 그 개인이 참여한 진짜 녹음물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있고 실제로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경우는 제외; 2. 딥페이크가 뉴스, 공공 문제 또는 스포츠 방송이나 보도의 목적이나 정치적, 공익적, 교육적 또는 보도 가치가 있는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다만 딥페이크를 사용하여 해당 저작물이 개인이 참여한 진짜 녹음물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있고 실제로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경우는 제외; 3. 딥페이크를 논평, 비판, 학술, 풍자 또는 패러디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딥페이크의 사용이 사소하거나 우발적이거나 일시 적인 경우. 5. 딥페이크의 사용이 단체 교섭 협약에서 다루어진 경우; 또는 6. 딥페이크가 [1~5]에 설명된 대로 딥페이크의 사용을 포함하는 저작물에 대한 광고 또는 상업적 발표에 사용되는 경우").

²⁷⁶⁾ Donaldson Callif Perez, LLP,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0 (Oct. 30, 2023).

²⁷⁷⁾ 예를 들어, Letter from RIAA, Summary of Ex Parte Meeting on April 23, 2024 Regarding the Office's AI Study, to U.S. Copyright Office 2 (Apr. 29, 2024).

²⁷⁸⁾ A2IM-Recording Academy-RIAA Joint Reply Comments at 16-17; 또한 id. at. 17 ("우리는 개인의 음성 또는 초상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연방 권리에는 사용의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관계없어 '표현적 저작물'에 개인의 음성 또는 초상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유형의 모든 사용에 대한 명시적이고 범주적인 예외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평자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참조.

로스만 교수는 새로운 법이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사용에 관해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공통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어느 사람의 '전체 행위' 또는 성과가 사용되거나 그러한 사용이, 바탕이 되는 허락받은 저작물과 관련이 없는 상업적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79)

이러한 접근 방식들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예외를 열거하는 것은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고려하는 사용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법령의 문언에서 더 쉽게 판단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주의 기존 판례를 해석 목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사안에 따라 과도하거나 부족할 수 있다.280) 예를 들어, 표현적 저작물에 대한 예외는 적절하게 분류되지 않으면 음악의 음성 복제물이나 딥페이크 포르노와 같은 딥페이크의 일반적인 사용에 대해 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실제로 보고된 문제가 되는 사용 중 다수는 위에서 설명한 "가짜 드레이크(Fake Drake)" 노래와 바이든 대통령의 자동녹음 전화와 같이 표현적 또는 정치적 맥락에서 발생했다.281)

저작권청은 수정 헌법 제1조 우려 사항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다. 예측 가능성의 이점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정체성과 평판에 대한 위협의 독특하고 진화하는 본질을 고려할 때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가 더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범주적 예외의 잠재적인 과도함은 MPA가 제안한 것과 같은 조건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야기한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의 온라인 환경에서 종종 "뉴스"나 "공공 문제"와 같은 전통적인 범주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 다.282) 그 결과 입법자들이 금지하려고 의도한 행위가 면제될 수 있다.

²⁷⁹⁾ Jennifer Rothman Initial Comments at 6.

²⁸⁰⁾ Ioshua Matz, RIGHT OF PUBLICITY AND THE FIRST AMENDMENT (2024), human artistrycampaign.com/rop-first amendment; Letter from RIAA, Summary of Ex Parte Meeting on April 23, 2024 Regarding the Office's AI Study, to U.S. Copyright Office (Apr. 29, 2024) (endorsing Matz's view) 참조.

²⁸¹⁾ 이 보고서 제I장 참조.

²⁸²⁾ 실제로 "뉴스"나 "공공 문제"와 같은 범주의 의미가 그 자체로 논쟁의 대상이다. Richard L. Hansen, From Bloggers in Pajamas to The Gateway Pundit: How Government Entities Do and Should Identify Professional Journalists for Access and Protection (2024), https://papers. 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776774; Sonja R. West, Favoring the Press, 106 CAL. L. REV. 91 (2018) 참조.

우리의 견해로는 균형 프레임워크가 특정한 무단 사용이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더 큰 유연성을 허용한다. 법원은 "뉴스" 또는 "음악저작 물"로 표시된 상자를 체크하는 대신 수정 헌법 제1조 분석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것이 상업적인지 여부 등 사용 목적, 표현적이거나 정치적 성격, 딥페이크와 사용 목적의 관련성, 사용에 기만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 딥페이크에 라벨이 붙어 있는지 여부, 발생한 피해의 정도 그리고 사용자의 선의가 포함된다.283) 우리는 이 접근 방식이 많은 논평자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한 표현적 저작물의 유형을 위한 여지를 남겨둘 것이라고 믿는다.284)

g) 구제책

연방법상 권리는 개인이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여러 논평자는 금전적 구제와 금지명령 구제 등 적절한 구제책들을 제안했다.285)

저작권청은 딥페이크법이 금전적 구제와 금지명령 구제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손해에는 상실 소득, 명예 훼손 또는 정서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INTA가 언급했듯이, "페르소나의 상업적 가치는 분쟁에서 청구되는 손해배상액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86) 금지명령 구제는 개인의 초상의 진행 중인 무단 사용이나 장래의 위반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283) 1} J. THOMAS MCCARTHY & ROGER E. SCHECHTER,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8:23, 8:71–3 (2d ed. 2024); A2IM-Recording Academy-RIAA Joint Reply Comments at 16-17 ("수정 헌법 제1조는 사건별로 주어진 사건에서 제시될 수 있는 모든 수정 헌법 제1조 이익에 대해 퍼블리시티권과의 균형을 요구한다.") 참조.

²⁸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소를 적용하면 사망한 개인들이 객관적으로 비현실적이고 허구적인 맥락에서 묘사되는 경우에, 그 개인의 무단 딥페이크를 영화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사용하여 (딥페이크로 묘사된) 역사적 인물과 상호 작용하고 그를 현대로 수송하는 엑설런트 어드벤처(Bill & Ted's Excellent Adventure) 영화의 리메이크는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Synopsis, Bill & Ted's Excellent Adventure, IMDB, https://www.imdb.com/title/tt00 96928/plotsummary/#synopsis (last visited July 21, 2024) 참조.

²⁸⁵⁾ 예를 들어, Law Office of Seth Polansky Initial Comments at 37 ("민사상 구제책과 형사 처벌 모두를 통한 시행 메커니즘도 또한 구체화되어야 한다. AI 생성물이 제작되고 배포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시행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SAG-AFTRA Initial Comments at 7-8("금전적 구제에는... 상실 임금과 명예 훼손이 포함될 수 있다. 금지명령 구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생성 콘텐츠(조잡한 상품이나 의심스러운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AI 생성 음성이나 초상)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참조.

²⁸⁶⁾ INTA Initial Comments at 11.

우리는 일부 개인이 법정에서 실제 손해, 특히 시장에서의 손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이도록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청은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수 없거나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손해배상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287) 저작권 시스템에서와 같이. 승소 당사자에게 법정 손해배상이나 변호사 비용의 지급 가능성이 없다면,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정당한 청구를 제기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몇몇 논평자들은 형사 처벌288)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는데, 특히 합의되지 않은 내밀한 자료와 관련해서 그렇다.289) 형사 책임은 그러한 행동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책임성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다. 적절한 처벌은 나쁜 행위자를 억제하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청은 성적 딥페이크나 그 밖에 특히 해롭거나 학대적인 이미지를 포함하여 형사 책임을 초래하는 특정한 무단 사용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 나 우리는 독립적인 형법이 아닌, 의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과 같은 연방 딥페이크권에 형사 처벌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290)

h) 우선 적용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연방 딥페이크법이 주법에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이다.291) 이 문제에 대한 논평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일부는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주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²⁸⁷⁾ Jennifer Rothman Initial Comments at 5 ("모든 법률에는 시장에서의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손해배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많은 주에서는 일반인을 보호한다는 명확한 목적으로 퍼블리시티 입법에 법정 손해배상을 포함하였다.")

²⁸⁸⁾ 예를 들어, NPR Initial Comments at 10 ("형사 처벌이 필요할 수 있다."); Walker Wambsganss et al. Initial Comments at 5.

²⁸⁹⁾ 예를 들어, Anonymous AI Technical Writer, Repl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7 (Dec. 6, 2023) ("최소한 자신의 얼굴이 생성 AI에서 사용되지 않게 할 권리로서, AI로 생성된 동의되지 않은 음란물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수반.").

²⁹⁰⁾ 예를 들어, 2024년 6월 상원에 보고된 〈TAKE IT DOWN Act〉는 합의하지 않은 내밀한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게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TAKE IT DOWN Act of 2024, S.4569, 118th Cong. (2024).

²⁹¹⁾ 일반적으로 CONG. RSCH. SERV., ARTIFICIAL INTELLIGENCE PROMPTS RENEWED CONSIDERATION OF A FEDERAL RIGHT OF PUBLICITY (2024), https://crsreports. congress.gov/product/pdf/LSB/LSB11052 참조.

딥페이크와 관련된 주법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이점은 통일된 전국적 표준을 수립하여 기존 보호의 누더기(patchwork)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논평자들은 그것이 창작자,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 다.292) 예를 들어, DiMA는 "의회는 주법과 판례법에 대해 우선 적용함으로써 콘텐츠 관련 문제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적용의 일관성을 보장하 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줄이며 고객 경험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293) MPA 도 우선 적용을 통해 "전국적 균일성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294)

우선 적용에 반대하는 논평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 발전된 광범위한 주법의 선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95) SONA, Black Music Artists Coalition 및 MAC은 "우리 주에서 철저히 고려되고 검토되어온 법에 대해 우선 적용을 보장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진술했다.296)

많은 사람들은 연방법이 "바닥"을 설정하여 주가 연방법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고, 연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법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97) 의회 증언에서 워너 뮤직그룹(Warner Music Group)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옹호했다.298) 이미지라이츠 인터내셔널(ImageRights International)은

²⁹²⁾ 예를 들어, DiMA Initial Comments at 5; INTA Initial Comments at 9; MPA Reply Comments at 34; BLIP Initial Comments at 32.

²⁹³⁾ DiMA Initial Comments at 5.

²⁹⁴⁾ MPA Reply Comments at 34.

²⁹⁵⁾ 예를 들어, SAG-AFTRA Initial Comments at 8 ("연방 권리는 그것이 개인에게 그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또는 초상에 대해 기존의 기존 주법보다 더 큰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한 주의 퍼블리시티권법에 우선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AI 생성 이미지 및/또는 음성과 관련된 모든 연방법은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와 관련된 기존 주법을 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AA2IM-Recording Academy-RIAA Joint Reply Comments at 18 ("연방 권리는 수십 년간의 입법 및 소송을 통해 신중하게 발전된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주법에 우선적용해서는 안 된다.") SONA-MAC-BMAC Joint Initial Comments at 10-11.

²⁹⁶⁾ SONA-MAC-BMAC Joint Initial Comments at 10-11.

²⁹⁷⁾ 예를 들어, SAG-AFTRA Initial Comments at 8 ("연방법은 주법 보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주가 그 주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ina LaPolt Initial Comments at 10. 논평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우선 적용에 대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일부 판례와 학자들은 주법이 넘어설 수 있는 규제 기준을 만드는 법률을 설명하기 위해 "부분적 우선 적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²⁹⁸⁾ NO FAKES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ntell. Prop. of the S.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Robert Kyncl, Chief Executive Officer, Warner Music Group, in

또한 연방 권리가 "보호에 대한 기준(바닥)을 설정하여 주가 선택할 경우 추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99)고 촉구했다.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인 디나 라폴트(Dina LaPolt)는 "음성과 초상을 보호하는 잠재적인 연방 권리가 기본권의 '바닥'을 설정하여. 주가 잠재적으로 더 엄격한 거주자의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접근 방식을 개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300)고 말했다.

대안적으로, 우선 적용하지 않는 법률은 기존 주 보호가 연방 보호를 초과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존 주 보호를 그대로 둘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은 주 상표 및 부정경쟁법이 연방 보호와 공존하도록 하는 랜햄법과 유사하다.301)

각각의 접근 방식에 합리적인 논거가 있지만, 저작권청은 몇 가지 이유로 주법에 우선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논평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분야의 광범위한 주법이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하여 확립된 기대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302) 전면적인 우선 적용은 현재 더 광범위한 권리를 제공하는 주에서 개인에 대한 기존 보호를 감소시켜 딥페이크와 그들의 페르소나를 모방하는 다른 것에 대한 보호 사이에 불일치를 야기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제공하는 주에서 사후 권리가 없는, 우선 적용 하는 연방법은 사망한 개인의 수혜자가 비디지털 맥락에서 더 오래

response to QFRs from Sen. Thom Tillis) ("제한된 우선 적용이 새로운 연방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향상된 보호를 제공하고 음성 및 초상 보호에 대한 수십 년의 유용한 판례에 의해 뒷받침되는 주법은 연방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²⁹⁹⁾ ImageRights International, Inc., Repl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1 (Dec. 6, 2023).

³⁰⁰⁾ Dina LaPolt Initial Comments at 10. 주들이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 이는 주의 산업과 이해관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유명인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 아는 주로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의 퍼블리시티권 상속가능성을 부인하는 판결로 인해 발생한 소급적인 사후 보호가 있다. Laurie Henderson, Protecting A Celebrity's Legacy: Living in California or New York Becomes the Deciding Factor, 3 J. BUS. ENTRE PRENEURSHIP & L. 165, 171, 177-83 (2009) 참조. 마찬가지로 일부 논평자는 테네시의 잠재적 으로 영구적인 퍼블리시티권은 테네시 출신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Annie T. Christoff, Long Live the King: The Influence of Elvis Presley on the Right of Publicity in Tennessee, 41 U. MEM. L. REV. 667, 699 (2011). 이는 퍼블리시티권법의 주별 차이가 항상 깔끔하게 지역 또는 지역적 이익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JENNIFER ROTHMAN, THE RIGHT OF PUBLICITY: PRIVACY REIMAGINED FOR NEW YORK?, 592-93 (2018)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3개 주 지역의 사후 권리 차이에 주목).

³⁰¹⁾ J. THOMAS MCCARTHY, 3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 1:18, 22:1 (5th ed. 2024) 참조.

³⁰²⁾ 위의 각주 295-96 참조.

지속되는 권리를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 합의에 도달할 필요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 차원에서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우선 적용하지 않는 연방 권리는 모든 주에 일괄적 솔루션을 부과하지 않고도 통일성의 일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주 접근 방식을 완전히 조화시키지는 못하지 만, 딥페이크의 무단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국가적 보호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격차를 메우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주의 법의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연방 청구권에 의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선 적용하지 않는 법은 더 큰 명확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인 우선 적용은 그 범위와 어떤 주 수준의 보호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관한 광범위 한 소송의 유령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연방 딥페이크법이 주의 보호에 우선 적용하기보다 보완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최소화될 수 있다.

4. 저작권법 제114조(b)와의 관계

저작권청의 조사 통지는 저작권법 제114조(b)와 녹음물에 수록된 목소리의 무단 딥페 이크에 대한 주법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했다.303) 제114조(b)는 저작권자의 녹음물에 대한 복제 및 이차적 저작물작성권이 "녹음물에 고정된 실제 소리"를 차용하는 사용으로 제한되며 "그러한 녹음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녹음물의 그것을 모방하거나 시뮬레이 트한 경우에도, 다른 소리의 독립적인 고정으로만 구성된 다른 녹음물의 제작 또는 복제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304) 이 조항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녹음물의 "단순 모방"이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305)

제114조(b)는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의 맥락에서 소리(개인의 음성 포함)의 모방이나 시뮬레이션을 허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녹음물에서 누군가의 음성을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여러 논평자가

³⁰³⁾ NOI at 59948.

^{304) 17} U.S.C. § 114(b).

³⁰⁵⁾ H.R. REP. NO. 94-1476, at 106 (1976).

이 문제를 지적했으며, 한 사람은 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의 잠재적 갈등과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306)

다지 일부 법원에서만 제114조(b)가 개인의 음성 모방에 근거한 주의 퍼블리시티권에 우선 적용하는지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다양했다. 제9순회법원은 캘리포니아법에 따른 음성도용 청구와 관련된 사건에서 우선 적용을 두 번 거부했지만,307) 미시간의 한 연방 법원은 주의 퍼블리시티권에 우선 적용한다고 결론지었다.308) 제114조(b)의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주 의회가 딥페이크에 관한 조항을 가진 법률을 논의하고 제정하면서 실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다. 아마도 저작권법과의 불일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뉴욕과 루이지애나는 모두 최근 법률에 제114조(b)를 반영하고, 이들 주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표현을 포함했다. 이것들은 특정한 상황에 딥페이크에 적용되는 퍼블리시티권법이지 특별히 "딥페이크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의 법은 "직업 공연자의 목소리를 모방하거나 시뮬레이션 하는 소리라 하더 라도 다른 소리의 독립적인 고정으로만 구성된 다른 녹음물을 만들거나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며, 뉴욕법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다.309)

³⁰⁶⁾ 예를 들어, Rightsify Group LL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3 (Oct. 30, 2023) 참조; 또한 UMG Initial Comments at 98 ("UMG가 AI 생성 유사 소리에 적용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우선 적용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의견 불일치의 가능성은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제거할 연방 퍼블리시티권을 지지하는 의견을 더욱 강화한다."); A2IM and RIA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43-44 (Oct. 30, 2023) ("A2IM-RIAA Joint Initial Comments")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저작권 우선 적용에 관한 판례는 아직 발전 중이며, AI라는 특정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룬 사례는 알지 못한다. 법원이 생성 AI와 관련하여 제114조(b)와 퍼블리시티권의 구분을 적절하게 인정하는지 여부는 주의가 필요한 문제이 다. 입법적 설명은 명백히 필요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 참조.

³⁰⁷⁾ Midler, 849 F.2d at 462 ("미들러(Midler)는 포드(Ford)가 [라이선스된 노래]를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녀의 청구는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우선적용 당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모든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독창적 저작물'을 보호한다. 음성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소리는 '고정'되지 않았다."); Waits, 978 F.2d at 1100, abrogated on other grounds by Lexmark Int'l, Inc. v. Static Control Components, Inc., 572 U.S. 118 (2014) (톰 웨이츠(Tom Waits)의 음성 도용 청구의 요소들이 "노래나 녹음물의 무단 사용에 이의를 제기 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의 요소들과 '종류가 다르다'"고 판단하고, 이 청구가 저작권에 의해 우선적용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³⁰⁸⁾ Romantics v. Activision Publ'g, Inc., 574 F. Supp. 2d 758, 764(ED Mich. 2008)(비디오 게임에서 밴드의 "독특한 사운드"를 사용한 것에 근거한 퍼블리시티권 청구보다 저작권법이 우선한 다고 판단, 문제의 "독특한 사운드"는 밴드 전체가 아니라 저작권이 있는 노래의 사운드였음).

³⁰⁹⁾ LA. STAT. ANN. § 51:470.2(4) (2024); N.Y. CIV. RIGHTS LAW § 50-f(1)(c) (McKinney

저작권청의 견해로는, 이러한 우려는 타당하지 않으며, 제114(b)조는 무단 음성 딥페 이크를 금지하는 주법에 우선적용 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 보호대상" 또는 "저작권의 일반적인 범위에 속하는 배타적 권리와 동등하지 않은 법상 또는 형평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310) 와 관련된 주법에 우선 적용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의 우선 적용 조항에 대한 입법경위서는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그리고 영업 비밀의 진화하는 판례법상의 권리는... 소인(訴因)이 저작권 침해와는 종류 가 다른 개인적 권리 침해 또는 신뢰 또는 비밀 유지의 위반과 같은 특정한 요소를 포함하는 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한다.311)

저작권청은 개인의 목소리에 대한 딥페이크권은 이 검사를 충족한다고 믿는다. 개인의 목소리는 그것을 수록한 특정 녹음물과 달리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312) 그것은 생물학, 자연, 환경의 산물이며, 공연자의 경우에 훈련, 기술 및 재능의 산물이다. 그것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저작물"313)이나 "그로부터 지각, 복제 또는 달리 전달될 수 있는...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되지 않았다."314)

저작권과 딥페이크권은 서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이 둘은 혼동되어서 는 안 된다. 제114조(b)는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부터 음성 모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녹음물을 보호한다. 그러나 의회가 저작권에 대한 이러한 제한이 주 퍼블리시티권법이나 새로운 연방법에 따라 개인의 고유한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해주는 것은 없다.315) 위에서 논의한 뉴욕과 루이지애나법의 제한과 같은 불필요한 혼란이나 예외를 피하기 위해, 저작권청은 의회가 제114조(b)가 주법에 우선 적용하거 나 개인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연방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 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다.

^{2024) (&}quot;딥페이크에는... 다른 소리의 독립적인 고정으로만 구성된 다른 녹음물의 제작 또는 복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리가 개인의 음성을 모방하거나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10) 17} U.S.C. § 301(b)(1), (3).

³¹¹⁾ H.R. REP. NO. 94-1476, at 132 (1976).

^{312) 17} U.S.C. § 301(b)(1) 참조.

³¹³⁾ Id. § 102(a) 참조. U.S. COPYRIGHT OFFICE,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 906.7 (3d Ed. 2021)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이 요구되므로 미국 저작권청은 자연에서 발견된 자연 발생적 사물이나 자료를 등록하지 않는다.")

^{314) 17} U.S.C. § 102(a).

³¹⁵⁾ H.R. REP. NO. 94-1476, at 132 (1976) 참조.

제Ⅲ장 창작 스타일의 보호

저작권청은 "인간 창작자의 창작 스타일을 모방하는" AI "출력물"로부터 보호를 요구 하는 많은 의견을 접수했다.316) 논평자들은 "아티스트 X의 스타일"로 출력을 요청하는 텍스트 프롬프트에 응답하여 특정 작가, 시각 예술가 또는 음악가의 저작물을 연상시키 는 자료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317) 그들은 이러한 출력물이 해당 창작자의 저작물 시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318)

예를 들어, AI 및 디지털 정책 센터(Center for AI and Digital Policy)는 "AI가 [아티스트]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다면, 그들의 창작물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려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319) 작가협회 (Authors Guild)는 "수년간 고유한 목소리와 스타일을 개발한 작가들이 AI가 자신의 개성의 일부를 도용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저작물의 모방품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³¹⁶⁾ 예를 들어, The Authors Guild,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0-12 (Oct. 30, 2023)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저자의 저작물 전체(body of work) 또는 인식 가능한 스타일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참조.

³¹⁷⁾ 일부 논평자는 이미지 프롬프트가 아티스트의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는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Katherine Lee et al.,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44-46 n.229 (Oct. 29, 2023) (다음의 가상 텍스트-이미지 프롬프트 제공; "우주복을 입은 큰 개가 왼쪽을 향하고 있고 배경에 지구가 솟아 있는 황량한 달 풍경이 있으며, 아트스테이션에서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고해상도 미학의 폴 세잔 스타일의 유화로"); 또한 id. 20 n.66, 46(이미지에서 이미지로 프롬프트 설명) 참조.

³¹⁸⁾ 예를 들어,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art II—Identity in the Age of AI: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Cts., Intell. Prop., & the Internet of the H. Comm. on the Judiciary, 118th Cong. (2024) (statement of Karla Ortiz, Concept Artist, Illustrator, and Fine Artist) ("평생 기술을 갈고 닦으며 연마해 온 아티스트와 창작자들은 이제 그들의 저작물로 학습된 생성 AI 모델이 그들의 노고의 결과물을 즉시 재현한 복사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³¹⁹⁾ Center for AI and Digital Polic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5-16 (Oct. 30, 2023).

것을 발견하고 있다"³²⁰⁾고 설명했다. 또한 논평자들은 과거에 인간 모방자의 영향력은 시간과 노동의 요구로 제한되었지만, AI 시스템은 그 속도와 규모를 감안할 때 기하급수 적으로 더 큰 과제를 제시한다고 주장했다.321) 익명의 한 아티스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2023년 11월 29일 현재, 미국 아티스트 켈리 맥커넌(Kelly McKernan)을 구글링했을 때 가장 위에 나온 결과는 그녀 스타일의 AI 모방품이다. 이는 AI 위조품이 검색 엔진과 더 넓은 인터넷을 빠르게 전파하고 오염시킬 수 있는 능력 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사칭은 아티스트의 행위주체성(agency)과 온라인 정체성을 통제하는 능력에 위축 효과를 미친다. 아티스트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왜곡된 버전과 경쟁하고 있다.322)

저작권청은 이러한 우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법은 창작 스타일을 저작물의 별도의 요소로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 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323) 여러 논평자가 지적했듯이, 스타일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는

³²⁰⁾ The Authors Guild,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1 (Oct. 30, 2023)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갑자기 사람들이 작가들의 스타일로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생성 AI를 사용하는 것을 본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가 조지 마틴(George R.R. Martin)의 얼음과 불의 노래(왕좌의 게임)(A Song of Ice and Fire (Game of Thrones)) 시리즈의 마지막 두 소설을 쓰는 것을 보았다.")

³²¹⁾ 예를 들어, Letter from The Authors Guild, Summary of Ex Parte Meeting on May 6, 2024 Regarding the Office's AI Study, to U.S. Copyright Office 2 (May 10, 2024) ("[스타 일] 보호의 필요성이 AI가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료를 쉽게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고. 최근 AI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허위 출처 표시가 급증함에 따라 커지고 있다"고 강조) 참조.

³²²⁾ 익명의 아티스트, Repl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 (Dec. 5, 2023).

^{323) 17} USC § 102(b) ("어떠한 경우에도 독창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아이디어, 절차, 프로세스, 시스템, 운영 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않는다."); 또한 Douglas v. Osteen, 317 F. App'x . 97, 99(3d Cir. 2009) 참조 ("특정한 글쓰기 스타일이나 문학적 방법의 사용은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Whitehead v. CBS/Viacom, Inc., 315 F. Supp. 2d 1, 11(DDC 2004)("유사한 글쓰기 스타일이 저작물의 전체 개념과 느낌의 유사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 특정 글쓰기 스타일이나 표현 방법은 단독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Tangle Inc. v. Aritzia, Inc., No. 23-cv-1196, 2023 US Dist. LEXIS 187348, *7(ND Cal.)("스타일은 아무리 창의적이라도 아이디어이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참조. 그러나 Benjamin L.W. Sobel, Elements of Style: Copyright, Similarity, and Generative AI, 38.1 HARV. J.L. & TECH. (forthcoming 2024), https://www.bensobel.org/files/articles/Sobel Elements-of-Style Public-Draft-May-18-2024.pdf ("저작권법을 정직하게 적용하려면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부르

제102조(b)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과 일치하지 않는다.324)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아 티스트의 스타일 요소는 특정 기본 저작물과 별도로 쉽게 구분하고 정의할 수 없다.325) Google과 EFF 모두는 정책 문제로서 표현적 콘텐츠의 스타일 측면은 후발 창작자가 발전시키고 확장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326)

그러나 저작권법은 "...의 스타일에 따라(in the style of)" 프롬프트의 산출물이 아티 스트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특정 저작물의 보호 가능한 요소를 복제하는 경우에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의 향후 부분에서 논의할 것처럼, 아티스트 자신의 저작 물을 사용하여 AI 시스템을 훈련하여 스타일을 모방한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침해 청구 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수많은 논평자들은 스타일 모방에 대한 의미 있는 보호가 다른 법체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327) 여기에는 랜햄법의 사칭통용(passing-off) 및 부정경쟁 금지

는 것 중 일부가 때때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과 일부 법적 맥락에서 법원이 여러 저작물에 걸쳐 발생하는 저작권 이익을 균형에 맞게 보호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참조.

³²⁴⁾ 예를 들어, Pamela Samuelson Initial Comments at 36-37 ("여러 저작물을 집합적으로 고려하 여야만 식별할 수 있는 스타일 개념은 아이디어/표현 구분 및 제102조(b)와 일치하는 저작권 보호 를 받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다. '스타일'에 대해 제안된 저작권 보호가 개별 저작물의 스타일 특징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더라도 스타일이나 예술적 기법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아이디어/표현 구분 및 제102조(b)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MPA Initial Comments at 74 ("그러나 법은 개인에게 창작 스타일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에서 불가피하게 도출된다. 즉,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 한다는 것이다."). 17 USC § 102(b) ("어떠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것이 그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수록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않는다.")

^{325) 2} PATRY ON COPYRIGHT § 4:14 (2024)) ("아티스트가 특정 저작물과 연관되지 않은 스타일에 대해 광범위한 보호를 주장하는 경우... 그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다.") 참조.

³²⁶⁾ EFF Initial Comments at 7 ("특히 '스타일'과 같이 애매한 것으로 대중의 표현의 허용 범위에 대해 더 큰 수준의 제한을 하는 것은 저작권의 핵심 목적인 문화 발전을 훼손할 것이다."); Google LL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6 (Oct. 30, 2023) ("창작 스타일을 보호하는 법은 필연적으로 창의성을 억제하고 모든 예술가가 자유롭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적 공유지인 공공 영역(public domain)을 빈곤 하게 만들 것이다.").

³²⁷⁾ 예를 들어, A2IM-RIAA Joint Initial Comments at 41 ("AI 시스템이 특정 아티스트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거나 그들의 가치를 여기에서 찾는 경우, 해당 아티스트는 랜햄법과 퍼블리시티권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개인의 브랜드나 정체성(개인의 목소리나 초상 등) 사용을 규제하 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SAG-AFTRA Initial Comments at 8 ("AI 시스템이 아티스트 의 브랜드나 정체성에 기반을 두거나 그들의 가치를 여기에서 찾는 경우, 해당 아티스트는 법적 구제수단을 가져야 한다. 개인의 페르소나를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이나 랜햄법이 관련될 수 있으

조항이 포함된다.328) FTC는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창작자의 창작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은... 또한 불공정한 경쟁방법이나 불공정 하거나 기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창작자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현재 또는 장래의 저작물 가치를 감소케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329)

주의 퍼블리시티권 법률은 스타일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특정 스타일이 개 별 공연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보호받을 수도 있다.330) 판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도 있다.331) 이 분야의 법률이 완전히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는 최근에서야

며, 여기에는 AI 프로그램이 특정 아티스트의 이름을 프롬프트로 사용하여 출력물을 생성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Pamela Samuelson Initial Comments at 37 ("텍스트-이미지 생성기 사용 자가 프롬프트에서 현존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향은 상당한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 때때로 특정 아티스트의 이름이 아티스트 본인의 상당한 예술적 기여를 왜소하게 만드는 정도로 그들이 저술하지 않은 저작물과 공개적으로 연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저작권법 보다 상표법과 퍼블리시티권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피해인 듯하다.").

³²⁸⁾ Andrew J. Noreuil, Nice Tie: Trade Dress Protection for Visual Artistic Style When Competitors Offer Artist-Inspired Products, 67 FORDHAM L. REV. 3403, 3427 (1999) (discussing Walt Disney Co. v. Goodtimes Home Video Corp., 830 F. Supp. 762 (S.D.N.Y. 1993)) 참조.

³²⁹⁾ FTC Initial Comments at 5-6. 어도비(Adobe)는 의회에서 『연방 사칭금지법(FAIR, Federal Anti-Impersonation Right)』이라는 이름의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은 그의 독특한 개인적 스타일이나 초상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AI 도구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모방당하는 아티스트 에게 소송 권한을 부여한다. Adobe In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8 (Oct. 30, 2023).

^{330) 2} J. THOMAS MCCARTHY & ROGER E. SCHECHTER,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8:110, 4:75 (2d. ed. 2024); see also Muzikowski v. Paramount Pictures Corp., No. 01-cv-6721, 2003 U.S. Dist. LEXIS 21766, at *17-18 (N.D. Ill. Dec. 2, 2003) ("일리노이 퍼블리시티권법은 개인의 '정체성'을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개인을 식별하는 속성의] [법상] 사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률의 범위는 일리노이 법원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속성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 한다"고 판결). 하지만 Burck v. Mars, Inc., 571 F. Supp. 2d 446, 452(SDNY 2008)(뉴 욕의 퍼블리시티권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개인의 성격이나 공연 스타일을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 참조.

³³¹⁾ 제9순회법원은 캘리포니아 판례법에 따라 운동 경기 스타일을 "초상"의 한 요소로 인정했다. Keller v. Elec. Arts, Inc., 724 F.3d 1268, 1272 (9th Cir. 2013), 그리고 텍사스 북부 지구 법원도 "공연 스타일"을 텍사스 판례법에 따라 개인의 페르소나의 보호 가능한 한 측면으로 인정했다. Henley v. Dillard Dep't Stores, 46 F.Supp. 2d 587, 591 (N.D. Tex. 1999)(Elvis Presley Enters. V. Capece, 950 F.Supp. 783, 801 (S.D. Tex. 1996) 인용).

쉽고 거의 완벽한 스타일 모방 수단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일 수 있으며,332) 생성 AI의 출현으로 이러한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일부 AI 개발기업은 생존하고 있는 아티스트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하라는 요청을 차단하는 안전 조치를 시스템에 설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333)

요약하자면, 기존 법률에 따라 창작 스타일의 부당하거나 사기성 있는 베끼기에 대해 효과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호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과 함께 스타일 자체에 대해 재산권류의 권리를 확장하지 않는 정책적 이유를 감안할 때, 저작권청은 현재로서는 연방 딥페이크법상 스타일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334) 기존 보호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 결론을 재고할 수 있다.

³³²⁾ 예를 들어,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t 10 참조.

³³³⁾ Index: Creative Control, OPENAI, https://openai.com/index/dall-e-3/ ("DALL·E 3는 생존하고 있는 아티스트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요청하는 프롬프트를 거부하도록 설계되었다.") (2024년 7월 21일 최종 방문); Frequently Asked Ouestions, COPILOT, https://www.bing. com/images/create/help ("우리는 생존하고 있는 아티스트, 유명인 및 단체가 자신의 이름과 브랜드와 관련된 이미지의 생성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024년 7월 21일 최종 방문).

³³⁴⁾ 일부 논평자는 창작 스타일 외에도 딥페이크법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다른 주제(특히 성명 또는 귀속 표시)를 언급했다. 그들은 AI 생성 자료 또는 일반 창작물에 개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한다. 이는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AI가 생성한 사실적인 이미지나 음성 복제물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유형의 피해이다. 작가협회는 AI가 생성한 자료와 관련하여 저자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한다. Letter from Authors Guild, Summary of Ex Parte Meeting on May 6, 2024 Regarding the Office's AI Study, to U.S. Copyright Office 2 (May 10, 2024). 이를 통해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가 AI 시스템이 모방하도록 요청받은 저자의 이름으로 해당 자료에 라벨링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미국 감독 협회는 "감독의 창작물이 감독의 참여 없이 변경되거나 감독의 이름이 창작물에 허위로 인용되거나 삭제될 때 감독의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귀속 및 동일성 유지에 대한 인격적 권리를 추가하고자 한다. (앞의 각주 41 참조). Letter from Directors Guild, Summary of Ex Parte Meetings on May 22 and May 29, 2024 Regarding the Office's AI Study, to U.S. Copyright Office 1-2 (June 4, 2024) 이 분야에서도 기존 법률의 여러 조항이 개인 이름의 무단 사용과 혼동을 방지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한다. 예를 들어, CAL. CIV. CODE § 3344 (West 2024). "이름, 음성, 서명, 사진 또는 초상"보호) FLA. STAT. § 540.08 (2024) ("이름, 초상, 사진 또는 그 밖의 유사성" 보호); VA. CODE ANN. § 8.01-40 (2024) ("이름, 초상화 또는 그림" 보호); 15 USC § 1125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중에서도,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인 제공).

제IV장 결론

저작권청은 연방 차원에서 새로운 보호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한 수많은 논평자들 에게 동의한다. 개인의 이미지와 음성을 딥페이크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생성 AI 도구가 널리 사용되면서 기존 법률의 허점이 부각되고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우리는 의회가 모든 개인을 생애 동안 무단 딥페이크의 고의적 배포로부터 보호하는 연방 권리를 확립하기를 권고한다. 이 권리는 라이선스 할 수 있으며, 안전 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고, 금전적 손해 배상과 금지 명령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 을 수반해야 한다. 전통적인 간접 책임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OSP에 대한 적절한 조건의 피난항 조항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에는 명시적으로 수정 헌법 제1조가 수용되 어야 한다. 끝으로, 잘 발전된 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 주 법률에 전면적인 우선 적용을 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저작권청은 이 보고서와 후속 자료의 권고 사항을 검토하는 의회, 법원, 행정부와 계속 협조할 것이다.

감사의 말씀

저작권과 인공지능에 관한 저작권청 보고서의 제1부는 딥페이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대규모의 재능 있는 팀의 노력으로 탄생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이끌고 심도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한 청의 고위 간부들에 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수지 윌슨(Suzy Wilson) 법무실장겸 청장보와 앤드류 포글리 아(Andrew Foglia) 정책·국제실 부실장은 새롭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에밀리 차푸이스(Emily Chapuis) 법무부실장과 마리아 스트롱 (Maria Strong) 청장보겸 정책·국제실 실장은 관리, 연구, 초안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제1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저술을 담당한 정책·국제실(Office of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PIA)과 법무실(Office of General Counsel, OGC)의 변호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는 PIA의 크리스 웨스턴(Chris Weston), 케이틀 린 코스텔로(Caitlin Costello), 다니엘 존슨(Danielle Johnson)과 OGC의 브랜디 칼 (Brandy Karl), 헤더 월터스(Heather Walters), 그리고 개브리엘라 로하드-루나 Gabriela Rojas-Luna)가 포함됩니다. OGC의 제이슨 슬론(Jason Sloan)과 PIA 로펌 서기인 맥스 알터(Max Alter), 맷 블라스지크(Matt Blaszczyk), 그리고 저스틴 로스 (Justin Ross)가 추가 연구와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PIA의 벤저민 브래디(Benjamin Brady)와 아이작 클립스타인(Isaac Klipstein), OGC의 헤더 월터스, 개브리엘라 로하 드-루나와 레아 이피미아디스(Rhea Efthimiadis), 그리고 홍보교육실(Office of Public Information and Education, PIE)의 제시카 친나두레이(Jessica Chinnadurai)가 텍스트와 인용문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PIE의 제작소통팀은 문서의 준비와 공표를 능숙하게 감독했습니다. 홍보교육 담당 청장보인 미리아 로드(Miriam Lord)와 부실장 조지 스로니(George Thuronyi)가 이끄 는 팀에는 스티브 안드레아디스(Steve Andreadis), 니콜 첸(Nicole Chen), 리사 마플 랙(Lisa Marflak), 앨리슨 홀(Alison Hall), 스탠리 머골로(Stanley Murgolo), 안재나 파드마나반(Anjana Padmanabhan), 노라 스켈랜드(Nora Scheland), 그리고 네이오 미 울랜사리(Naomi Wulansari)가 함께 했습니다.

끝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의사소통과 대응을 보여준 미국 특허상표 청, 미국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의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쉬라 펄머터 저작권청장 2024년 7월 31일,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과 저작권 제2부 저작권 보호 가능성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lity

2025. 1.

미국 저작권청

이 보고서에 대하여

미국 저작권청의 이 보고서는 저작권청의 2023년 8월 조사 통지(NOI)에 명시된 대로 인공지능(AI)과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 문제를 다룬다.

보고서는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발행될 예정이며, 각 부분은 다른 주제를 다룬다. 제2부는 생성 AI를 사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대해다룬다. 2024년에 발행된 제1부는 딥페이크, 즉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의 목소리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복제하는 주제를 다루었다. 후속 부분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활용한 AI모델의 학습, 라이선스 고려 사항및 책임의 분담 등을 다룬다.

자세한 내용은 www.copyright.gov/ai 참조

저작권청에 대하여

미국 저작권청은 법에 따라 미국 저작권법을 관리하는 연방 기관이다. 저작권청 장은 의회에 자문하고, 법원과 행정부에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및 그 밖의 사항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저작권청은 의회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작권청의 사명은 "국가의 저작권법을 관리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법과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증진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copyright.gov 참조.

서문

2023년 초,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과 인공지능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광범위한 이니 셔티브를 발표했다.

그해 3월, 저작권청은 AI 생성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등록 지침을 담은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 봄과 여름에 걸쳐 우리는 일련의 온라인 청문 세션을 주최하 고, 교육 웨비나를 개최하였으며, 수많은 이해 관계자와 접촉하여 기술과 그 사용 방법, 저작권에의 함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제기된 모든 범위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구하는. 2023년 8월의 조사 통지로 정점을 이루었다. 그 결과 우리는 작가와 작곡가, 공연자와 아티스트, 출판사와 프로듀서, 변호사와 학자, 기술 회사, 도서관, 스포츠 리그, 무역 회사와 공익 단체, 심지어 중학교 학생 한 학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관점을 대표하는 10,000개 이상의 의견을 받았다. 의견은 50개 주와 67개국에서 나왔다. 이 보고서의 논의와 권고 사항은 귀중하고 광범위한 의견과 추가적인 저작권청의 조사 결과, 그리고 보완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목 차 CONTENTS

제 [장	서론	94
	A. 기술과 저작권 ···································	95
	B. 저작권청의 AI 이니셔티브 ······	. 96
제∐장	저작과 인공 지능	99
	A. 기술적 배경 ···································	99
	B. 법체계 ······	102
	C. AI 시스템의 보조적 사용 ······	106
	D. 프롬프트 ··································	108
	1. 논평자의 의견	108
	2. 분석	115
	E. 표현적 입력 ······	120
	F. AI 생성 콘텐츠의 수정 또는 배열 ·····	122

제∭장	국제적 접근	126
제 IV 장	입법적 대응에 대한 주장	131
	A. 인센티브 제공 ······	131
	B. 장애 창작자 역량 강화 ······	138
	C. 국제 경쟁에의 대응 ······	139
	D. 더 높은 명확성 제공 ······	140
제 ${f V}$ 장	결론	142

요약문

저작권청의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대한 보고서의 제2부는 AI 시스템에 의해 생 성된 출력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다룬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출력물을 미국의 저작 권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기에 충분한 인간 기여의 유형과 수준을 분석한다.

저작권청이 조사 통지("NOI")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10,000개가 넘는 의견 중 약 절반이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대다수의 논평자는 이 분야에 기존 법률이 충분하며 전적으로 AI에 의해 생성된 자료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논평자들은 어떤 형태의 인간 기여를 포함하는 생성 AI 출력물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그들은 기존 법률에 따라 어떤 유형과 양의 기여가 저작 (authorship)이 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창작 과정에 AI를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분야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문제로서, 일부 논평자는 생성 AI에 의해 작성된 자료에 대해 보호를 확대하면 저작물의 더 많은 창작이 촉진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문화와 지식이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청은 또한 AI 생성 출력물의 확산이 증가하면 인간이 창작할 인센티브 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들었다.

저작권 보호 가능성은 사례별로 결정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저작권청은 이 보고 서에서 분석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제시하고 AI 생성 콘텐츠에의 적용을 평가한다.

제I장에서는 AI 기술이 제기하는 저작권 보호 가능성 문제를 파악한다. 저작권법을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맞춰 수정한 역사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저작권청이 추진 중인 AI 이니셔티브를 설명한다.

제II장에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간략한 배경을 제공한다. 그런 다음 기존 법체계, 특히 인간 저작(human authorship) 요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독창성 기준을 요약한다.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 저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후, AI 생성 출력물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인간의 기여, 즉 프롬프트 입력, 인간이 저작한 표현적 입력의 삽입, 그리고 AI 생성 출력물의 수정 또는 배열에 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제III장에서는 국제적 상황을 보고한다.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법률 시스템 내에서 저작권 보호 가능성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제IV장에서는 AI 생성 자료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의 정책적 의미 를 다루고, 입법적 대응에 대한 찬반 주장을 평가한다.

저작권법과 정책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그리고 NOI에 대한 많은 사려 깊은 논평에 도움을 받아 저작권청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권고한다.

- 저작권 보호 가능성과 AI의 문제는 입법적 변화 없이도 기존 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기보다는 지원하는 데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 출력물 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저작권은 인간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독창적 표현을 보호하며, 그 저작물에 AI 생성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 저작권 보호는 순수한 AI 생성 자료나 표현적 요소에 대한 인간의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자료에는 미치지 않는다.
- AI 생성 출력물에 대한 인간의 기여가 저작이 되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사례별로 분석되어야 한다.
-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의 기능을 기준으로 볼 때. 프롬프트 자체만으로 는 충분한 통제를 제공하지 못한다.

- 인간 저작자는 AI 생성 출력물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들의 저작물은 물론 그 출력물 에 포함된 소재의 창작적인 선택, 조정 또는 배열이나 출력물의 창작적인 수정에 대한 저작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
-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저작권 또는 독자적 보호(sui generis protection) 에 대한 사례는 제기되지 않았다.

저작권청은 이러한 결론 중 어떤 것을 재검토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술 및 법적 발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다. 저작권청은 또한 추가적인 등록 지침과 미국 저작권청 실무제요1)의 개정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¹⁾ U.S. COPYRIGHT OFFICE,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3d ed. 2021) ("COMPENDIUM (THIRD)").

제 I 장 서론

저작권청의 〈인공지능과 저작권〉 보고서의 제2부에서는 인간 저작자가 창작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출력물을 생성하기 위해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룬다.

저작물을 작성하는 데에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저작자들은 수십 년 동안 컴퓨터 지원 기술을 사용하여 창작물을 개선, 수정, 그리고 추가함으로써, 그들 의 표현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권 시스템의 목표에 다가가 왔다. 그리고 오늘날 그들은 기술의 진보를 활용하여 흥미로운 방식으로 창의성의 경계를 넓히고 있다. 보조 도구로 AI를 사용하거나, AI 생성 콘텐츠를 더 큰 저작물에 통합하는 것은 그 저작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최신의 생성 AI 기술2)의 능력은 인간 저작의 본질과 범위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한다.

오늘날 이러한 기술들은 전통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의적인 저작물과 유사한 텍스트,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출력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출력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인간 기여의 본질과 정도, 그리고 그것이 출력물에 포함된 표현적 요소의 저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끝으로, 기존 저작권 원칙에 따라 보호될 수 없다면, 법을 바꾸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quot;생성 AI"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와 같은 표현적 자료의 형태로 출력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AI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Study: Notice of Inquiry, 88 Fed. Reg. 59942, 59948-49 (Aug. 30, 2023) ("NOI").

A. 기술과 저작권

1976년 저작권법의 입법경위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의 역사는 보호가 부여 되는 저작물 유형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역사이다."3)

수년간에 걸쳐 저작권은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과 매체에 대응할 만큼 충분히 유연하다 는 것이 입증되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보호는 사진, 영화, 비디오 게임 및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4) 동시에 법원은 저작의 본질을 탐구하고 분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저작자가 창작 과정에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함에 따라, 인간과 기계의 상대 적 역할이 저작권 보호 가능성 분석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청구를 등록하는 역할 덕분에 5 저작권청은 저작물의 창작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을 다루는 데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1965년,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자료가 "컴퓨터가 '쓴 것인지'" 또는 인간 창작자가 저작한 것인지 여부 등 "저작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이 당시 저작권 청장이었던 애브러햄 캐민스타인(Abraham Kaminstein)이 논평했듯이. 모든 상황에 맞는 하나의 답은 없다.

³⁾ H.R. REP. NO. 94-1496, at 51 (1976), reprinted in 1976 U.S.C.C.A.N. 5659, 5664.

⁴⁾ 의회가 건축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확대했을 때, 의회는 이러한 유형의 저작물은 "다른 모든 저작권 보호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독창성의 일반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H.R. REP. NO. 101-735, at 21 (1990), reprinted in 1990 U.S.C.C.A.N. 6935, 6952. 법원 또한 수많은 사건에서 신기술과 관련된 청구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Meshwerks, Inc. v. Toyota Motor Sales USA, 528 F.3d 1258, 1264-65 (10th Cir. 2008)(당시 닐 고서치(Neil Gorsuch) 판사는 "우리 앞에 있는 디지털 매체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으로 완벽하게 보호되는 생생한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언급); Stern Elecs., Inc. v. Kaufman, 669 F.2d 852, 856-67 (2d Cir. 1982)(시청각 저작물); M. Kramer Mfg. Co. v. Andrews (783 F.2d 421, 436 (4th Cir. 1986))(비디오 게임); Tandy Corp. v. Personal Micro Computs., Inc. (524 F. Supp. 171, 173 (ND Cal. 1981)(컴퓨터 프로그램 및 실리콘 칩) 참조.

⁵⁾ 저작권 등록 기관은 저작권 등록 청구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권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다. 17 USC 8 410(a), 701(a). 저작권은 유형적 매체에 고정된 경우에 독창적인 저작물에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등록(또는 등록 거부)은 미국 저작권자가 법원에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이고 법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id.* § 106, 408(a). 410(c), 412, 411(a); U.S. Copyright Office, Circular 1: Copyright Basics (Sept. 2021), https://copyright.gov/circs/circ01.pdf 참조.

⁶⁾ U.S. COPYRIGHT OFFICE, SIXTY-EIGHTH ANNUAL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FOR THE FISCAL YEAR ENDING JUNE 30, 1965, at 5 (1966), https:// www.copyright.gov/reports/annual/archive/ar-1965.pdf.

중요한 질문은 그 "저작물"이 기본적으로 인간 저작의 하나이고 컴퓨터는 단지 보조 도구에 불과한지, 아니면 그 저작물의 전통적인 저작 요소(문학, 예술 또는 음악적 표현이나 선택, 배열 등의 요소)가 실제로 인간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 구상되고 실행되었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7)

답변은 저작물이 창작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바버라 링거(Barbara Ringer)(당시 심사부장으로 나중에 저작권청장이 됨)는 저작권청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데 단지 컴퓨터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거부된다는 단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8)고 언급했다.

동일한 분석이 AI 기술의 맥락에도 적용된다. AI를 사용하여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 AI 없이 창작된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결정하려면 저작물과 저작 물의 창작 상황에 대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검토가 필요하다. AI가 창작 과정에 단순히 저작자를 돕는 경우, AI의 사용은 출력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반대로, 콘텐츠가 전적으로 AI에 의해 생성되는 경우, 그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9) AI 출력물을 제작하는 데에는, 이러한 경계의 사이에서 인간 기여의 다양한 형태와 조합이 관여될 수 있다.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평가하는 명확한 규칙은 거의 없지만, 보고서의 제2부에서는 관련 검토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B. 저작권청의 AI 이니셔티브

2022년 2월, 저작권청 재심위원회는 인간의 개입 없이 생성되었다고 주장되는 저작 물의 등록을 거부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10) 1년 후, 저작권청은 AI 생성 자료를 수록한

⁷⁾ *Id.*

⁸⁾ U.S. COPYRIGHT OFFICE, ANNUAL REPORT OF THE Examining Division, Copyright Office, for the Fiscal Year 1965, at 4 (1965), https://copyright.gov/reports/annual/ar chive/ar-examining1965.pdf.

⁹⁾ Thaler v. Perlmutter, 687 F. Supp. 3d 140, 149-50 (D.D.C. 2023) 참조.

¹⁰⁾ U.S. Copyright Office Review Board, Decision Affirming Refusal of Registration of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Feb. 14, 2022), https://copyright.gov/rulings-filings/re view-board/docs/a-recent-entrance-to-paradise.pdf.

만화책에 대해 등록증을 발급했다.11)

2023년 초, 저작권청은 광범위한 AI 이니셔티브의 시작을 알리고, AI 생성 자료를 수록한 저작물의 등록에 대한 지침("지침" 또는 "AI 등록 지침")12)을 담은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미국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간 저작이 필수적이라는 저작권청의 오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13) 저작물에 최소한의 정도 이상의 AI 생성 자료가 포함된 경우에, 신청자는 그 정보를 공개하고 인간 저작자의 기여를 기술하는 간략한 진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14)

지침이 발표된 이후, 저작권청은 AI 생성 자료를 수록한 수백 개의 저작물을 등록했으 며, 이 등록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인간 저작자의 기여도 포함된다.15)

2023년 8월, 저작권청은 생성 AI의 발전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저작권 법 및 정책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조사 통지(Notice of Inquiry, NOI)를 발행했 다.16) NOI는 AI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성된 자료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과 관련하여 5가지 질문을 했다.

¹¹⁾ U.S. Copyright Office, Cancellation Decision re: Zarva of the Dawn (VAu001480196) at 5 (Feb. 21, 2023), https://www.copyright.gov/docs/zarya-of-the-dawn.pdf. (등록에는 저작물의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서면 및 시각적 요소에 대한 인간의 선택, 조정 및 배열은 포함되지만, 인간 저작의 산물이 아닌 미드저니(Midjourney)에서 생성한 이미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

¹²⁾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88 Fed. Reg. 16190 (Mar. 16, 2023) ("AI Registration Guidance"). 지침 사본은 저작권청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2023), https://copyright.gov/ai/ai_policy_guidance.pdf.

¹³⁾ AI Registration Guidance at 16191-92; 또한 Thaler, 687 F. Supp. 3d at 149-50 참조.

¹⁴⁾ AI Registration Guidance at 16193; 또한 Registration Guidance for Works Containing Al-Generated Content Tr. (June 28, 2023), https://www.copyright.gov/events/ai-appli cation-process/Registration-of-Works-with-AITranscript.pdf (AI 생성 자료를 수록한 저작 물의 등록에 관한 웨비나 자료) 참조.

¹⁵⁾ 등록 기록은 저작권 공공 기록 시스템(Copyright Public Record System)을 검색하기 위한 키워드 와 필터를 사용하여 저작권청의 공공 기록에서 검색할 수 있다. Copyright Public Records System - Pilot, U.S. COPYRIGHT OFFICE, https://publicrecords.copyright.gov/ (2025년 1월 17일 최종 방문).

¹⁶⁾ NOI.

- (1) 미국 헌법의 저작권 조항은 AI 생성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허용하는가?
- (2) 미국 저작권법상 생성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인간이 그 시스템이 생성한 자료의 "저작자"로 간주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가?
- (3) AI 생성 자료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 (4) 그렇다면 그것은 저작권의 한 형태여야 하는가, 아니면 별도의 독자적인(sui generis) 권리여야 하는가?
- (5) 인간 저작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17)

NOI에 대한 응답으로 접수된 10,000개가 넘는 의견 중 약 50%가 이러한 질문 중 하나 이상에 답하였다. 저작권청은 이어지는 논의 전반에 걸쳐 이 의견들을 언급할 것이다.

¹⁷⁾ Id. at 59947-48.

제Ⅱ장 저작과 인공 지능

A. 기술적 배경

NOI에서 저작권청은 AI 시스템을 "하나 이상의 AI 모델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서비스"로 정의했다.18) 더 큰 시스템 의 구성 요소로서 AI 모델은 텍스트나 이미지 생성과 같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코드와 수치(또는 "가중치")로 구성된다.19)

오늘날 널리 이용 가능한 많은 AI 시스템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 여러 매체의 조합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으로부터 출력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롬프트"는 워하는 출력물의 속성을 [AI 시스템에] 전달하는. 종종 텍스트 형태 의. 입력의 통상적인 유형이다.20) AI 시스템은 이러한 입력에 대해 요청된 형식(텍스트,

¹⁸⁾ NOI at 59948; 또한 James M. Inhof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3, Pub. L. 117-263, § 7223(4)(A), 136 Stat. 2395, 3669 (2022) ("인공지능 시스템"을 "동적 또는 정적 머신 러닝 알고리즘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 로 작동하는 모든 데이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도구 또는 유틸리티"로 정의) 참조.

¹⁹⁾ NOI at 59948-49; ZHANG ET AL., DIVE INTO DEEP LEARNING, ch. 1 (2023), https:// d2l.ai/chapter introduction/index.html(ebook); GARETH JAMES ET AL., A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WITH APPLICATIONS IN PYTHON, at 404-05 (2023), https://www.statlearning.com/(ebook) (신경망의 매개변수를 때로 "가중치"라고 한다고 설명) 참조.

²⁰⁾ 예를 들어, Leonardo Banh & Gero Strobel,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33:63 ELEC. MKTS. 1, 3 (2023), https://doi.org/10.1007/s12525-023-00680-1 ("프롬프트 입력은... 최종 사용자가 자연어를 사용하여 [생성 AI] 애플리케이션(예들 들어, LLM)이 텍스트, 이미지 또는 그 밖의 유형 등 원하는 출력물을 생성하도록 관여하고 지시할 수 있도록 한다."); Prompt, GENLAW GLOSSARY, https://blog.genlaw.org/glossary.html#prompt ("대부분의 생성 AI 시스템은 입 력(현재는 종종 텍스트)을 받아서 출력물을 조정하는 데 사용하다. 이 입력을 프롬프트라고 하다.") (2025년 1월 17일 최종 방문); Image Prompts, MIDJOURNEY, https://docs.midjourney. com/docs/image-prompts ("작품의 구성, 스타일 및 색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프롬프트의 일부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2025년 1월 17일 최종 방문); Sander Schulhoff et al., The Prompt Report: A Systematic Survey of Prompting Techniques at 5, ARXIV (Dec. 30, 2024), https://arxiv.org/abs/2406.06608 ("프롬프트는 생성 AI모델에 대한 입력으로, 출력을 가이드 하는 데 사용된다.") 참조.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으로 출력물을 생성하여 응답한다. 프롬프트는 일반적으로 사용 자가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주제, 테마 및/또는 소재를 묘사하며, 전반적인 스타일, 톤 및/또는 시각적 기법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는 "만화 우주선"을 요청하는 것과 같이 짧고 간단할 수도 있고, 장황한 요소를 요청하는 더 자세한 것일 수도 있다. 사용자는 프롬프트를 한 번에 입력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시스템이 마음에 드는 출력물 을 생성할 때까지 출력물을 개선할 수 있다.21)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만드는 관행을 때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22) 프롬프트는 출력물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프롬프트를 수 정하거나 확장하는 생성 AI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최적화될 수도 있다.23) 예를 들어, 챗 지피티(ChatGPT)는 "[OpenAI의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모델인] DALL·E 3에 맞게 세부 조정된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한다."24)

하지만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25) 현재 생성 AI 시스템의 출력물에는 지정되지 않은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고 지정된 콘텐츠는 제외될 수 있다.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 고 있지만, 특정한 프롬프트나 다른 입력이 출력물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불확실성 은 수십억 개의 매개변수가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한 복잡한 AI 시스템에 내재된 것일 수 있다.26) 일부 관찰자는 AI를 "블랙박스"라고 설명하고,27) 전문 연구자조차도 특정

²¹⁾ 다른 전략은 더 복잡한데, 예를 들어 복잡한 프롬프트를 각 단계에 대한 프롬프트가 있는 일련의 중간 하위 작업으로 나누는 "프롬프트 엮기(prompt chaining)"가 있다. Robert Clariso & Jordi Cabot, Model-Driven Prompt Engineering, IEEE XPLORE, 2023, at 48, DOI: 10.1109/ MODELS58315.2023.00020.

²²⁾ 예를 들어, id. at 47 참조; Sander Schulhoff et al., The Prompt Report: A Systematic Survey of Prompting Techniques at 7, ARXIV (Dec. 30, 2024), https://arxiv.org/abs/2406.06608.

²³⁾ 예를 들어, Siddhartha Datta et al., Prompt Expansion for Adaptive Text-to-Image Generation at 4, 14, ARXIV (Dec. 27, 2023), https://arxiv.org/abs/2312.16720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미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특화된 키워드와 (생성된 이미지에 다양성을 더하기 위한) 흥미로운 추가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N개의 확장된 텍스트 프롬프트 세트를 출력하는" 모델을 설명); PROMPTPERFECT, https://promptperfect.jina.ai/ (2025년 1월 17일 최종 방 문); PROMPTIST, https://foundr.ai/product/promptist (2025년 1월 17일 최종 방문) 참조.

²⁴⁾ DALL·E 3, OPENAI, https://openai.com/index/dall-e-3/ (2025년 1월 17일 최종 방문).

²⁵⁾ 이 보고서 각주 84-87 및 22-23쪽 참조.

²⁶⁾ 예를 들어, GARETH IAMES ET AL., A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WITH APPLICATIONS IN PYTHON, at 23-25 (2023), https://www.statlearning.com/ (ebook) (신경망을 고도로 유연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모델의 예로 들면서, 통계적 학습 모델의 유연성과 해석가능성 사이의 근본적인 상충 관계에 대해 논의); Christian Szegedy et al., Intriguing

모델의 작동을 이해하거나 예측하는 그들의 능력이 제한적이다.28)

또한 널리 활용되는 많은 AI 시스템은 동일한 프롬프트를 사용하더라도 요청할 때마 다 출력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측 불가능하다.29) 일부 시스템은 사용자가 "시드(seed)" 값을 설정하여 이러한 작동을 통제하고 일관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시드 값은 출력물 생성 프로세스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되는 숫자이다.30) 예를 들어, 미드저니(Midjourney) 사용자는 시드(예를 들어, "123")를 설정하고 동일한 프롬

properties of neural networks at 1, ARXIV (Feb. 19, 2024), https://arxiv.org/abs/1312. 6199 ("신경망은 적은 수의 대량 병렬 비선형 단계로 구성된 임의의 계산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구현한다. 그러나 결과 값의 계산이 자동으로 발견되므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직관적이지 않은 속성을 가질 수 있다."); Pantelis Linardatos et al., Explainable AI: A Review of Machine Learning Interpretability Methods, 23 ENTROPY 1, 1 (Dec. 25, 2020), https://dx.doi.org/10.3390/e23010018 ("증가하는 복잡성은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사용된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의 예측 능력 을 향상시키지만, 본질적으로 시스템의 내부 작동 및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결과 적으로 시스템의 결정 근거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따라서 예측을 해석하기 어려워진다.").

²⁷⁾ Steven Levy, AI Is a Black Box. Anthropic Figured Out a Way to Look Inside, WIRED (May 24, 2024), https://www.wired.com/story/anthropic-black-box-ai-research-neurons -features/("연구자들에게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만장일치로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Lou Blouin, Al's mysterious 'black box' problem, explained, UMDEARBORN.EDU NEWS (Mar. 6, 2023), https://umdearborn.edu/news/ ais-mysterious-black-box-problem-explained. 또한 이 보고서 각주 84-87 참조.

²⁸⁾ 예를 들어, Trenton Bricken et al., Towards Monosemanticity: Decomposing Language Models With Dictionary Learning, TRANSFORMER CIRCUITS THREAD (Oct. 4, 2023), https://transformer-circuits.pub/2023/monosemanticfeatures/index.html. ("기계적 해석 가능성은 신경망을 전체보다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 나누어 이해하려고 한다. 각 구성 요소의 기능과 그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의 작동에 대해 추론할 수 있기를 바란다."); Adly Templeton et al., Scaling Monosemanticity: Extracting Interpretable Features from Claude 3 Sonnet, T RANSFORMER C IRCUITS T HREAD D (May 21, 2024), https://transformer-circuits.pub/2024/scaling-monosemanticity/index. html ("우리의 작업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그 중 일부는 이 작업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 는 사소한 것이지만, 다른 일부는 해결하려면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매우 근본적인 과제이다.")

²⁹⁾ 예를 들어, Reproducible Outputs, OPENAI, https://platform.openai.com/docs/advanced -usage/reproducible-outputs (2025년 1월 17일 최종 방문); Shuyin Ouyang et al., LLM is Like a Box of Chocolates: the Non-determinism of ChatGPT in Code Generation, ARXIV (Oct. 17, 2024), https://arxiv.org/abs/2308.02828.

³⁰⁾ 예를 들어, Reproducible Outputs, OPENAI, https://platform.openai.com/docs/advanced -usage/reproducible-outputs (2025년 1월 17일 최종 방문); Seeds, MIDJOURNEY, https: //docs.midjourney.com/docs/seeds ("미드저니 봇(Midjourney bot)은 시드 번호를 사용하여 초기 이미지 그리드를 생성하는 시작점으로서 텔레비전 정전과 같은 시각적 노이즈 필드를 생성한다. 시드 번호는 각 이미지에 대해 무작위로 생성되지만 --시드 매개변수로 지정할 수 있다. 동일한 시드 번호와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유사한 최종 이미지를 얻게 된다.") (2025년 1월 17일 최종 방문).

프트를 반복하면 거의 동일한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31)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조차도 항상 완벽한 일관성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32)

B. 법체계

저작귀청이 AI 등록 지침에서 확인했듯이.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는 인간 저작을 요구 하다. 이 기본 워칙은 헌법의 저작권 조항과 법원에서 해석한 저작권법의 문구에 근거한 다. 저작권 조항은 의회에 "저작자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33)할 권한을 부여한다. 대법원이 설명했듯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 물의] 저작자는... 아이디어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고정된 유형적인 표현으로 변환한 *사람*이다."34)

어떤 법원도 인간이 아닌 존재가 작성한 자료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그 가능성을 부인했다. 두 가지 잘 알려진 사건에 서, 제9순회법원은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가 쓴 것"35)으로 주장되는 텍스트와 원숭이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36

³¹⁾ Seeds, MIDJOURNEY, https://docs.midjourney.com/docs/seeds (2025년 1월 17일 최종 방문).

³²⁾ Alexander Schlögl et al., Causes and Effects of Unanticipated Numerical Deviations in Neural Network Inference Framework, i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6 (A. Oh et al. eds., 2023), https://proceedings.neurips.cc/ paper_files/paper/2023/hash/af076c3bdbf935b81d808e37c5ede463-AbstractConferen ce.html; Reproducible Outputs, OPENAI, https://platform.openai.com/docs/advanced -usage/reproducibleoutputs (사용자가 동일한 시드 값을 설정함으로써 "대부분" 확정적 출력물 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2025년 1월 17일 최종 방문); Seeds, MIDJOURNEY, https://docs. midjourney.com/docs/seeds ("[특정 모델 버전의 경우] 동일한 --시드 값은 거의 동일한 이미지 를 생성한다.") (강조 추가) (2025년 1월 17일 최종 방문) 참조.

³³⁾ U.S. Const. art. I, § 8, cl. 8.

³⁴⁾ Cmty. for Creative Non-Violence v. Reid ("CCNV"), 490 U.S. 730, 737 (1989)(강조 추가).

³⁵⁾ Urantia Found. v. Kristen Maaherra, 114 F.3d 955, 957-59(9th Cir. 1997)("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신성한 존재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인간의 창작성의 어떤 요소가 발현되었어야 한다."고 판결). 그 책의 편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신성한 메시지"로 주장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

³⁶⁾ Naruto v. Slater, No. 15-cv-04324, 2016 US Dist. LEXIS 11041, at *10 (N.D. Cal. Jan. 28, 2016) ("[원숭이]는 저작권법의 의미에서 '저작자'가 아니다"), aff'd, 888 F.3d 418 (9th Cir. 2018) (원숭이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

2023년, 컬럼비아구 연방지방법원은 AI 생성 출력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구체적 으로 다른 최초의 법원이 되었다.37) 원고는 신청서에 "기계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알고리 즘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성됨"이라고 설명된 이미지에 대한 등록을 거부한 저작권청에 이의를 제기했다.38) 법원은 저작권청의 거부를 인용하면서 "저작권법은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만을 보호"하고 "인간 저작은 저작권의 기본 요건"39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저작권은... 안내하는 인간의 손길이 전혀 없이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로 생성된 저작물을 보호하는 데까지 확장된 적이 없다"고 판결했다.40) 법원은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AI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생성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 에"인간 저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41)이 판결은 항소되었다.42)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이 그 창작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그들의 기여가 저작자 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43) 연방대법원은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독창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마의 땀"만으로 저작권 보호에 충분할 수 있다는 이론을 기각했다.44) 법원은 "필요한 수준의 창작성은 확실히 지극히 낮다. 아주 약간만 있어도 충분하다. 대부분의 저작물은 '아무리 조잡하고, 초라 하고, 노골적'이더라도 약간의 창조적인 불꽃이라도 있다면 꽤 쉽게 그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45)

³⁷⁾ Thaler, 687 F. Supp. 3d 140. AI 생성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청의 등록 거부에 대한 두 번째 사건이 최근 접수되었다. Compl., Allen v. Perlmutter, No. 1:24-cv-2665 (D. Colo. Sept. 26, 2024), Doc. No. 1.

³⁸⁾ Thaler, 687 F. Supp. 3d 142-43.

³⁹⁾ Id, at 146.

⁴⁰⁾ Id.

⁴¹⁾ Id. at 149-50.

⁴²⁾ Notice of Appeal, Thaler v. Perlmutter, No. 23-5233 (D.C. Cir. Oct 18, 2023). 구두 변론은 2024년 9월 19일에 열렸다.

^{43) 17} USC § 102(b); Feist Publ'ns, Inc. v. Rural Tel. Serv. Co., 499 US 340, 344-45(1991)("저작 권법의 가장 기본적인 공리는 '어떠한 저작자도 자신의 아이디어나 자신이 서술하는 사실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임"을 설명)(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s., 471 US 539, 556 (1985) 인용)) 참조.

^{44) 499} U.S. at 352-61.

⁴⁵⁾ Id. at 345.

한 세기도 전에, 연방대법원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술이었던 카메라와 관련된 사건 에서 저작의 본질을 분석했다.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사진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확대한 것에 대한 헌법적 도전을 검토 했다.46) 피고는 사진에는 인간 저작이 결여되었고 대신에 기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저작 권이 없다고 주장했다.47)

법원은 "저작자"를 "무엇이든 그 기원을 빚진 자, 창시자, 제작자, 과학 또는 문학 저작물을 완성한 자"로 정의하여 분석을 시작했다.48) 법원은 저작권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천재성이나 지성의 산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권리"로 설명했다.49) 이 프레임워 크를 적용하여 사진사에 의해 행해진 수많은 창작적인 기여를 파악했다. 여기에는 "[피사 체]를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하게 하고, 의상, 커튼 및 그 밖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선택하 고 배열하는 것," "우아한 윤곽을 나타내도록 피사체를 배열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표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포함된다.50) 요약하면, 기계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보호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인간이 저작한 표현적 요소가 충분 히 포함된 경우에만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보다 최근에 두 명 이상의 인간 기여자가 관여된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여의 본질에 대해 고심했다. 대법원은 위탁된 조각 작품의 맥락에서 추가 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Community for Creative Non-Violence v. Reid ("CCNV")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조각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즉 그것을 구상한 비영리 단체인 지 아니면 그것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예술가인지에 대해 다투었다. 법원은 예술 가의 기여, 즉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그의 창작적 비전을 실행하는 것 등이 그를 저작자로 만든다고 결론지었다.51) 단체가 조각 작품의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심 법원에 환송하면서 컬럼비아구 순회법원은 조각 작품을 의뢰하고 자세한 제안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46) 111} U.S. 53, 55-57 (1884).

⁴⁷⁾ *Id.* at 56, 59–60.

⁴⁸⁾ Id. at 57-58(내부 인용 부호 생략).

⁴⁹⁾ Id, at 58.

⁵⁰⁾ Id, at 60 (내부 인용부호 생략).

⁵¹⁾ CCNV. 490 U.S. at 751-53.

명백히 했다. 그러한 기여는 보호될 수 없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52)

제3순회법원은 Andrien v. Southern Ocean County Chamber of Commerce 사건에서 유사한 분석에 관여했다. 앤드리언(Andrien)은 인쇄업체에 지도 모음의 크기 를 조정해서 인쇄해 달라고 요청한 원고의 저작 주장에 연루되었다.53) 원고는 "사본의 준비를 특별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시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편집본은 최종 유형물 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간단한 옮겨 적기만 하면 됐다."54) 인쇄소가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가 저작자라고 판결했다.55) CCNV 판례를 적용하여 저작자는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당사자, 즉 아이디어를 스스로 복제 물에 구현된 표현으로 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표현을 복제물에 구현하도록 허락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56)

AI 생성 출력물은 사용자와 AI 시스템의 공동저작물로 간주될 수 없지만,57) 공동

⁵²⁾ Cmtv. for Creative Non-Violence v. Reid, 846 F.2d 1485, 1497 (D.C. Cir. 1988).

^{53) 927} F.2d 132, 133 (3d Cir. 1991)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인쇄소는 "축척의 조정, 거리 이름 재입력, 다이빙 장소 및 지역 관심 지점의 지정 추가" 등의 작업 수행).

⁵⁴⁾ Id. at 135.

⁵⁵⁾ Id. at 135-36. SOS, Inc. v. Pavdav, Inc., 886 F.2d 1081, 1086-87(9th Cir. 1989) 참조(소프트 웨어를 의뢰한 당사자의 저작 주장을 기각하며, "[아이디어의 공급자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디스크의 공급자보다 더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아니다"라고 언급); MGB Homes, Inc. v. Ameron Homes Inc., 903 F.2d 1486, 1493(11th Cir. 1990)(스케치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완성된 표현의 "저작자"가 되지는 않음); Geshwind v. Garrick, 734 F. Supp. 644(SDNY 1990) (제작자는 "[애니메이션 클립]의 세부 사항과 방향의 변경을 원했고 심지어 제안까지 했지만" 애니메 이터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았거나 애니메이터가 지시를 실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아님), vacated in part on other grounds, 738 F. Supp. 792(SDNY 1990) 및 aff'd, 927 F.2d 594(2d Cir. 1991); Whelan Assocs. v. Jaslow Dental Lab'y, 609 F. Supp. 1307, 1318-19(ED Pa. 1985)("일반적인 지원 및 지식 자본(fund of knowledge)에 대한 기여"는 어느 사람을 "독창적인 저작물의 창작자"로 만들지 않음), amended, 609 F. Supp. 1325(ED Pa. 1985), aff'd, 797 F.2d 1222(3d Cir. 1986), and cert. denied, 479 US 1031(1987).

⁵⁶⁾ Andrien, 927 F.2d at 134-35 ("누군가가 구현을 허락할 때, 그 과정은 지적 수정이나 고도의 기술적 향상을 요구하지 않는 암기식 또는 기계적인 옮겨 적기여야 한다.")

^{57) &}quot;공동저작물"은 "두 명 이상의 저작자가 그들의 기여를 단일의 분리할 수 없거나 상호 의존적인 부분으로 병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저작물"을 말한다. 17 USC § 101("공동저작물" 정의). AI 시스템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력하는 "저작자"로 간주될 수 없다. Kernochan Center for Law, Media and the Arts ("Kernochan Center"),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6-9 (Oct. 30, 2023)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기계는 저작권법의 의미에서 "저작자"가 아니 며, 이러한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사용자의 기여와 자신의 출력물을 병합하려는 의도를 형성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

저작은 어느 당사자가 저작자로 간주되기에 충분한 표현을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유를 제공한다. 58) 공동저작자가 되려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기여 를 해야 한다.59) "저작자에게 위탁저작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가 아니다.60)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원칙을 생성 AI 시스템의 맥락에서 적용한다. 창작 과정에 서의 컴퓨터 지원 도구(computer-assisted tools)의 사용을 설명한 후, AI 생성 출력물 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종류의 인간 기여에 대해 논의한다. (1) AI 시스템에 출력물을 생성하도록 지시하는 프롬프트. (2) AI 생성 출력물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적 입력. (3) AI 생성 출력물의 수정 또는 배열.61)

C. AI 시스템의 보조적 사용

많은 논평자들은 창작 과정에 컴퓨터 지원 도구의 사용이 오랫동안 그리고 꾸준히

⁵⁸⁾ The Authors Guild,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3 (Oct. 30, 2023)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I-지원 인간-창작 저작물(AI-assisted human-created work) 또는 인간-지원 AI-생성 자료 (human-assisted AI-generated material)에서 어느 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 는 방법에 대해 법원에 도움이 되는 법률 분야에는... 공동저작물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 부차적인 창작자가 저작자의 지위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⁵⁹⁾ Brownstein v. Lindsay, 742 F.3d 55, 64(3d Cir. 2014)("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저작자가 되려면, 각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대해 사소하지 않은 양의 창의적, 독창적 또는 지적인 표현을 기여해야 하며,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기여를 병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Ashton-Tate Corp. v. Ross, 728 F. Supp. 597(ND Cal. 1989)(공동저작물에 대한 기여는 그 자체로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만이 보호 이익이 된다고 판시), aff'd, 916 F.2d 516, 521(9th Cir. 1990).

⁶⁰⁾ Pavdav. 886 F.2d 1087; 또한 Sullivan v. Flora. Inc., 936 F.3d 562(7th Cir. 2019)(원고와 피고가 일러스트레이션의 공동저작자가 아니라는 배심원 판결 유지, 피고는 단지 원고의 작업을 안내하기 위해 색상, 스타일, 텍스트 및 대략적인 윤곽선과 스케치에 대한 제안만 제공한 반면, 원고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창작하기 위해 디지털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며, 때로는 피고의 제안을 통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합하지 않았기 때문); BancTraining Video Sys. v. First American Corp., No. 91-cv-5340, 1992 US App. LEXIS 3677, at *12 (6th Cir. 1992)("저작 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에 대한 스케치, 아이디어 제공 또는 감독만으로는 어떤 사람이 공동저작자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⁶¹⁾ 물론, 많은 사례는 이러한 기여의 유형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조합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자신의 표현적인 입력과 여러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생성된 출력물에 창작적인 수정을 할 수 있다.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62) 그들은 창작 분야에서 수년간 수행되어 온 다양한 작업을 지적했는데, 그 중 일부는 "늙어가는" 또는 "젊어지는" 배우, 코드 진행 식별. 소프트웨어 코드의 오류 감지, 어느 장면에서 원치 않는 물체나 군중의 제거와 같은 AI에 있어서의 최신 발전을 담고 있다.63) 논평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AI 사용이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64)

저작권청은 AI를 저작물의 창작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AI를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대역으로 사용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인간의 표현을 향상시키는 보조적 사용은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지 않지만, AI 시스템이 표현적 선택을

⁶²⁾ 음악 산업 분야의 논평자들은 뮤지션과 사운드 엔지니어가 수년 동안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 왔으며, 오토튠(Autotune)을 한 예로 들었다. Songwriters of North America, et al.,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6 (Oct. 30, 2023); 또한 Recording Academ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 (Oct. 30, 2023) ("Recording Academy Initial Comments") 참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프로그래머와 컴퓨터 엔지니어는 자동 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예를 들어 리팩터링(refactoring)을 수행하고 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하는 등 소프트웨어 코드를 수정한다. Apple In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4 (Oct. 30, 2023) ("Apple Initial Comments").

⁶³⁾ 예를 들어, 논평자들은 뮤지션들이 비트를 개발하거나 트랙을 믹싱하는 데 AI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Recording Academy Initial Comments 3 참조; 또한 Universal Music Group ("UMG"),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5-7 (Oct. 30, 2023) ("UMG Initial Comments"); Dina LaPolt,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7 (Oct. 30, 2023) ("Dina LaPolt Initial Comments") 참조. 영화 회사들은 특히 시각 효과 및 후반 작업의 맥락에서 그들의 창작 과정의 일부로 AI 도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도구는 색상 보정, 디테일 선명화 또는 흐림 제거에 사용될 수 있다. Motion Picture Association ("MP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7-38 (Oct. 30, 2023) ("MPA Initial Comments"); 또한 Holton Lemaster,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ug. 31, 2023)("AI를 그들의 창작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하기로 선택한 아티스트를 위한 지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좋다. 사진에서 군중 제거, 비디오 안정화 도구,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은 모두 AI로 향상되면 정말로 빛을 발하는 도구들이다.") 참조. AI 도구는 로토스코핑(rotoscoping)이라는 프로세스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실사와 컴퓨터 생성 이미지 를 정렬하기 위해 하나의 샷 내의 개별 프레임을 변경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MPA Initial Comments at 6, 37–38.

⁶⁴⁾ 예를 들어,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6-7 (Oct. 30, 2023) ("IPO Initial Comments") ("인간이 창작성의 도구로 AI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성된 저작물 에 대해 그 인간 활동이 인간 저작의 전통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보호가 없다면 권리자와 창작자에게 비슷하게 해로울 것이다.") 참조.

하는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분은 AI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65)

논평자들은 또한 창작자들이 AI를 브레인스토밍 도구로 사용하는 실험을 시작한 상황 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레코딩 아카데미는 "[많은] 아카데미 회원들이 이미 생성 AI를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여기에는 송 아이디에이션(song ideation)도 포함된다.66) 또 다른 이해관계자는 AI를 사용하여 문학 저작물의 예비적인 개요를 구성하거나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67) 이러한 경우들 에서, 사용자는 생성 AI 시스템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그 출력물을 자신의 저작물 개발에 참조하지만 통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 AI를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 으로 인간이 저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68)

D. 프롬프트

1. 논평자의 의견

NOI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많은 의견은 AI 시스템에 프롬프트를 제공하여 출력물을 만드는 것의 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처음에 여러 논평자들은 충분히 창의적이라 면 프롬프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69) 그러나 생성된

⁶⁵⁾ 한 논평자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AI 플랫폼의 유형에 따라 구분할 것을 저작권청에 촉구했다. Scenario. In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6 (Oct. 18, 2023)("Scenario Initial Comments")(다중 모달 생성 AI 플랫폼에서 생성된 출력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단일 모달 생성 AI 플랫폼에서 생성된 출력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⁶⁶⁾ Recording Academy Initial Comments at 10.

⁶⁷⁾ Literary Works Listening Session Tr. at 31:18-23 (Apr. 19, 2023) (statement by Mary Rasenberger, The Authors Guild).

⁶⁸⁾ 논평자가 제공한 이러한 사용의 다른 예로는 디지털 편집 및 검수,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그 밖의 사용이 있다. Recording Academy Initial Comments at 3; Lori Wilde,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2023년 10월 24일); IPO Initial Comments at 2; Authors Alliance,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 (Oct. 30, 2023) ("Authors Alliance Initial Comments").

⁶⁹⁾ AI Registration Guidance at 16192 n.27;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t 32 n.39 (프롬프트의 작성자는 "충분한 독창적 표현이 있음을 전제로, 프롬프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출력물의 저작권 지위는 별개의 문제다.70)

대부분의 논평자는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자를 AI 생성 출력물 의 저작자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71) 여러 사람이 프롬프트를 보호할 수 없는 아이디어나 지시로 설명했다.72) 공연권 관리단체인 아스캅(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ASCAP")은 "인간의 개입이 AI 도구에 대한 최소한의 쿼리와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데 그친 경우, 그 결과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73) Brooklyn Law Incubator & Policy Clinic은 간단

주장); American Association of Independent Music ("A2IM") and 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Inc. ("RIA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4 (Oct. 30, 2023) ("AZIM-RIAA Joint Initial Comments"); Daniel Gervais,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6 (Oct. 30, 2023) ("Daniel Gervais Initial Comments") 참조.

⁷⁰⁾ 일반적으로 A2IM-RIAA Joint Initial Comments at 34("이러한 프롬프트의 텍스트는 충분히 표현적이라면 독립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롬프트 작성자에게 AI 시스템이 생성한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 Johan Brandstedt,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9 (Oct. 29, 2023) ("Johan Brandstedt Initial Comments").

⁷¹⁾ 논평자들은 "간단한(simple)이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설명이나 적은 수의 단어만을 포함한 프롬프트를 지칭하며 다양한 구체성을 가지고 사용했다. 예를 들어, Donaldson Callif Perez, LLP,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 (Oct. 30, 2023) ("Donaldson Callif Perez Initial Comments")("우리는 인간이 만든 간단한 프롬프트로 복잡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면 저작권 보호가 부여되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Dina LaPolt Initial Comments at 7 ("간단한 일반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사용자"는 저작권 보호를 청구할 수 없어야 한다고 언급) 참조. Edward Lee,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1 (Oct. 30, 2023)("단순한 하나 또는 두 단어 프롬프트"는 그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Peer Music and Boom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1 (Oct. 30, 2023) ("Peer Music Boomy Joint Initial Comments") (어떻게 복잡한 출력물을 생성하는 단일 프롬프트가 그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힘).

⁷²⁾ 예를 들어, Adobe In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5-6 (Oct. 30, 2023) ("Adobe Initial Comments")("프롬프트는 아이디어를 나타내므로 저작권이 없다."); Johan Brandstedt Initial Comments 19쪽("프롬프트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이미지 및 텍스트 생성기는 저장된 *표현*을 제공한다."라고 명시); European Writers' Council ("EW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6 (Oct. 30, 2023) ("EWC Initial Comments") ("프롬프 트를 작성하는 사람은 프롬프트만을 근거로 결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과제의 단순한 구상과 AI 시스템이 제안한 여러 결과 중에서의 선택은 창의적이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

⁷³⁾ ASCAP,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하고 일반적인 프롬프트에는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기에 충분한 인간의 창의 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74) Universal Music Group("UMG")은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음악가 친구에게 '예쁜 러브송을 장조로 써줘'라고 한 다음. 거짓으로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저작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75)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논평자들은 프롬프트가 단순히 AI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한 표현적 결과를 창작하는 데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76)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는 "사용자가 미드저니에 수중 도시 풍경 이미지 하나 또는 일련의 이미지들을 생성하도 록 요청하면 사용자는 수중 도시 풍경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77)

수정 및 반복되는 프롬프트 등 보다 자세한 프롬프트에 대한 논평자의 견해는 다양했 다. 일부는 매우 자세한 프롬프트는 일부 AI 생성 출력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을

Notice of Inquiry at 48-49 (Oct. 30, 2023) ("ASCAP Initial Comments").

⁷⁴⁾ Brooklyn Law Incubator & Policy Clinic ("BLIP"),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0 (Oct. 30, 2023) ("BLIP Initial Comments"); 또한 Qualcomm Incorporated, Repl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7 (Dec. 6, 2023) ("Qualcomm Reply Comments")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단일의 일반적인 프롬프트에 기반한" 출력물에는 "필수적인 인간의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 참조.

⁷⁵⁾ Letter from UMG, Summary of Ex Parte Meeting on Apr. 22, 2024, Regarding the Office's AI Study, to U.S. Copyright Office 11 (Dec. 3, 2024)("사용자가 [음악 생성 AI 회사]에 오디오 파일을 생성하도록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은 아무것도 작곡하거나 작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오리지널 음악'은 더더욱 아니다." 대신 "단순히 텍스트 프롬프트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자체가 자체 예측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오디오 트랙을 생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

⁷⁶⁾ IPO Initial Comments at 5; Van Lindberg,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41 (Oct. 30, 2023) ("Van Lindberg Initial Comments") ("무작위성은 생성 과정의 일부이다. -그러나, AI 모델의 출력은 무작위가 아니다.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생성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그리고/또는 생성 과정을 초기화하고 안내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입력을 제공한다."); Ashley Greenwald,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1 (Oct. 30, 2023)(인테리어 디자이너는 "특정 프롬프트와 지시를 제공하고," 중간 결과를 조정하고 수정하며, "생성 AI 도구의 도움으로 공동 창작된 출력물을 활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생성 AI 시스템을 시작한다고 주장); Christa Laser,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5 (Oct. 30, 2023) ("Christa Laser Initial Comments")("생성 AI의 몇몇 이용은 무작위 문자열과 지시되지 않은 결과물을 사용하지만, 생성 AI의 더 중요한 역할은 인간의 마음속에 미리 꿈꿔진 결과물을 향해 인간의 광범위한 창의성, 지시 및 선택을 구현하는 것이다.").

⁷⁷⁾ IPO Initial Comments at 5.

만큼 충분하다고 보았다.78) 파멜라 새뮤얼슨(Pamela Samuelson). 크리스토퍼 스프리 그먼(Christopher Jon Sprigman), 매튜 새그(Matthew Sag) 교수는 "이미지의 세부 사항을 지정하는 정교한 프롬프트는 [인간 저작]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라 고 말했으며 "모델 출력물이 그 사람의 원래 저작물의 구상을 반영하는 경우에 그 결과로 나온 저작물의 저작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79) 또 다른 논평자는 세부적인 프롬프트를 통해 사용자가 "조명, 포즈, 스타일, 표정 및 설정과 같은 저작물의 표현적 요소를 놀라울 정도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80)

이와 대조적으로, 작가협회(Authors Guild)는 프롬프트에서 출력물로의 생성 프로세 스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구상과 실행(conception and execution) 사이에 충분 한 통제와 그에 따른 충분한 근접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 다.81)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다.82) 예를 들어, 어도비(Adobe)는 "당신이 프롬프트(또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AI가 그 프롬프트를 해석한 것에만 기반하여 출력물을 받게 된

⁷⁸⁾ BLIP Initial Comments at 23 (사용자가 "AI 시스템에 매우 자세하고 광범위한 프롬프트를 제공하 여 출력물이 사용자가 예상한 것과 최대한 가깝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출력물은 "AI 시스템의 출력물을 통제하기에 충분한 입력과 프롬프트를 제공한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참조; Van Lindberg Initial Comments at 42 ("프롬프트에 제공된 정보가 많을수록 출력물 에 대한 통제력이 커진다."고 언급); Law Office of Seth Polansky LL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6 (Oct. 12, 2023)("큐레이트된 학습 또는 자세한 프롬프트 제공을 통하여 생성 AI 시스템의 출력물을 면밀히 안내하는 인간은 기계와 어떤 형태로든 '공동 저작'을 주장할 수 있음"). Donaldson Callif Perez Initial Comments at 2 ("누군가가 복잡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프롬프트 를 만드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아마도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있어야 할 것").

⁷⁹⁾ Pamela Samuelson et al.,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 (Oct. 30, 2023) ("Pamela Samuelson et al. Initial Comments"); 또한 MPA Initial Comments at 47 (기술이 "입력 자체가 출력물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함에 따라 프롬프트가 "훨씬 더 자세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프롬프트가 결코 인간 저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규칙은 그러한 가능성들을 무시한다."고 결론) 참조.

⁸⁰⁾ Christa Laser Initial Comments at 5. 다른 여러 논평자는 "프롬프트가 너무 지시적이고 자세해 서" 사용자가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드물 것이라고 경고했다.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t 32; 또한 Daniel Gervais Initial Comments at 6("자세한 프롬프트가... 기계 출력에서 직접 인지할 수 있는 인간의 창의적 선택을 반영하는 특정 아이디어의 표현을 포함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로 설명) 참조.

⁸¹⁾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t 31.

⁸²⁾ Association of Medical Illustrators,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8-9 (Oct. 30, 2023);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5-6 참조.

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AI의 표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83)

여러 논평자들은 AI 시스템을 블랙박스로 묘사했다.84) 즉,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는 프롬프트에 대해 "[AI]가 어떤 응답을 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85) AI 시스템의 개발자조차도 일반적으로 출력물을 예측하거나 특정 요소는 포함하고 다른 요소는 포함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86) 일부 논평자는 사용자가 생각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프롬프트의 사례를 제공했는데, 이 사례에서는 요청받은 일부 요소는 출력물에서 빠졌고 다른 요소가 삽입되었다.87)

또한 논평자들은 프롬프트가 종종 한 매체(예를 들어, 텍스트)로 AI 시스템에 입력되 는데, 출력물은 다른 매체(예를 들어, 시각 이미지, 비디오 또는 오디오 클립)로 생성된다 고 지적했다. 여러 논평자들은 한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이동하려면 해석이 필요하며,

⁸³⁾ Adobe Initial Comments at 5-6; 또한 Johan Brandstedt Initial Comments at 14, 29; EWC Initial Comments at 16 참조.

⁸⁴⁾ 예를 들어, Professional Photographers of Americ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7 (Oct. 30, 2023); SeaQVN,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63 (Sept. 13, 2023); IAC Inc. and Dotdash Media Inc., d/b/a Dotdash Meredith,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 (Oct. 30, 2023); Eric Bourdages,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 (Nov. 26, 2023); James Horvath, Repl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 (Sep. 13, 2023); Cooper Reid,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ug. 31, 2023) 참조.

⁸⁵⁾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5; 또한 Gabriel Moise,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ug. 31, 2023);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t 31-32; Vikas Hassija et al., Interpreting Black-Box Models: A Review on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16 COGNITIVE COMPUTATION 45, 47 (2024),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2559-023-10179-8 ("[블랙박 스 모델]의 내부 작동 방식은 쉽게 접근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는 점과 이러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모델의 작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참조.

⁸⁶⁾ EWC Initial Comments at 9 ("컴퓨터 과학에서 처리(계산)는 일관되게 블랙박스로 설명된다. AI 시스템의 운영자조차도 학습 과정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통제하지 도 못한다."); 또한 이 보고서 제II장 A. 참조.

⁸⁷⁾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8-9 & n.13 ("매우 정교한 프롬프트조차도... 여러 출력물을 생성한다(모든 출력물이 프롬프트에 완전히 또는 정확하게 반응하지는 않음)"고 언급하고 예시를 제공) 참조. 또한 Tonio Inverness,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5(Sept. 12, 2023)(초기 프롬프트의 결과가 "[논평자] 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조정하는 데 들어간 노력을 설명); UMG Initial Comments 76-77 참조.

AI가 그 해석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어 실행을 통제하는 것이 직접 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88) UMG는 사용자에게 "[아무리 자세하더라도] 텍스트 프롬프 트는 한 곡의 실제 음악을 완전히 정의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인기 있는 한 텍스트-음악 생성기를 강조했다.89)

일부는 생성 AI 시스템이 동일한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으로 무한하게 많은 수의 변형 물을 생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롬프트가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지는 관계가 없다.90) 커르노캔 센터(Kernochan Center)는 AI 시스템이 생성할 수 있는 "잠재적 출력물의 다양성을 포함하도록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이미 지(또는 그 밖의 저작물)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과 불편할 정도로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는 저작권법 제102조(b)에 따라 금지된다.91)

몇몇 논평자는 프롬프트에 대한 인간-지시 수정(human-directed revisions)이 출력물의 표현적 요소에 대한 더 큰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92) 한 가지 기술은

⁸⁸⁾ Johan Brandstedt Initial Comments 14, 19("글로 시작된 모든 것은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받을 자격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8(텍스트에 의한 묘사 는 해당 지시를 사용하여 제작된 그림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밀성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31 n.36("텍스트 지시를 훈련 데이터에서 생성된 이미지로 변환하면 출력물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고 언급).

⁸⁹⁾ Letter from UMG, Summary of Ex Parte Meeting on Apr. 22, 2024 Regarding the Office's AI Study, to U.S. Copyright Office 3 (Dec. 3, 2024) (내부 인용 생략); 또한 How do I make music with Udio?, UDIO, https://www.udio.com/guide (2025년 1월 17일 최종 방문) (프롬프 트가 출력물을 완전히 정의할 수 없는 이유는 "동일한 텍스트가 무한한 수의 가능한 오디오 트랙을 묘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참조.

⁹⁰⁾ 예를 들어,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8-9;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t 32 n.39 참조.

⁹¹⁾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8-9; 또한 17 U.S.C. § 102(b)(저작권 보호에서 "그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수록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을 제외) 참조.

⁹²⁾ 예를 들어, Evangelical Christian Publishers Association ("ECP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8 (Oct. 30, 2023) ("ECPA Initial Comments")("문제가 통제와 예측 가능성 중 하나라면, 최종 표현이 만족스 러울 때까지 반복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은 최종 표현에 이르는 각각의 반복이 비록 예측 불가능할 수 있더라도 저작자의 최종 저작물에 대한 궁극적인 통제를 보여준다.")를 참조. SCA Robotics,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 (Sept. 29, 2023) ("SCA Robotics Initial Comments")(저작권은 "출력된 저작물을 수락 및/또는 수정하는 데 대한 인간 당사자의 재량의 범위"를 포함하여, "플랫폼에서 출력된 예술적 표현에 대한 인간 사용자의 통제"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 International Center for Law & Economics,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I 시스템에 프롬프트를 제출한 다음, 생성된 초기 출력물을 기반으로 특정 용어를 추가, 제거 또는 대체하여 프롬프트를 수정하여 새로운 출력물을 생성하는 것이다. 사용 자는 수백 번 이상 수정하고 반복할 수 있다. 93) 결국 시스템은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출력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프롬프트를 다시 수정 하거나 노력을 포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논평자는 이 프로세스에 상당한 시간과 "증명 가능한 인간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94)

일부 논평자는 (비록 이 문구를 사용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채택에 의한 저작 (authorship by adoption)" 이론을 개진했다.95) 그들은 사용자가 생성 AI 시스템에서 생성된 출력물을 채택하기로 결정할 때 창의적인 판단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논평자는 "출력물이 원하는 표현과 일치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사용자는 "이미지가 화가의 비전과 일치할 때까지 계속해서 캔버스에 물감을 두드리는 예술가"와 다를 바 없다고 제안했다.96) 반면, 작가협회는 반복적인 프롬프트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룰렛 바퀴를 돌리는 것"에 비유했다.97) 이는 "사용자가 [비유적으로]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8 (Oct. 30, 2023)("AI 시스템은 여전히 인간의 지시와 판단이 필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사람이 초기 프롬프트나 프레이밍을 제공하고, AI 출력물의 반복적 개발에 대해 선택을 하고, 그 결과가 최종 저작물에 포함하기에 만족스럽다고 결정할 때, 그들은 근본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로 간주되는 창의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조.

⁹³⁾ IPO Initial Comments at 5 참조.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사용자는 더 복잡하고 구체적인 수십, 심지어 수백 개의 프롬프트를 반복할 수 있다."고 언급)

⁹⁴⁾ Superframe, LL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Sept. 6, 2023); 또한 AI and Metaverse Task Force of the Trust over IP Foundation,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4 (Oct. 30, 2023); Donaldson Callif Perez Initial Comments at 2 참조.

⁹⁵⁾ 이 이론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획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것을 채택하기로 하는 결정에서 저작을 찾을 것이다. Jane C. Ginsburg & Luke Ali Budiardjo, Authors and Machines, 34 BERKELEY TECH. L.J. 343 (2019). 이 주장은 퍼블릭 도메인의 그림을 기반으로 한 메조틴트 판화의 독창성을 평가한, Alfred Bell & Co. v. Catalda Fine Arts 판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1 F.2d 99, 104(2d Cir. 1951). 피고는 판화가 기존 그림의 단순한 사본일 뿐이고, 그러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Id. 판화가의 버전이 충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법원은 "모방가의 좋지 않은 시력이나 결함 있는 근육, 또는 천둥소리에 의한 쇼크로 충분히 구별 가능한 변형이 생길 수 있다"고 추측했다. Id. at 105. 법원은 "의도치 않게 그러한 변형을 발견한" 경우, "그 '저작자'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채택하고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Id.

⁹⁶⁾ ECPA Initial Comments at 7.

⁹⁷⁾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t 31-32.

워하는 출력물에 다다를 때까지 수십 번 바퀴를 돌리는 경우에" 그러한 활동이 사용자에 게 출력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98)

채택 이론에 따른 저작권에 대해 논의하면서 제인 긴스버그(Jane Ginsburg) 교수와 루크 버디아조(Luke Ali Budiardio) 교수는 "저작물에 물리적 형태를 부여하는 데 있어, 저작에의 참여를 대체하는 실행 후 채택(post-execution adoption)은 간접적이거나 의도치 않게 저작권법이 '잘못된' 저작자를 [지명]하는 것 외에도, 결과적으로 채택한 사람에게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라고 결론지었다.99) 대니얼 저베이스 (Daniel Gervais) 교수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비슷한 지적을 했다. "특정한 아이디어(예 를 들어, 멀리 나무가 보이는, 해질녘의 코끼리)를 찾고자 아프리카 사바나 그림이나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갤러리나 매장에 들어가서, 내 아이디어에 맞는 그림이나 사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저작자가 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100)

2. 분석

저작권청은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을 고려할 때 프롬프트만으로는 AI 시스템 사용자를 출력물의 저작자로 만드는 데 충분한 인간 통제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본질적으로 프롬프트는 보호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지시로서 기능 한다. 매우 자세한 프롬프트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표현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프롬프트가 AI 시스템이 출력물을 생성하는 데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인지를 통제하지 못한다.

공동 저작에 관한 사례들이 이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 사례들은 저작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통제의 양을 다룬다. 지시가 실행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침이 없는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101) 제3순회법원이 설명했듯이, 어떤 사람

⁹⁸⁾ Id.; 또한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9 ("한 번의 출력물을 선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창의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 Daniel Gervais Initial Comments at 6-7; Johan Brandstedt Initial Comments at 29.

⁹⁹⁾ Ginsburg & Budiardjo, 이 보고서 각주 95, at 370.

¹⁰⁰⁾ Daniel Gervais Initial Comments at 7.

¹⁰¹⁾ Pavdav, 886 F.2d at 1087; 예를 들어, CCNV, 490 U.S. at 737 ("일반적으로 저작자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당사자, 즉 아이디어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고정된 유형적인 표현으로

이 누군가에게 그의 표현을 실행하도록 고용한 경우에, 위탁자가 최종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지적인 수정이나 고도로 기술적인 향상이 필요하지 않은 옮겨 적기 또는 기계적인 필사"여야 한다.102) 생성 AI 시스템에 프롬프트 를 입력하는 것은 저작물을 창작하도록 수탁받은 아티스트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인간 대 인간 협업(human-to-human collaboration)에서 위탁자는 수탁자인 인간 아티스트의 기여를 감독, 지시 및 이해할 수 있다. 각 당사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아티스트가 유일한 저작자가 될 수도 있고, 출력물이 공동저작물 또는 업무상저작물이 될 수도 있다.103) 이론적으로는, 언젠가 AI 시스템이 사용자가 자신의 표현이 출력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많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시스템의 기여가 옮겨 적기 또는 기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104) 오늘날의 AI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증거는 현재로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프롬프트는 생성된 표현 요소를 결정하거나 시스템이 이를 출력물로 변환하는 방식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105)

프롬프트와 그 결과로 나온 출력물 사이의 격차는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고정된 표현으로 변환하는 데 대한 통제력이 결여되어 있고, 주로 시스템이 출력물의 표현적 요소를 결정하는 데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프롬프트는 사용자의 정신적 구상이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지만, 표현되는 방식을 통제하지는 않는다. 이는 프롬 프트를 내부적으로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생성 AI 시스템의 경우에 더욱 분명하다. 이 프로세스는 인간의 기여를, 그것이 아무리 세부적이더라도 다른 형태로 재구성한다.

다음 이미지는 저작권청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기 있는 AI 시스템에 프롬프트

변환한 사람을 말한다.") 참조.

¹⁰²⁾ Andrien, 927 F.2d 134-35.

¹⁰³⁾ 반면에, AI 시스템은 "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이나 업무상저작물을 제작할 수 없고, 자신의 출력물을 사용자의 기여와 병합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도 없으며,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7; Brief for Appellees, at 27, *Thaler* v. Perlmutter, No. 23-5233 (DC Cir. Mar. 6, 2024) 참조.

¹⁰⁴⁾ 이렇게 되면 창작적 표현에서의 AI의 효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될 것이다.

¹⁰⁵⁾ Geshwind, 734 F. Supp. 650-51("대리인 게쉬윈드(Geshwind)가 초상화의 세부 사항과 방향을 변경하기를 원했고 심지어 제안까지 했으며, 이를 준수하면 효과가 개선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를 창작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MGB Homes, 903 F.2d 1493; Payday, 886 F.2d 1087.

를 입력하여 생성한 것인데, 이 점을 잘 보여준다. 106)

프롬프트

출력물

전문 사진, 가운을 입고 선데이(Sunday) 신문을 읽으며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안경 쓴 고양이, 안개, 젖음, 폭풍우, 70mm, 영화적, 매우 정교한 나무, 영화적 조명, 복잡한, 선명한 초점, 중간 샷, (중앙 이미지 구성), (전문적인 색상 등급), ((밝고 부드러운 확산 조명)), 입체적 안개, HDR 4k, 8k, 사실적



이 프롬프트는 원하는 출력물의 주제, 장면 설정, 이미지 스타일, 주요 소재의 배치를 묘사한다. 결과로 나온 이미지는 이러한 지시 중 일부(예를 들어,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안경을 쓴 고양이)를 반영했지만, 다른 지침(예를 들어, 매우 정교한 나무)은 반영하지 않았다. 지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AI 시스템이 그 격차를 채웠다.

예를 들어, 프롬프트에는 고양이의 품종이나 색, 크기, 포즈, 얼굴 특징이나 표정의 속성, 또는 (입는다면) 가운 아래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프롬프트 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간의 손으로 신문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동일한 프롬프트가 여러 가지 다른 출력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통제력 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더 잘 보여준다.107) 인기 있는 시스템 중 하나가 웹사이트에서 설명하듯이, "아무리 자세하더라도... 동일한 텍스트는 무한한 수의 가능한" 출력물을 묘사한다.108) 이러한 상황에서, AI 시스템이라는 블랙박스는 사용자의 지시에 대해 다

¹⁰⁶⁾ 저작권청은 구글의 생성 AI 챗봇 제미나이(Gemini)를 사용하여 이 이미지를 생성했다. G EMINI, https://gemini.google.com/ (2025년 1월 17일 최종 방문).

¹⁰⁷⁾ 이 보고서 각주 32 참조. 저작권청에서 위의 프롬프트를 다시 실행했더니 폭풍우 속의 고양이가 담긴 상당히 다른 이미지가 나왔다.

¹⁰⁸⁾ How do I make music with Udio?, UDIO, https://www.udio.com/guide(강조 생략) (2025년 1월 17일 최종 방문).

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수정해도 이 분석은 달라지지 않으며,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을 주장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첫째, 프롬프트를 수정하여 저작물을 창작 하는 데 드는 시간, 비용 또는 노력은 중요하지 않다. 저작권은 독창적인 저작을 보호하 지, 노고나 "이마의 땀"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109) 둘째, 수정된 프롬프트를 입력하 는 것은 단일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과 작동 방식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프롬프트를 여러 번 수정하고 제출함으로써 사용자는 주사위를 "다시 굴려" 그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출력물을 시스템이 생성하게 하지만,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 정도를 바꾸지는 못한다.110) 프롬프트를 아무리 많이 수정하고 다시 제출해도 최종 출력물은 프롬프트에 포함된 표현의 저작이라기보다는 AI 시스템의 해석을 사용자가 수용한 것일 뿐이다.

일부 논평자들은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그림이나 고정 카메라로 찍은 자연 사진에 비유했는데, 이 경우 저작자가 페인트가 캔버스에 닿는 위치나 야생 동물이 프레 임 안으로 들어오는 시점을 통제하지 않더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111) 그러나 이들 저작물은 인간 저작자가 아이디어의 실행과 그 결과로 나오는 저작물의 표현적 요소의 결정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AI 생성 자료와 차이가 있다. 잭슨 폴록의 창작 과정은 어느 저작물에 대한 그의 비전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색상 선택, 레이어 수, 질감의 깊이, 전체 구성에 대한 각 추가 사항의 배치를 통제했으며, 이러한 각각의 선택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사용했다. 자연 사진의 경우 모든 저작권 보호는 주로 사진작가가 선택한 카메라 설정과 각도, 위치, 속도 및 노출, 그리고 아마 사진의 후반 편집에 따라 결정된다.112) 한 논평자가 설명 했듯이. "일부 무작위적 요소가

¹⁰⁹⁾ Feist, 499 U.S. at 352.

¹¹⁰⁾ 예를 들어,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8 참조("각 프롬프트가 새로 주사위를 굴리면 '지시'가 암시하는 의지의 우위를 분별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것을 객관적인 '의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¹¹¹⁾ 예를 들어, Tim Boucher,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8 (Oct. 26, 2023); Christa Laser Initial Comments at 4; MPA Initial Comments at 47-50; Pamela Samuelson et al. Initial Comments at 4 참조.

¹¹²⁾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다른 저작물과 마차가지로 자연 사진은 독창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의 창작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

저작임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추정되는 저작자는 소스 자료의 프로그램 처리를 제한하 거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113) 문제는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라기보다 인간의 통제 정도이다.114)

또한 저작권청은 채택에 의한 저작은 그 자체로 AI가 생성한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논평자들이 지적했듯이, 기계에 지침을 제공하고 어느 출력물을 선택하는 것은 저작과는 다르다.115) 통제되지 않은 옵션 중에서 어느 AI 생성 출력물을 선택하는 것은 페인트를 후두둑 떨어트리는 것보다 "살아있는 정원"을 가꾸는 것에 더 유사하다.116) 커르노캔 센터가 관찰했듯이, 그러한 시스템에서 생성된 "제공된 옵션 중에서의 선택"은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한 저작으로 간주될 수 없다. "어느 하나의 출력물의 선택, 그 자체는 창작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117)

프롬프트가 AI가 생성한 출력물에서 표현적 요소를 충분히 통제하여 인간 저작을 반영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표현적 요소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력이 향상되면 다른 결론이 필요할 수 있다.118) 반면에 자동화와 최적화를 향상시키. 는 기술의 발전은 현재의 우리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성 AI 시스템이

¹¹³⁾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5.

¹¹⁴⁾ Digital Media Licensing Association ("DML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6 (Oct. 30, 2023) ("DMLA Initial Comments")("AI 결과물의 예측 가능성은 인간 사용자의 프롬프트의 결과로서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구체적인 표현적 출력물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 저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5; MPA Initial Comments at 45-46 ("예측 가능성 및 통제의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 일정한 경우에 적절할 수 있음"을 인정);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5 (Oct. 30, 2023) ("INTA Initial Comments") (어느 프로그램이 "이미지를 각 픽셀을 무작위로 선택한 색상으로 채움으로써 생성하는 경우에, 그 결과로 나오는 저작물은 보호되는 저작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인정);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t 31 참조.

¹¹⁵⁾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t 31-32; Daniel Gervais Initial Comments at 6-7;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8.

¹¹⁶⁾ Kelley v. Chicago Park Dist., 635 F.3d 290, 304 (7th Cir. 2011); 또한 COMPENDIUM (THIRD) § 306; Thaler, 687 F. Supp.3d at 146(저작권 보호의 "핵심"은 "인간이 문제의 저작물 에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창의적 통제력을 갖는 것"이라고 판시) 참조.

¹¹⁷⁾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9.

¹¹⁸⁾ Authors Alliance Initial Comments at 19("생성 AI 시스템과 창작자가 이를 사용하는 방식이 모두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AI가 생성하거나 AI가 지원하는 콘텐츠에 대한 인간 저작 요건의 적용도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들 도구가 제작자가 출력물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되는 경우에 이러한 도구로 창작된 저작물은 잠재적으로 인간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다.").

자동화된 프롬프트 최적화를 통합하거나 더욱 개선하게 되면 사용자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E. 표현적 입력

위에서 논의한 대로, AI 시스템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 이들 매체의 조합 형태로 입력을 받는다. 도구, 설정 또는 프롬프트를 통하여, 일부 시스템은 입력을 실질적으로 출력물의 일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한 논평자는 인간 저작 자가 일러스트레이션 원본을 만들고 그 저작물을 AI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시스템에 "[그] 이미지의 [그] 색상 또는 레이어 부분을 수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 다.119) 또 다른 논평자는 AI 시스템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바꾸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다.120) 예를 들어. 1인칭으로 작성된 스토리를 업로드하고 시스 템에 이것을 3인칭 관점으로 변환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표현적 입력은 프롬프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전달하는 입력과는 다르다. 논평자들이 지적했듯이, 인간-저작 입력물(humanauthored inputs)이 출력물에 반영되는 경우. 그것은 단순한 지적인 구상 이상을 기여 한다. 한 논평자는 "자신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미디어 파일을 AI 시스템에 입력하는 인간 저작자가, 인간 사용자의 기여의 결과로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특정한 표현적 출력물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주장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121) 다른 논평자는 사용자가 AI 시스템에 "사용자가 창작하거나 지정한 전통적인 저작물"과 같은 입력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구체화된 시작점은 출력물의 '자율성'을 제한"하

¹¹⁹⁾ DMLA Initial Comments at 16.

¹²⁰⁾ Pearson,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7 (Oct. 30, 2023) ("Pearson Initial Comments").

¹²¹⁾ DMLA Initial Comments at 16; Pearson Initial Comments at 7-8("저작권은 인간 행위의 산물인 자료만 보호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입력 자체가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 구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함"이라고 언급);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MP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0 (Oct. 30, 2023)("기존 저작물을 기반으로 AI를 사용하여 개선, 재구성 또는 수정하거나 새로운 이차적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는 일부 상황에서 결과로 나온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 참조.

고, 그러므로 "알려지지 않은 시작점에 프롬프트"를 단순히 적용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인간 개입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122)

예를 들어, 등록을 위해 저작권청에 제출된 다음 저작물에서 저작자는 손으로 드로잉 을 그려서 그것을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와 함께 입력으로 사용했다.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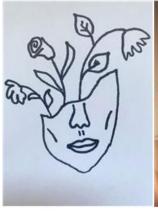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출력물을 생성했다.

프롬프트

입력

춬력

"젊은 사이보그 여성 (((장미))) 머리에서 꽃이 피어나는 모습, 포토리얼리즘, 영화 적 조명, 극사실주의, 8K, 극히 디테일 함."





드로잉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고, 마스크의 유곽선, 마스크 모양에서의 코, 입, 광대뼈의 위치, 줄기와 장미봉오리의 배열, 네 개의 잎의 모양과 위치 등 드로잉의 표현적 요소는 출력물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신청인은 최종 저작물에 나타나는 "모든 비인간 표현(non-human expression)," 예를 들어 코, 입술, 그리고 장미꽃봉오리의 사실적이고 3차원적인 표현과 함께 배경의 조명 및 그림자에 대해 저작권 청구를 부인했다.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검토한 후,

¹²²⁾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5-6; MPA Initial Comments at 50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입력물" 등 "인간 창작자가 AI 도구에 제공하는 자료"는 "궁극적인 저작물과 분리할 수 없는 지적이고 창의적인 기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 참조.

¹²³⁾ Rose Enigma, VAu001528922 (Mar. 21, 2023). 아티스트 크리스 카슈태노바(Kris Kashtanova) 의 이 저작물 창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rtfolio: Rose Enigma, KRIS KASHTANOVA, https://www.kris.art/portfolio-2/rose-enigma(2025년 1월 17일 최 종 방문).

저작권청은 이 저작물을 "등록은 기탁물에서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청구에서 제외된 비인간 표현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변경되지 않은 인간 회화 저작물에 한함"이라는 주석과 함께 등록했다.124)

이 사례에서 예시된 대로, 인간이 자신의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을 입력하 고 그 저작물이 출력물에서 인식되는 경우, 그는 최소한 출력물의 그 부분에 대한 저작자 가 될 것이다. 그들의 창작적 표현은 이차적저작물에서의 그것과 유사한 범위로 저작권 으로 보호될 것이다. 이차적저작물과 같은 보호는 후속 저작자가 부가한 자료로 제한되 는 것처럼,125) 이러한 유형의 AI 생성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식 가능한 인간 표현에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AI 생성 요소 그 차제에까지는 미치지 않더라도, 인간이 저작하고 AI가 생성한 자료(human-authored and AI-generated material)의 선택, 조정 및 배열에는 적용될 수 있다.

F. AI 생성 콘텐츠의 수정 또는 배열

AI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은 종종 초기 또는 중간 단계이며, 인간 저작이 최종 제품에 부가될 수 있다. AI 등록 지침에서 설명한 대로, "인간은 AI 생성 자료를 충분히 창의 적인 방식으로 선택하거나 배열하여 '결과로 나오는 저작물 전체가 독창적인 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다."126) 인간은 또한 "그 수정 사항이 저작권 보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¹²⁴⁾ Rose Enigma, VAu001528922 (Mar. 21, 2023). 이와 대조적으로, 저작권청 재심사위원회는 인간 저작자의 사진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AI 시스템이 생성한 이미지의 등록 거절 결정을 인용했다. U.S. Copyright Office Review Board, Decision Affirming Refusal of Registration of Suryast at 1 (Dec. 11, 2023), https://copyright.gov/rulings-filings/review-board/docs /SURYAST.pdf. 신청인은 해당 이미지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해 훈련된 "RAGHAV 인공지능 페인팅 앱"("RAGHAV")에 의해. 〈별이 빛나는 밖〉의 스타일을 사진에 적용하 라는 지시를 받아 생성되었다고 밝혔다. Id. at 2. 위원회는 신청인이 "RAGHAV의 출력물 생성에 대한 충분한 창작적 통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이미지는 "저작권 청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인간 저작을 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Id. at 3, 7-8. Rose Enigma 사건과 달리 그 출력물은 신청인의 저작권으로 보호될만한 저작물 입력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다. Id. at 7-8 참조.

¹²⁵⁾ H.R. REP. NO. 94-1476, at 57; S. REP. NO. 94-473, at 55 ("'새로운 버전'에 대한 저작권은 후속 저작자가 부가한 자료에만 적용되며, 기존 자료의 저작권 또는 퍼블릭 도메인 상태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¹²⁶⁾ AI Registration Guidance at 16192.

정도로, 본래 AI 기술로 생성된 자료를 수정할 수 있다."127)

여러 논평자가 지적했듯이, 인간 저작자는 AI 생성 자료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선택, 조정, 배열하는 경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128) 이를 통해 (비록 AI 생성 자료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출력물 전체에 대한 보호가 부여될 수 있다.129) 등록 신청에 서 비교적 흔한 시나리오는 인간-저작 텍스트와 AI-생성 이미지를 결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초기 사례에서 저작권청은 만화책에서 AI-생성 이미지와 인간-저작 텍스 트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이 편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작권청은 저작물 전체에 걸쳐 이러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편집한 것이 Feist 판례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만큼 충분한 창작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 한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청은 이 저작물이 저작물을 구성하는 이미지 선택과 저작물의 각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배치 및 배열과 관련하여 창작적인 선택의 산물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구성하는 텍스트와 시각적 요소의 전반적인 선택, 조정 및 배열에 대한 [신청인의] 저작을 보호한 다.130)

이후로도 여러 건의 유사한 등록이 이루어졌다.131)

많은 논평자는 또한 새로운 저작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AI 생성 출력물을 편집, 각색, 향상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 해당 출력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132)

¹²⁷⁾ *Id.*, 16192–93.

¹²⁸⁾ 예를 들어, BLIP Initial Comments at 20; Center for Art Law,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9 (Oct. 26, 2023); Cisco Systems, In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7 (Oct. 30, 2023) ("Cisco Initial Comments"); IPO Initial Comments at 4-6; Peer Music-Boomy Joint Initial Comments at 12 참조.

¹²⁹⁾ Feist, 499 U.S. at 348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저작자의 독창적인 저작물 구성 요소에만 미칠 수 있음"을 언급).

¹³⁰⁾ U.S. Copyright Office, Cancellation Decision re: Zarya of the Dawn (VAu001480196) at 5 (Feb. 21, 2023), https://www.copyright.gov/docs/zarya-of-the-dawn.pdf.

¹³¹⁾ 이 보고서 각주 15, 123쪽 참조 .

¹³²⁾ Apple Initial Comments at 1; ASCAP Initial Comments at 49;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t 32; BLIP Initial Comments at 25; Cisco Initial Comments at 7; Graphic Artists Guild, In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그들은 이러한 수정 사항은 "기존 저작물에 대한 편집 또는 그 밖의 변경 사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33) 이러한 저작물은 기술적으로 "이차 적저작물"이 될 수 없지만,134) 이차적 저작(derivative authorship)은 독창성을 확인하 는 데에 유용한 비유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지만 저작권은 인간 저작자가 기여한 자료에 는 미치지만 그 바탕이 되는 AI 생성 콘텐츠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135)

인기 있는 많은 AI 플랫폼들은 AI 생성 콘텐츠를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선택, 편집 및 조정하도록 권장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미드저니는 "Vary Region and Remix Prompting"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수정된 프롬프트로 이미지의 일부 영역을 선택하고 재생성할 수 있다. 웹사이트의 "시작하기(Getting Started)" 섹션에서 미드저니는 이러한 도구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다음 이미지를 제공하다.136)



(1) 후보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생성: 초원 좁은길 석판화



(2) 이미지를 선택하고 확대



선택하기 위해 손으로 그리기 에디팅 도구 사용

(3) 영역을



(4) 후보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생성: 초원 개울 석판화



(5) 이미지를 선택하고 확대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9 (Oct. 30, 2023) ("Graphic Artists Guild Initial Comments"); OpenAI,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5 (Oct. 30, 2023).

¹³³⁾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6.

¹³⁴⁾ 이차적저작물은 "하나 이상의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저작물"이다. 17 USC § 101("이차적저작 물" 정의). 전적으로 AI가 생성한 출력물은 "저작물"이 되는 데 필요한 인가 저작을 포함하지 않았으 므로, 그 수정된 버전은 이 정의에 따라 이차적저작물이 되지 못한다. H.R. REP. NO. 94-1476, at 57; S. REP. NO. 94-473, at 55("'기존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102조에 규정된 저작권의 일반적 인 보호대상에 속해야 하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또는 보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

¹³⁵⁾ H.R. REP. NO. 94-1476, at 57; S. REP. NO. 94-473, at 55 참조.

¹³⁶⁾ Vary Region + Remix, MIDJOURNEY, https://docs.midjourney.com/docs/vary-region -remix (2025년 1월 17일 최종 방문). 각 이미지 아래의 텍스트 설명은 저작권청에서 추가했다.

이 이미지는 에디팅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더 수정되었다.







다른 생성 AI 시스템도 비슷하게 사용자가 최종 출력물을 선택, 배열하고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137)

프롬프트만인 것과는 달리. 이러한 도구는 사용자가 개별적인 창작적 요소의 선택과 배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수정이 Feist 판결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독창성 기주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된다.138) 그렇다면, 그 출력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더 큰 인간 저작 저작물에 AI 생성 콘텐츠의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그 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39)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특수 효과나 배경 아트워크가 포함된 영화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그 AI 효과와 아트워크 개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¹³⁷⁾ 예를 들어 OpenAI의 ChatGPT에는 "캔버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문서나 코드를 작성하는 동안 모델과 "협업"할 수 있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AI 생성 텍스트를 편집하고, 모델이 집중할 영역을 강조 표시하고, 내장된 도구를 사용하여 인라인 제안, 길이 조정 및 읽기 수준 변경을 요청하고, 이루어질 특정 편집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Introducing Canvas, OPENAI (Oct. 3, 2024), https://openai.com/index/intro ducing-canvas/ 참조.

¹³⁸⁾ 단지 두세 가지 요소만 선택하고, 조정하고, 배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에 충분하 지 않다. COMPENDIUM (THIRD) § 312.2 참조 ("저작권청은 일반적으로 두세 가지 요소만 포함된 편집물은 필연적으로 선택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다.") (H.R. REP. NO. 94-1476, at 122 인용(저작물이 "단어와 음악으로 구성된 저작물, 삽화나 서문과 함께 발행된 저작물, 3편의 단막극"의 경우처럼 "비교적 적은 수의 개별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명시)).

¹³⁹⁾ AI Registration Guidance at 16192-93. 참조.

제!!!장 국제적 접근

다른 국가들도 AI 생성 자료를 포함하는 저작물까지 저작권 보호를 확대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룬 국가들은 저작권은 인간 저작을 요구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에 생성 AI와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하면서,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으며,140) "인간이 표현 형식에 창의적으로 기여하지 않으면 AI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141) 한국의 가이드는 "인간이 AI 출력물에 수정, 추가 또는 삭제 등 *추가 작업*을 수행한 경우 그러한 변경을 한 부분만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142) 또한 저작자가 AI 출력물 을 창작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한 경우 그 저작물을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언급 했다.143)

일본에서는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위가 2024년 5월에 일본의 AI와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 이해(General Understanding on AI and Copyright in Japan)라는 제목으로 가이드라인의 요약을 발표했다.144) 이 가이드라인은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¹⁴⁰⁾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orea Copyright Comm'n, A Guide on Generative AI and Copyright, at 40 (2023), https://www.copyright.or.kr/eng/doc/etc _pdf/Guide_on_Generative_AI_and_Copyright.pdf.

¹⁴¹⁾ Id. at 41.

¹⁴²⁾ *Id.*

¹⁴³⁾ Id. "2023년 12월, AI 생성 영화와 이미지의 인간 편집본"을 바탕으로 한 AI 생성 영화에 대해 저작권 등록이 허락되었다고 보도되었다. Edward Lee, South Korea grants copyright to AI generated work, 'AI Suro's Wife' film as work edited by humans, CHATGPT IS EATING THE WORLD (Jan. 8, 2024), https://chatgptiseatingtheworld.com/2024/01/08/southkorea-grants-copyright-to-ai-generated-work-ai-suros-wife-film-as-work-edited-by -humans/.

¹⁴⁴⁾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위 산하 법률소위원회, General Understanding on AI and Copyright in Japan (May 2024), https://www.bunka.go.jp/english/policy/copyright/pdf/94055801 01.pdf.

가능성은 다음 요소에 따라 사례별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1) AI 사용자의 지시와 입력의 양과 내용. (2) 생성 시도 횟수. (3) 복수의 출력물 중에서의 선택. 그리고 (4) AI 생성 저작물에 대한 후속적인 인간의 추가 및 수정.145)

중국에서는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2023년,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간의 저작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해, AI 생성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의 주장을 평가했다.146) 법원은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사용하여 작성된 이미지가 중국 저작권법상 보호되며,147) 이미지를 창작하기 위해 AI를 사용한 사람이 저작자라고 판결했다.148) 이 법원에 따르면 150개 이상의 프롬프트를 선택하고 이후의 조정 및 수정을 결합한 것은 그 이미지가 저작자의 개인적 표현을 반영하는 그의 "지적 성과"의 결과임을 보여준다.149)

유럽연합에서 대다수 회원국은, 생성 AI와 저작권 사이의 관계에 대한 2024년 정책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현재의 저작권 원칙이 AI 출력물의 저작권 적격성을 충분히 다루 고 있으며 새롭거나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150) 회원국은

¹⁴⁵⁾ Id. at 17.

¹⁴⁶⁾ Li Mou Mou Su Liu Mou Mou Qin Hai Zuo Pin Shu Ming Quan, Xin Xi Wang Luo Chuan Bo Quan Jiu Fen An (李某某诉刘某某侵害作品署名权, 信息网络传播权纠纷案) [Li v. Liu, 성명표시권 및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 분쟁], 14쪽(베이징 인터넷 법원, 2023년 11월 27일), https://english.bjinternetcourt.gov.cn/pdf/BeijingInternetCourtCivilJudgment11 2792023.pdf. 이 보고서의 페이지 번호는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서 온라인으로 공개한 영어 번역본 을 기반으로 한다.

¹⁴⁷⁾ Id. at 10-14; 또한 중국 저작권법(2010년 2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공포, 2010년 4월 1일 발효) 제3조 참조.

¹⁴⁸⁾ 이 보고서 각주 146, 14-15 참조. 이 판결은 중국 사법 관행에 따른 선례는 아니지만, 중국법에 따라 AI 생성 예술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대한 정책과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각주 146, 11-12쪽 참조. 중국은 최근 AI 생성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대한 법적 명확화 를 검토했다. 중국의 제안된 AI 법의 예비 초안은 AI를 사용하여 생성된 저작물이 중국 저작권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가 콘텐츠의 최종 표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해당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Zhong Hua Ren Min Gong He Guo Ren Gong Zhi Neng Fa (Xue Zhe Jian Yi Gao) (中华人民共和国人工智能法 (学者建议稿))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Artificial Intelligence (Scholar's Draft Proposal)], art. 36, Official WeChat account of the Digi. Rule of Law Inst. at East China Univ. of Political Sci. and L., translated by Center for Sec. and Emerging Tech., https://cset.georgetown. edu/wp-content/uploads/t0592_china_ai_law_draft_EN.pdf.

¹⁴⁹⁾ 이 보고서 각주 146, 11-12쪽 참조.

¹⁵⁰⁾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Policy questionnai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Revised Presidency

또한 AI 생성 콘텐츠가 "창작 과정에 인간의 투입이 상당할 때에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공유했다.151) 이러한 합의는 순수한 AI 생성 저작물은 저작권으 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해로 확대되었는데, 자연인만이 저작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 이다.152) 비슷한 논거에 따라, 2024년 (체코공화국이라고 알려진) 체코의 한 법원은 AI 도구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153)

영국에서는 생성 AI 기술이 발전되기 이전의 법에서, "저작물의 인간 저작자가 없는 상황에서 컴퓨터로 생성된" 저작물을 보호한다.154) 이 법은 저작자를 "저작물 창작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155) 2021년, 영국 지식재산권청("UKIPO")은 생성 AI의 발전에 따라 이 법률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공개 의견을 구했다. 이 조항을 AI에 적용하는 판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156) UKIPO는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거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혁신 및 AI 사용을 촉진하거나 억제할지는 불분명하 다."고 결론지었다.157) UKIPO는 이 법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향후 변경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158) 그 이후 영국 정부는 프롬프트, 컴퓨터 생성 저작물 및 AI 모델의 출력물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저작권과 AI에 대한 새로운 협의를 시작했다.159)

summary of the Member States contributions, at 16-18 (Dec. 20, 2024), https://data. 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6710-2024-REV-1/en/pdf.

¹⁵¹⁾ Id. at 16.

¹⁵²⁾ Id. at 15.

¹⁵³⁾ Tomáš Ščerba & Jaroslav Fořt, The first Czech case on generative AI, TECH.'S LEGAL EDGE (Apr. 4, 2024), https://www.technologyslegaledge.com/2024/04/the-first-czech -case-on-generative-ai/; Alessandro Cerri, Czech court finds that AI tool DALL-E cannot be the author of a copyright work, THE IPKAT (Apr. 15, 2024), https://ipkitten.blog spot.com/2024/04/czech-court-finds-that-ai-tool-dall-e.html 참조.

¹⁵⁴⁾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 X, I, §§ 178, 9(3) (UK), https://www. legislation.gov.uk/ukpga/1988/48/data.pdf. 보호는 저작물이 창작된 부터 50년간 지속된다. *Id.*, c. I, § 12(7).

¹⁵⁵⁾ *Id.*, c. I, § 9(3).

¹⁵⁶⁾ UKIPO, Consultation outcome of the Intell. Prop. Offi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and patents, ¶ 22 (June 28, 2022), https://www.gov. uk/government/consultations/artificial-intelligence-and-ip-copyright-and-patents/o utcome/artificial-intelligence-and-intellectual-property-copyright-and-patents-gove rnment-response-to-consultation#copyright-in-computer-generated-works.

¹⁵⁷⁾ *Id.* ¶ 29.

¹⁵⁸⁾ *Id.* ¶¶ 29-30.

¹⁵⁹⁾ UKIPO, Open Consultation of the Intell. Prop. Office on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ec. 17, 2024),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opyright

홍콩, 160) 인도, 161) 뉴질랜드162) 등 여러 과거 및 현재 영연방 국가가 유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들에서도 이 조항이 AI 생성 저작물에 적용될지 여부와 그 방식은 분명하지 않다.

캐나다에서는 2021년 저작권법 검토에서 AI 생성 저작물의 저작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163) 검토를 주도한 산업:과학기술상설위원회는 입법을 통 해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캐나다 의회는 아직 권고안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164) 2023년에 캐나다는 협의 과정을 재개했고, 의견제출 기간은 2024년 1월에 마감되었다.165)

비슷하게 호주에서는 인공지능 수용을 위한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Adopting Artificial Intelligence)가 개최한 2024년 협의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AI 의 도움이나 보강을 받아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에 부여되는 저작권(이 있다면) 보호의 범위"에 관하여 호주 저작권법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166) 그러

⁻and-artificial-intelligence/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bcopyright-and-arti ficial-intelligence 참조.

¹⁶⁰⁾ 홍콩 저작권 조례 제11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컴퓨터로 생성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의 제작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Copyright Ordinance, (2019) Cap. 528, § 11(3) (H.K.).

¹⁶¹⁾ 인도 저작권법 제2조(d)(vi)항은 저작자를 "컴퓨터로 생성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물이 창작되도록 만든 사람"으로 정의한다. The Copyright Act, 1957, § 2(d)(vi). 2020년. 인도 저작권청은 이 조항을 인용하지 않고 이 보고서 각주 124에 설명된 AI 생성 저작물을 등록하면서 AI 도구를 공동 저작자로 나열했지만, 1년 후 등록 철회 통지를 발행했다. Sukanya Sarkar, Exclusive: Indian Copyright Office issues withdrawal notice to AI co-author, MANAGINGIP (Dec. 13, 2021), https://www.managingip.com/article/2a5d0jj2zjo7fajs jwwlc/exclusive-indian-copyright-office-issues-withdrawal-notice-to-ai-co-author.

¹⁶²⁾ 뉴질랜드 저작권법 제5조(2)항(a)에서는 저작자를 "컴퓨터로 생성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저 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의 제작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Copyright Act 1994, s 5(2)(a).

¹⁶³⁾ Innovation, Sci. and Econ. Dev. Canada ("ISED Canada"), A Consultation on a Modern Copyright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at 12 (2021), https://ised-isde.canada.ca/site/strategic-policy-sector/sites/default/files/attachments /2022/ConsultationPaperAIEN.pdf.

¹⁶⁴⁾ Id. at 13.

^{165) 165} ISED Canada, Consultation on Copyright in the Ag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2021), https://ised-isde.canada.ca/site/strategic-policy-sector/en/marketplace-frame work-policy/consultation-copyright-age-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

¹⁶⁶⁾ Select Committee on Adopting Artificial Intelligence, Parliament of Australia (Final Report, November 2024) ¶ 4.166, https://parlinfo.aph.gov.au/parlInfo/download/com

나 특별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어떤 조치도 제안하지 않았다.

인간 저작의 필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까지 기존 법률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견해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하다. 저작권 보호 가능성의 기준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저작 권청은 해외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른 국가의 진화하는 접근 방식이 궁극적으 로 우리와 어떻게 겹치거나 다를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mittees/reportsen/RB000470/toc_pdf/SelectCommitteeonAdoptingArtificialIntelligen ce(AI).pdf.

제IV장 입법적 대응에 대한 주장

A. 인센티브 제공

논평자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의 가치를 강조했 다.167) 그러나 그들은 헌법상 저작권 조항에 대한 해석과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의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는 서로 의견이 달랐다.

AI 생성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지지하는 논평자들은 그것이 더 많은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문화와 지식의 진보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 다.168) 그들은 저작권 조항을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도록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169) 예를 들어, 한 논평자는 이 해석이, "의회에 이 권한을 부여한 정신이 모든 형태의 혁신과 예술적 표현을 계속해서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과

¹⁶⁷⁾ 예를 들어, A2IM-RIAA Joint Initial Comments at 4 n.11 (Thaler v. Perlmutter, No. 22cv-1564, 2023 WL 5333236, at *4 (D.D.C. Aug. 18, 2023 인용)); Copyright Alliance,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5 (Oct. 30, 2023) ("Copyright Alliance Initial Comments"); DMLA Initial Comments at 17-18; Graphic Artists Guild Initial Comments at 1; Internet Archive,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0-11 (Oct. 30, 2023) ("Internet Archive Initial Comments") 참조.

¹⁶⁸⁾ 예를 들어, Dallas Joder, Repl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 (Nov. 30, 2023) ("Dallas Joder Reply Comments"); Peer Music-Boomy Joint Initial Comments at 14.

¹⁶⁹⁾ AI 기업인 BigBear.ai는 헌법이 "AI 생성 자료에 대한 보호를 금지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를 이용할 가능성은 "[그것이] 생성되는 방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BigBear. ai Holdings, In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5 (Oct. 18, 2023); 또한 Ryan Abbott,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6 (Oct. 21, 2023) ("Ryan Abbott Initial Comments") ("헌법과 저작권법의 역사와 목적은 모두 AI 생성 저작물의 보호를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공익이 저작자에게 직접적인 어떠한 이익보다도 우선 하기 때문이다."); Peer Music-Boomy Joint Initial Comments at 15 (우리는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출력물의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창작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저작권의 헌법적 목적을 촉진 한다고 믿지 않는다."); BLIP Initial Comments at 25 ("저작권법은 AI 생성 자료를 보호하는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참조.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70)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힌 대부분의 논평자는 저작권 조항이 인간 저작을 요구한다는 저작권청의 견해에 동의했다.171) 그들은 AI 생성 자료는 충분한 인간의 참여가 있는 경우에 또는 AI가 인간의 표현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다는 저작권청의 결론을 지지했다.172)

이 논평자들은 저작권 조항이 특히 *저작자에게* 법적,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진보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173) 그들은 대조적으로 AI 시스템은 "창작

¹⁷⁰⁾ Dallas Joder Reply Comments at 3; 또한 Duane Valz,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 (Oct. 18, 2023) ("헌법 입안자들은 자연인 이외의 주체가 저작자 또는 발명가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는 의회가 그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새로운 유형의 사람 또는 단체가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참조.

¹⁷¹⁾ A2IM-RIAA Joint Initial Comments at 34-35;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t 34; Anonymous AI Technical Writer, Repl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5 (Dec. 6, 2023) ("Anonymous AI Technical Writer Reply Comments"); Copyright Alliance Initial Comments at 96-97; DMLA Initial Comments at 17-18; Graphic Artists Guild Initial Comments at 20; David Newhoff,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 (Oct. 17, 2023) ("David Newhoff Initial Comments"); UMG Initial Comments at 81-82 참조.

¹⁷²⁾ American Bar Association, Intellectual Property Law Section ("ABA-IPL"),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4 (Oct. 30, 2023) ("ABA-IPL Initial Comments");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AIPL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1 (Oct. 30, 2023) ("AIPLA Initial Comments"); Johan Brandstedt Initial Comments at 30; ACT | The App Association ("App Association"),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6-7 (Oct. 30, 2023) ("App Association Initial Comments");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7 (Oct. 30, 2023); IPO Initial Comments at 7; Recording Academy Initial Comments at 11; Scenario Initial Comments at 16-17 참조.

¹⁷³⁾ A2IM-RIAA Joint Initial Comments at 4 (Thaler v. Perlmutter, No. 22-cv-1564, 2023 WL 5333236, at *4 (D.D.C. Aug. 18, 2023) 인용), 35; ASCAP Initial Comments at 50; Authors Alliance Initial Comments at 18–19; DMLA Initial Comments at 17–18; Graphic Artists Guild Initial Comments at 1, 20; Daniel Gervais Initial Comments at 7; Fight for the Future,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8 (Oct. 30, 2023) ("Fight for the Future Initial Comments"); Internet Archive Initial Comments at 10-11;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10-11; David Newhoff Initial Comments at 3; NMPA Initial Comments at 29-30; Seth Polansky Initial Comments at 29; Copyright Alliance Initial Comments at 5 참조.

에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은" 무생물이라고 지적했다.174) 한 논평자가 말했듯이 "AI는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프로그래밍된 작업을 수행한다."175)

몇몇 논평자들은 AI 회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존 법률에 따라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176) 일부는 저작권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AI 기술의 기하급수적

¹⁷⁴⁾ Google LL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2 (Oct. 30, 2023); 또한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CCI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9 (Oct. 30, 2023) ("CCIA Initial Comments") ("컴퓨터에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다. 단지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저작권과 특허와 같은 법적인 인센티브와 선두 주자의 이점(first-mover advantages) 및 상업적 필요를 충족하려는 욕구와 같은 비법적인 인센티브 등 모든 기존의 인센티브가 생성 AI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AIPLA Initial Comments at 11; NMPA Initial Comments at 29 ("정책의 문제로서 저작권법은 인간의 표현을 나타내지 않는 순수한 AI 생성 콘텐츠를 결코 보호해서는 안 된다. 기존 저작권법은 '마음의 창조적 힘에 기초한' '지적 노동의 결실'에 대한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창의성에 합당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Xiyin Tang et al.,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0-11 (Oct. 30, 2023) ("Xiyin Tang et al. Initial Comments")("인공지능 자체는 창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므로 인센티브가 필요 없으며, 저작물을 생성하려면 인간의 프롬프트 입력만 필요하다. 저작권이라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유일한 다른 당사자는 AI 시스템 사용자일 것이다. 그러나 AI 기술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만드는 데는 대부분의 인간이 창작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인간은 저작물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단지 완성된 제품을 모방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위험 부담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들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AI 생성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각 기사를 제작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모두 사실상 ()이므로 제작자는 법적 보호가 없어도 모방자와 경쟁할 수 있다." (인용 생략)) 참조.

¹⁷⁵⁾ Pamela Samuelson et al. Initial Comments at 3. See also A2IM-RIAA Joint Initial Comments at 4 (Thaler v. Perlmutter, No. 22-cv-1564, 2023 WL 5333236, at *4 (D.D.C. Aug. 18, 2023));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AAP"),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1-32 (Oct. 30, 2023) ("AAP Initial Comments"); CCIA Initial Comments at 19; Internet Archive Initial Comments at 10-11("저작권 보호를 확대하는 데 대한 전통적인 정책 기반은 일반적으로 AI 생성 자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이 AI 생성 저작물의 제작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헌법적 기초는 그 목표가 인간 저작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그러나 Dallas Joder Reply Comments at 4 (자기 인식 AI(self-aware AI)가 언젠가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적 재산(IP)] 인센티브에 합리적 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리하여 "자신의 창의성의 결실을 간직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참조.

¹⁷⁶⁾ A2IM-RIAA Joint Initial Comments at 35; AAP Initial Comments at 31-32; AIPLA Initial Comments at 11 ("현재로서는 AI 생성 출력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AI 기술 및 시스템의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AI 시스템 그 자체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으로 충분하다."); CCIA Initial Comments at 19; Copyright Alliance Initial Comments at 95-96. 논평자들은 AI 생성 출력물에 대한 잠재적인 법적 보호와 별도로, AI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몇 가지 인센티브를 확인했다. 예를 들어, R Street Institute, Comments Submitted

성장은 개발자가 이러한 기술을 생산하는 데에 저작권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177) AI 회사인 허깅 페이스(Hugging Face)는 "기계 학습 실무자 로서, 우리는 생성 AI의 혁신이 모델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획득하려는 희망에 의해 거의 또는 전혀 주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작권 법의 수정 없이도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다.178)

끝으로, 많은 논평자들이 AI 생성 콘텐츠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면 인간 저작이 억제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대표들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AI 생성 출력물이 급증하면 창의성이 억제되어 인간이 창작할 의욕이 저하되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 인간 이 창작한 저작물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79) 예를 들어, 저작권 연합 (Copyright Alliance)은 "만일... 정책 입안자들이 AI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인센티브를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0 (Oct. 30, 2023) ("R Street Initial Comments") ("컴퓨터 코드에 대한 기존 저작권 보호는 생성 AI 기술 개발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Xiyin Tang et al. Initial Comments at 10-11 ("기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및 저작권 보호를 통해 AI 기술을 창작하고 발전시킬 인센티브가 이미 있으므로 AI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선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CCIA Initial Comments at 19 (인지된 상업적 필요성과 선두 주자 이점에 대해 논의); Anonymous AI Technical Writer Reply Comments at 15 (AI 개발을 위한 벤처 캐피털과 주식 시장 펀딩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논의); DMLA Initial Comments at 17(특허 및 영업 비밀에 대해 논의); UMG Initial Comments at 81 (도구 또는 서비스로서의 AI에 대한 논의) 참조.

¹⁷⁷⁾ AIPLA Initial Comments at 11(AI 시스템은 "출력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명확한 권한 없이 생성되고 상용화되었으며, 이러한 보호의 부재가 AI 소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AI 제공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관심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t 33; Copyright Alliance Initial Comments at 95–96; Graphic Artists Guild Initial Comments at 19-20.

¹⁷⁸⁾ Hugging Face, In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3 (Oct. 30, 2023).

¹⁷⁹⁾ Take Creative Control,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 (Oct. 18, 2023);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Repl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 (Dec. 6, 2023); Timothy Allen,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Sept. 6, 2023) ("사람들이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어떤 종류의 소유권도 주장하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저작물이 진짜이고 어떤 저작물이 가짜인지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크게 야기하고, 창의적인 더 넓은 분야에 위축 효과를 미칠 수 있다(많은 분야는 이미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onymous Artist, Repl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 10 (Dec. 5, 2023); Letter from UMG, Summary of Ex Parte Meeting on Apr. 22, 2024 Regarding the Office's AI Study, to U.S. Copyright Office 6, 14 (Dec. 3, 2024).

제공한다면, 엄청난 양과 속도로 생성되는 AI 자료가 많은 인간 창작물 시장을 파괴할 수 있다."180) 또한 "우리의 대중문화는 낮은 품질의 AI 생성 저작물에 밀려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창작의 비용이 AI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너무 부담스럽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181) 작가협회는 "AI 생성 저작물이 인간이 만든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면," 이 자료의 제작자는 "시장에서 불공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AI 생성 콘텐츠를 대중에게 배포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저작권 인센티브가 더 이상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만큼, 시장을 혼잡하게 만들고 희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 다. 182) 특히 "[창조적인 중산층 직업이... 사라지고 파괴될 것"이며 "그 결과 우리의 문학 저작물과 예술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183)

일부 논평자는, AI 생성 저작물은 새로운 독자적(sui generis) 권리를 도입하여 보호 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저작권 시스템 외부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된 가치를 달성할 것을 모색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입력과 AI 처리 사이의 균형," 보호 기간, 그리고 권리자 확인 등 "AI 창작물에 고유한 측면을 다루기 위해 특수한 권리가 맞춰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184)

¹⁸⁰⁾ Copyright Alliance Initial Comments at 95; 또한 David Newhoff Initial Comments at 2-3 (AI 생성 자료를 제작하는 기업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창의적 전문가의 경력(과 창의적 작업의 문화적 가치)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넘어서, 어느 시점에는 저작권법 자체의 적용이 무의미 해지고/무의미해지거나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설명);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34쪽("직업을 유지할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인간 창작자는 거의 없을 것이고, 전문가들이 생산하는 저작물의 인간미(human quality)는 사라질 것이다."). Fight for the Future Initial Comments at 6. 하지만, Donaldson Callif Perez Initial Comments at 2 ("인공지능 비판가들은 이 기술이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의 이야기를 희생하여 예술가를 대체하는 데 사용될까봐 걱정한다. 지지자들 은 그것이 미래의 방향이며 예술가의 도구 상자에 있는 또 다른 도구처럼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한 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UMG, Repl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1 (Dec. 6, 2023); A2IM-RIAA Joint Initial Comments at 35 참조.

¹⁸¹⁾ Copyright Alliance Initial Comments at 95.

¹⁸²⁾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t 34.

¹⁸³⁾ Id.

¹⁸⁴⁾ ImageRights International, Inc. ("ImageRights"), Repl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9 (Dec. 6, 2023) ("ImageRights Reply Comments"); 또한 Seth Polansky Initial Comments at 29(AI 생성 자료에 대한 더 짧은 보호 기간과 누가 출력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것인지에 대한 더 명확한 정의 제안). Public Knowledge,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9 (Oct. 30, 2023)(독자적 권리의 이점에는 "더 빠르고 저렴한 등록과 AI 생성 부분과 (잠재적으로) 저작물의 AI 구성 요소의 출처를 설명하는 문서화 표준이

독자적 권리를 언급한 논평자 중 대부분은 이 아이디어에 반대했다. 그들은 독자적 권리가 인간 저작자에 미치는 인센티브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다고 보았다.185) 일부는 또한 과거 독자적인 법제에 대한 경험을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186)

저작권청의 견해로는, 기존 법률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AI 생성 자료에 대한 추가 보호가 필요한 사례는 제기되지 않았다. 우선 저작권은 인간 저작을 요구하기 때문 에 저작권법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부분 의 논평자들이 인정했듯이, 헌법상 저작권 조항에서 허락한 인센티브는 진보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인간 저작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의회는 대신 독자적인 권리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187) 우리는 추가 보호에 대한 정책적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포함될 수 있음"을 주장); Rightsify Group LL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0 (Oct. 30, 2023) 참조. 일부는 특히 AI 모델 가중치와 관련해 독자적 보호를 옹호했다. BLIP Initial Comments at 25-26; BLIP Initial Comments at 25-26; Van Lindberg Initial Comments at 5 참조.

¹⁸⁵⁾ 예를 들어, The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t 33 (독자적 권리는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시장을 희석시킬 것이고... 저작권의 목적이나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EWC Initial Comments at 17; AAP Initial Comments at 31-32; ABA-IPL Initial Comments at 13-14; ASCAP Initial Comments at 49; Authors Alliance Initial Comments at 18-19; Kernochan Center Initial Comments at 10; NMPA Initial Comments at 29; App Association Initial Comments at 7; Pamela Samuelson et al. Initial Comments at 4; AIPLA Initial Comments at 11; R Street Initial Comments at 10.

¹⁸⁶⁾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6 (Oct. 30, 2023) ("독자적인 접근 방식의 역사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빠르게 쓸모없게 되거나(예를 들어, 1984년 반도체 칩 보호법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저작권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¹⁸⁷⁾ 예를 들어, 1984년 반도체 칩 보호법은 반도체 회로 저작물(mask works)에 대해 독자적 권리를 도입했다. H.R. REP.NO. 98-781, at 7-8 (1984), reprinted in 1984 U.S.C.C.A.N. 5750, 5756-57; Trademark Clarification Act of 1984, Pub. L. No. 98-620, § 301, 98 Stat. 3335, 3347 (1984); 17 U.S.C. \$\$ 901-14. 또한 the Vessel Hull Design Protection Act, 선박 선체의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해 독자적인 보호를 도입.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Pub. L. No. 105-304, Title V, § 502, 112 Stat. 2860, 2905 (1998), amended by the IP and Communications Omnibus Act of 1999, Pub. L. No. 106-113, § 5005, 113 Stat. 1536, 1501A-593 (1999); 17 U.S.C. **§\$** 1301-32 참조. 이러한 권리는 보호 자격, 소유권, 등록 절차, 보호 기간 및 구제책 측면에서 저작권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서 추론하기는 어렵다. 이들을 활용한 경험이 제한적이고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AI 기술의 맥락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새로운 인센티브가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다. AI 모델과 시스템의 개발자는 (해당 모델과 시스템의 빠른 발전과 채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의미 있는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에는 기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저작권 및 영업 비밀 보호와 잠재적인 지금 조달 및 선두 주자의 이점이 포함된다. 게다가, 우리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진보를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 다. 우리는 AI 생성 자료가 인간 저작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인간 저작자의 창의적 표현이 사회에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 표현된 우려를 공유한다. 쉽고 빠르게 생성된 AI 콘텐츠의 홍수가 시장에서 인간이 만든 저작물을 떠내려 보낸다면. 추가적인 법적 보호는 저작권 시스템의 목적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훼손할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저작물이 훨씬 더 많아지면 실제로 영감이나 깨우침을 주는 콘텐츠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AI 학습 자체는 인간이 생성한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으며, 합성 데이터로는 품질이 낮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188)

AI 생성 콘텐츠가 일부 창작자의 저작물에 대해 보상 받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징후가 이미 있다.189) 예를 들어, 뮤지션과 작곡가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AI 생성 콘텐츠의 확산으로 영향을 받았다. UMG는 약 1억 7천만 개로 추산되는 AI 생성 음악 트랙으로 야기된 "콘텐츠 공급 과잉"이 현재 인간 창작자의 로열티를 희석할 위험이 있다 고 보고했다.190) AI 생성 저작물은 또한 복제권 관리단체(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를 통해 인간 창작자에게 제공되는 로열티 풀을 줄일 위험이 있다.191)

¹⁸⁸⁾ Kristian Hammond et al., Degenerative AI: The Risks of Training Systems on their own Data, NORTHWESTERN UNIV.CENTER FOR ADVANCING SAFETY OF MACHINE INTELL. (Sept. 6, 2024), https://casmi.northwestern.edu/news/articles/2024/degenera tive-ai-the-risks-of-training-systems-on-their-own-data.html; Aatish Bhatia, When A.I.'s Output Is a Threat to A.I. Itself, N.Y. TIMES (Aug. 25, 2024), https://www.nytimes. com/interactive/2024/08/26/upshot/ai-synthetic-data.html.

¹⁸⁹⁾ 연구자들은 AI가 예술가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CISAC"), STUDY ON THE ECONOMIC IMPACT OF GENERATIVE AIIN THE MUSIC AND AUDIOVISUAL INDUSTRIES (Nov. 2024), https://www.cisac.org/services/reports-and-research/cisacpmp-strategy -ai-study; Gaétan de Rassenfosse et al., Intellectual Property and Creative Machines, NAT'L BUREAU OF ECON. RSCH. WORKING PAPERS, July 2024, Working Paper No. 32698, https://www.nber.org/papers/w32698.

¹⁹⁰⁾ UMG Initial Comments at 13.

¹⁹¹⁾ 저작권법 제115조에 규정된 포괄 라이선스에 따라, 비연극적 음악 저작물의 디지털 음반 전달 (digital phonorecord deliveries)에 대한 로열티는 복제권 관리단체가 저작권자에게 나누어 분

저작자들이 그들의 재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들은 더 적은 저작물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창의성의 불꽃이 줄어들거나 희미해 지면 사회는 더 초라해질 것이다.

B. 장애 창작자 역량 강화

여러 논평자들은 AI 생성 저작물에 대해 보호를 확대하면 신체적, 인지적 장애가 있는 더 많은 개인이 창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92) 그러나 그들이 확인한 구체적인 응용 프로그램들은 인간 저작 없이 출력물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저작물 창작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Brooklyn Law Incubator & Policy Clinic은 텍스트 음성 변환, 시각 예술 생성 알고리즘, 인지장 애자의 서면 의사소통 개선과 같은 기능을 언급했다.193) 장애 창작자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른 논평자는 "AI는 표현적인 콘텐츠의 원천이라기보다는 저작자의 손에 있는 도구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194)

저작권청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창작자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 러한 기능들이 저작자의 표현을 재구성, 변형 또는 각색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한, 출력물

배할 수 있는 풀에 지불된다.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이 결여된 음악저작물은 포괄 라이선스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지만, 당사자들은 AI 생성 콘텐츠의 스트리밍에 대한 로열티를 받으려고 시도했 다. Letter from Suzanne V. Wilson, Gen. Couns. and Assoc. Register of Copyrights, U.S. Copyright Office, to Kris Ahrend, Chief Exec. Officer, The 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Apr. 20, 2023), https://copyright.gov/ai/USCO-Guidance-Letter-to-The-MLC-Letter-on-AI-Created-Works.pdf. 이러한 행위는 사기로 형사 고발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Press Release, U.S. Attorney's Offic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North Carolina Musician Charged with Music Streaming Fraud Aid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Sept. 4, 2024), https://www.justice.gov/usao-sdny/pr/north-carolina-musician-charged -music-streaming-fraud-aided-artificial-intelligence.

¹⁹²⁾ 예를 들어, BLIP Initial Comments at 24; ECPA Initial Comments at 8; Tom Yonge,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33-36 (Sept. 18, 2023) 참조. 일부 논평자는 생성 AI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창작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했다. Elisa Rae Shupe,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Initial Comments at 1 (Oct. 27, 2023); Michael Summe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 (Oct. 30, 2023).

¹⁹³⁾ BLIP Initial Comments at 24.

¹⁹⁴⁾ ECPA Initial Comments at 8 참조 (화필을 붙잡을 수 없는 예술가에 대해 논의하고 장애가 있는 창작자가 "[AI]를 사용하여 의도된 표현을 창작하고 있다."고 언급).

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95) 예를 들어, 저작권청은 최근 뇌졸중으로 인해 언어 기능이 제한된 그래미상 수상 컨트리 아티스트인 랜디 트래 비스(Randy Travis)의 녹음물 등록 신청을 검토했다.196) 이 트랙은 인간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을 기반으로, "「특수 목적의 AI 보컬 모델을... 트래비스와 인간 창작팀의 구성 원이 원하는 사운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여"만들어졌다.197) 이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출력물은 트래비스가 전설적인 목소리로 부르는 것처럼 들리는 새로운 트랙이었다. 녹음물이 AI를 표현을 생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청은 이 저작물을 등록했다.

보조적 사용(assistive uses)과 생성적 사용(generative uses)의 구분은 장애가 있는 창작자와 다른 인간 저작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AI가 인간 저작자가 그들의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도구로 기능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는 여전히 가능하다.

C. 국제 경쟁에의 대응

몇몇 논평자들은 국제 경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 단체는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가 없다면 "과학 및 창작 커뮤니티가 [AI 생성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는 "미국이 생성 AI 기술과 시스템 개발에서 뒤처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198) 다른 논평자도 비슷하게 미국이 AI 생성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화 [지식 재산] 생성의 글로벌 중심지가...

¹⁹⁵⁾ Registration Guidance for Works Containing Al-Generated Content Tr. at 4-5 (June 28, 2023), https://www.copyright.gov/events/ai-application-process/Registration-of -Works-with-AI-Transcript.pdf.

¹⁹⁶⁾ Where That Came From, SR0001018989 (May 29, 2024).

¹⁹⁷⁾ Letter from Steven Englund to U.S. Copyright Office (Oct. 28, 2024). 저작권청과 주고받은 서신에서 신청인은 해당 모델이 "트래비스씨의 이전 녹음에서 큐레이팅 된 보컬 트랙 세트를 사용하 여 트래비스씨의 감독 하에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다"고 추가로 설명했으며, "창작팀은 [도구를 사용하여] 제임스 듀프레(James Dupré)가 노래한 'Where That Came From'의 음향적 으로 맞춤화된 녹음을 듀프레씨의 연주의 원래 음조, 프레이징, 발음, 역동성 및 그 밖의 음악적 특성을 보존하면서 트래비스씨의 독특한 목소리로 보컬 트랙을 변환했다."고 설명했다. Id.

¹⁹⁸⁾ The Knot Worldwide Inc. ("TKWW"), Reply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2 (Dec. 6, 2023) ("TKWW Reply Comments").

AI에 더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갖춘 다른 국가로 옮겨갈 것"이라고 언급했다.199) 이 논평자는 또한 AI 생성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제로 예술가의 이익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200) 대신 미국 예술가들은 경쟁할 수 없는 "[저렴한] 외국 AI 콘텐츠의 퍼블릭 도메인 홍수에 휩쓸려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201)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미국은 우리의 헌법과 저작권 원칙에 구속 된다. 다른 나라들이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 원칙을 포기하거 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 중심 접근 방식이 좋은 정책이며 저작권에 내재된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국가의 저작권법이 생성 AI를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논평자들의 우려는 AI 생성 자료에 대한 법적 보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러한 차이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일단의 법학 교수들이 인정했듯이, 생성 AI는 인간의 창의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202)

D. 더 높은 명확성 제공

일부 논평자는 명확성과 확실성의 이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창작자들이 AI를 사용하 여 제작한 그들의 저작물이 보호되고 라이선스를 받거나 판매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 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 논평자는 그렇지 않으면 "AI 도구를 사용하여 만든 저작물 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이 훼손되고... [그리고] 이러한 도구의 채택도 영향을 받을 것"이 라고 말했다.203) 일부 논평자는 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작자가 AI를 사용하여 만든

¹⁹⁹⁾ Dallas Joder Reply Comments at 2.

²⁰⁰⁾ Id 참조.

²⁰¹⁾ Id. 이 논평자는 미국 AI 스타트업이 더 광범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의 경쟁자보다 IP 소송에 더 많은 재정 자원을 지출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소송 규모가 어떻게 AI 생성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참조 Id.

²⁰²⁾ Pamela Samuelson et al. Initial Comments at 5 참조.

²⁰³⁾ Microsoft and Github,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0 (Oct. 30, 2023); 또한 IPO Initial Comments at 6-7 ("AI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이 보호되지 않으면 이것은 회사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획, 개발 및 투자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예술과 과학의 촉진과 진보가

것을 소유할 수 있는지,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할 수 있는지, 저작물을 저작권 청에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침해 소송에서 그들의 등록증이 유효하다는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04)

여러 논평자는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을 통해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205) 한 논평자는 AI 시스템의 소유자가 시스템이 생성하는 모든 출력물의 저작자라는 법적 추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206) 다른 한 논평자는 법률에서 "사실상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은 사소한 AI 도구의 사용"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7)

저작권청은 AI 생성 자료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둘러싼 명확성에 대한 주장을 이해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 입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표현된 우려의 대부분은 AI 도구의 보조적 사용에 집중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그러한 사용이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제공하고자 한다. AI 출력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결정하 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청의 등록 결정 심사를 포함하여) 법원이 AI의 일정한 사용에 적용되는 인간 저작 요건에 대해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보고서의 이 제2부에 서 분석한 내용은 기존 원칙과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회가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더 큰 명확성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저작권 보호 가능성 조사에는 각 저작물과 창작의 맥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용어는 더 명확한 선을 긋는 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미래의 발전으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작권청은 법의 변경을 권고하지 않는다.

훼손될 수 있다."); ABA-IPL Initial Comments at 13-14; App Association Initial Comments at 6; ECPA Initial Comments at 7-8; Van Lindberg Initial Comments at 46; MPA Initial Comments at 59; TKWW Reply Comments at 2; SCA Robotics Initial Comments at

²⁰⁴⁾ Sandra Aistars,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10-11 (Oct. 30, 2023); Graphic Artists Guild Initial Comments at 2-3; Qualcomm Reply Comments at 6 참조.

²⁰⁵⁾ BLIP Initial Comments at 22; CISAC,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Aug. 30, 2023, Notice of Inquiry at 5-6 (Oct. 30, 2023); ImageRights Reply Comments at 8-9; INTA Initial Comments at 4-5; Seth Polansky Initial Comments at 27-28.

²⁰⁶⁾ Ryan Abbott Initial Comments at 18.

²⁰⁷⁾ ASCAP Initial Comments at 49.

제V장 결론

저작권의 기본 원칙,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의 현재 상태, 그리고 NOI에 대한 응답으로. 접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작권청은 기존의 법적 원칙이 저작권 보호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저작권법은 오랫동안 새로운 기술에 적응 해 왔으며, AI 생성 출력물이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인간의 기여를 반영하는 지 여부를 사례별로 판단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많은 경우 이러한 출력물은, AI가 도구로 사용되고 인간이 거기에 포함된 표현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전체로서 또는 일부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프롬프트만으 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것 같지 않다. 저작권청은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 및 법적 발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다.

저작권청은 생성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공중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는 추가 등록 지침을 발행하고 미국 저작권청 실무제요의 관련 부분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NOI에 대한 응답으로 접수된 의견, 사법적 발전 및 그 밖의 관련 입력을 활용할 것이다.

감사의 말씀

AI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출력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인공지 능과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청 보고서의 제2부는 대규모의 재능 있는 팀의 노력으로 탄생했습니다.

저는 특히 프로젝트를 이끌고 심도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한 청의 다음 고위 간부들에 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에밀리 차푸이스(Emily Chapuis) 법무부실장, 에릭 버틴(Erik Bertin) 등록정책국 부국장, 그리고 로버트 캐슈닉(Robert Kasunic) 청장보겸 등록정 책국장. 수지 윌슨(Suzy Wilson) 청장보겸 법무실장, 앤드류 포글리아(Andrew Foglia) 정책·국제실 부실장, 그리고 마리아 스트롱(Maria Strong) 청장보겸 정책·국제실장이 관리, 연구, 초안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제2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저술을 담당한 법무실(OGC), 정책·국제실(PIA) 그리고 등록정책국("RPP")의 변호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OGC의 얄르쓰 맹검 (Jalyce Mangum)이 팀장을 맡았고, 이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그녀의 능숙한 저술 과 분석이 기여했습니다. PIA의 에밀리 란자(Emily Lanza), RPP의 아론 왓슨(Aaron Watson)과 프랭크 뮐러(Frank Muller), OGC의 로리 테일러(Laurie Ann Taylor)가 주요 기여자였습니다. 추가 연구와 의견은 OGC의 마이클 드릭맨(Michael Druckman) 과 엘리자베스 포터(Elizabeth Porter)가 제공했습니다. PIA의 대니얼 존슨(Danielle Johnson)과 OGC의 요안나 블래츨리(Joanna Blatchly), 마이클 드럭맨(Michael Druckman), 브리트니 램(Brittany Lamb), 브랜디 칼(Brandy Karl), 그리고 개브리엘 라 루나(Gabriela Luna)가 모두 텍스트와 인용문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작권청의 제작홍보팀은 문서 준비 및 공개를 능숙하게 감독했습니다. 홍보교육담당 청장보 미리앰 로드(Miriam Lord)와 부국장 조지 츠로니(George Thuronyi)가 이끄는 팀에는 스티브 안드레아디스(Steve Andreadis), 니콜 첸(Nicole Chen), 리사 마플랙

(Lisa Marflak), 앨리슨 홀(Alison Hall), 스탠리 머골로(Stanley Murgolo), 안재나 파드마나반(Anjana Padmanabhan), 노라 스켈랜드(Nora Scheland), 그리고 네이오 미 울랜사리(Naomi Wulansari)가 함께 했습니다.

> 쉬라 펄머터 저작권청장 2025년 1월 29일,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과 저작권 제1-2부

발행일: 2025년 4월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전화: (대표) 055-792-0000

누리집: https://www.copyright.or.kr

총서명 저작권관계자료 2025-01

ISBN 978-89-6120-601-3 [94010]

ISBN 978-89-6120-038-7 (세트)

% 본 자료는 Kopup글꼴 및 G마켓산스 글꼴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제1-2부}

